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 서 언

지난 4~5년간 한국은 한·칠레 FTA를 필두로 싱가포르, EFTA, ASEAN,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에게 FTA가 한국 상품·서비스에 대한 경쟁력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FTA를 체결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체결된 FTA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FTA의 효율적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들어 학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인식이 단지 제3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규라는 소극적 이해였다면 오늘날 FTA 원산지규정은 FTA를 통한 상품 자유화와 FTA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따라서 협상의 중요 안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각각의 원산지규정들의 유형별, 품목별 특징을 살펴보고 있으며, 각 FTA별 특혜원산지규정의 특징이 한국이 발효한 4개 FTA의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 계산된 한국의 수출 및 수입 활용률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한국 FTA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들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단기 및 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본원 김한성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조미진 부연구위원과 정재완

전문연구원 그리고 김민성 연구원 등이 연구진으로서 참여하여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집필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지식경제부의 여한구 과장, 한양대학교 한홍렬 교수, 홍익대학교 강준하 교수, 그리고 원내자문을 맡은 최낙균 선임연구위원과 김양희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류도일 인턴과 간담회에서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신 참석자분들, 특히 관세청의 박 현 사무관과 이영달 행정관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향후 정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2월

원장 채 욱



## 국문요약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에서부터 2007년에 타결된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양자간 FTA를 통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FTA 체결은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국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일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FTA 협정문에 명시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되었는가’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문제는 글로벌 공장(global factory)이라 불릴 정도로 품목별로 복잡·다양한 생산 공정과 원재료 조달 구조를 지닌 생산과정에서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의 원산지규정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과 품목별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볼 때, 가장 큰 특징은 협정문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FTA 체결 상대국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FTA 원산지 조항이 유사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미주 지역에 위치한 칠레 및 미국과 체결한 한·칠레 FTA와 한·미 FTA는 NAFTA 유형을 따르고 있고, 유럽의 EFTA와 체결한 한·



EFTA FTA는 PANEURO 유형을, 동아시아에 위치한 싱가포르 및 ASEAN과 맺은 한·싱가포르 FTA와 한·ASEAN FTA는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5개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별 분포에서는 전체 결정기준의 27.8%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CH)이 적용되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이 된다. 이어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RVC)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결정기준(전체 결정기준의 25.5%)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을 적용하는 경우(전체 결정기준의 10.2%)가 주요 결정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품목별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섬유·의류를 비롯하여 제조업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양하고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산지증명방식에서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는 기관발급제를,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미국 FTA는 자율발급제를 채택하였다. 기관발급제인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당해 물품의 FTA 해당품목 여부 및 원재료 구입 경로를 확인하여 제출근거서류를 정해진 신청양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발급기관에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한·칠레 FTA, 한·EFTA FTA와 한·미 FTA는 모두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증명주체, 원산지증명방법과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다. 또한 검증방식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섬유·의류산업은 간접검증과 공동검증)는 직접검증방식을, 한·ASEAN은 선(先)간접검증 후(後) 직접검증 방식을, 한·EFTA FTA는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을 기초로 각각의 FTA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이 FTA의 이행과 활용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한국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전략적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 실제로 FTA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의 엄격성과 현재 FTA가 발효된 4개 FTA에 대하여 수출입 활용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 활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예컨대 1차산품의 경우 원산지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싱가포르 FTA를 제외하고 FTA 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가공1차산품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금속광물의 경우 한·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여타 FTA에 비해 가장 엄격한데도 활용률이 100%에 달하는 등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사이에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보다는 수출규모나 기타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ASEAN FTA와 같이 한국 수출 활용률에서 극히 낮은 활용률을 기록하는 경우 그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는 FTA에 따라 품목별로 복잡·다양해지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들 수 있다.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각 품목별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적용된 품목은 단 9개 품목에 불과하다. 반면에 5개의 FTA에서 각기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293개로 전체 품목의 5.6%에 해당된다. HS 6단위 5,224개 품목 중, 약 75.8%에 해당되는 3,961개 품목에 3개 이상의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HS 6단위 기준으로 한국의 200대 수출품목만 추려서 살펴보면,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 1개의 단일 원산지 결정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은 오직 3개 품목에 불과하며, 2개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 48개, 3개 결정기준 적용품목 85개, 4개 결정기준 적용품목 43개가 있으며 5개 모두에서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도 21개에 이

른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의 200대 주요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총 200개 품목 중, 단일 원산지 결정기준이 5개 FTA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47개 품목은 2개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77개 품목은 3개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4개의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지닌 품목도 총 52개에 달했으며, 5개 FTA에서 모두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지닌 품목도 24개 품목에 이른다.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은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EU, 캐나다, 인도, GCC 등과의 FTA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과의 FTA 추진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더 이상의 복잡성이 가중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각 업계와 협회를 중심으로 최적의 원산지규정을 찾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의 200대 수출품목이나 중소기업의 200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의 생산과정과 원재료 조달을 반영한 한국형 원산지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FTA 협정문에 대해서도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 협정문을 개정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들 200대 품목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200대 수출품목의 경우 81.3% 그리고 중소기업 200대 수출품목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 수출의 63.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품목들에서만이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 수출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중소기업의 주요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통일화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위한 비용이 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는 원산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다. 이미 한국이 5개의 FTA를 완료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수출업체의 경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

고는 수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전문부서나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각 지역 세관과 관세청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정도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문의사항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한국의 준비가 미미하다는 점은 이행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FTA 발효 초기에 상대국의 수해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집중 심사대상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한국의 대표적 수해산업으로 회자되는 섬유·의류 제품이 한·미 FTA 발효 후에 계속되는 미국의 원산지 검증 요구에 적절한 증명을 하는 데 실패할 경우, 미국 세관은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한국산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 수출기업이 특혜관세 신청시 요구되는 미국의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피하기 위해 FTA 활용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점 다양해지는 FTA 원산지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 내로 공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장에 미국과 같은 원산지 관련 교육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의 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러한 원산지 전문가 교육서비스가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정부의 몫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한·미 FTA를 대비하여,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닌 산업(대표적으로 섬유·의류 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한·미 FTA 발효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원산지규정이 당면한 과제가 단기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품목별 원

산지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규정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라면, 중장기적으로 FTA 원산지규정은 개성공단 혹은 북한지역의 확대 활용과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역외가공을 통한 개성공단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은 한·싱가포르 FTA에서부터 중요한 FTA 협상목표로 여겨져 왔으며 비록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하고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치적인 의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향후 FTA에서 개성공단 혹은 북한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의 확대는 한국에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호주나 뉴질랜드 혹은 중국과의 FTA에서 ASEAN 지역을 포함하는 유사누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역내국의 생산시장을 실질적으로 단일화시켜 한국산 제품의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FTA 원산지규정은 국가간 FTA 효과를 반감시키는 ‘숨겨진 무역장벽’일 뿐 아니라, 국가별로 복잡·다양해진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WTO를 통한 세계경제통합의 방해요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행정비용은 매선택분가치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생산의 비효율성과 교역 왜곡현상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학계와 기업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비난은 반대로 생각하면 ‘FTA 원산지규정’이 FTA 체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한국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특히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학계와 정부 그리고 관련 기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 차 례

|                                    |    |
|------------------------------------|----|
| 서 언 .....                          | 5  |
| 국문요약 .....                         | 7  |
| 약어표기 .....                         | 21 |
| 제1장 서 론 .....                      | 23 |
|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              | 27 |
|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             | 28 |
| 가. 원산지 결정 .....                    | 28 |
|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             | 36 |
| 2. FTA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        | 38 |
|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                | 38 |
|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 | 41 |
|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          | 51 |
| 1. 이론적 접근 .....                    | 52 |
|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           | 53 |
|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            | 54 |
|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           | 58 |
| 라. 소결 .....                        | 61 |

|                       |    |
|-----------------------|----|
| 2. 실증적 접근 .....       | 62 |
|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 | 64 |
|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   | 67 |
| 다. 소결 .....           | 68 |

##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 71

|                                 |     |
|---------------------------------|-----|
|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       | 73  |
| 가. 완전생산기준 .....                 | 73  |
| 나. 실질변경기준 .....                 | 74  |
| 다. 원산지 보충규정 .....               | 78  |
|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             | 86  |
|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       | 90  |
|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 | 91  |
| 나. 산업별 · 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     | 97  |
|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      | 113 |
|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       | 115 |
|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      | 122 |

##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 127

|                                     |     |
|-------------------------------------|-----|
|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              | 129 |
|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       | 129 |
|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            | 132 |
|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           | 139 |
|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          | 139 |
|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     | 141 |
|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     | 156 |
|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 | 164 |

|                                             |     |
|---------------------------------------------|-----|
| <b>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b>               | 171 |
|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 172 |
|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 172 |
|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 176 |
|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 180 |
|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 180 |
|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 183 |
|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 186 |
|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 186 |
|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 193 |
| <b>제7장 결 론</b>                              | 201 |
| <b>참고문헌</b>                                 | 206 |
| <b>부 록</b>                                  | 211 |
| 부록 1. 품목분류표                                 | 212 |
|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 213 |
|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 218 |
| 부록 4. 한·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 224 |
| 부록 5. 한·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 226 |
|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 229 |
|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월별 수출 실용률              | 233 |
|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 236 |
|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 243 |
| <b>Executive Summary</b>                    | 251 |





## 표 차례

|                                                  |    |
|--------------------------------------------------|----|
| 표 2-1. 실질변경기준의 비교 .....                          | 31 |
| 표 2-2. 각 원산지 결정기준의 장단점 비교 .....                  | 34 |
| 표 2-3.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한 비교: 구체적인 사례 .....            | 35 |
| 표 2-4.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비교 .....                  | 37 |
| 표 2-5. 원산지 증명방식의 장·단점 비교 .....                   | 39 |
| 표 2-6. 미 관세법 제1592조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 43 |
| 표 2-7. 미 관세법 제1508조와 제1509조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 44 |
| 표 2-8. 미 관세법 제1509조 (f)에 의한 자료보관인증제도의 인증요건 ..... | 45 |
| 표 2-9. 캐나다 관세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 47 |
| 표 2-10. 싱가포르 관세법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 49 |
| 표 3-1. NAFTA 원산지규정과 관세철폐 이행기간 .....              | 63 |
| 표 4-1. FTA 원산지규정의 완전생산기준 비교 .....                | 74 |
| 표 4-2.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차이점 비교 .....                  | 75 |
| 표 4-3. 부가가치기준 산정공식 .....                         | 76 |
| 표 4-4. FTA별 특정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 .....                 | 78 |
| 표 4-5. FTA별 최소허용기준 비교 .....                      | 79 |
| 표 4-6. FTA별 불인정공정기준의 유형비교 .....                  | 82 |
| 표 4-7. FTA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의 원산지기준 비교 .....     | 83 |
| 표 4-8. FTA별 역외가공인정제도 비교 .....                    | 87 |
| 표 4-9. FTA별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의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        | 89 |
| 표 4-1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                    | 92 |

|                                             |     |
|---------------------------------------------|-----|
| 표 4-1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1차산품 .....         | 98  |
| 표 4-1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가공1차산품 .....       | 99  |
| 표 4-1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가공광물 .....         | 100 |
| 표 4-1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가죽제품 .....         | 101 |
| 표 4-15.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고무·화학 .....        | 102 |
| 표 4-16.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종이·목재 .....        | 103 |
| 표 4-17.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금속제품 .....         | 104 |
| 표 4-18.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운송기기 .....         | 105 |
| 표 4-19.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기타운송기기 .....       | 106 |
| 표 4-2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의류·직물 .....        | 107 |
| 표 4-2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일반기계 .....         | 109 |
| 표 4-2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전기기계 .....         | 110 |
| 표 4-2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정밀기계 .....         | 111 |
| 표 4-2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기타 제조품 .....       | 112 |
| 표 4-25.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비금속광물 .....        | 113 |
| 표 4-26.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 117 |
| 표 4-27. 한국의 FTA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          | 120 |
| 표 4-28. 한국의 FTA별 기록유지 요건 비교 .....           | 121 |
| 표 4-29.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 123 |
| 표 4-30.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 124 |
| 표 5-1. 엄격성지수 요건 .....                       | 130 |
| 표 5-2. EU와 NAFTA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비교 .....       | 131 |
| 표 5-3. EU의 FTA와 NAFTA에서의 세번변경기준 적용 비중 ..... | 132 |
| 표 5-4.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과 엄격성지수 .....      | 133 |
| 표 5-5. FTA별 엄격성지수 분포 .....                  | 134 |
| 표 5-6. FTA별 엄격성지수 평균 비교 .....               | 136 |

|                                                          |     |
|----------------------------------------------------------|-----|
| 표 5-7. 세번변경기준 비중 비교 .....                                | 138 |
| 표 5-8. 케이스별 엄격성지수 평균 비교 .....                            | 138 |
| 표 5-9.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2004.4~2008.3 .....      | 143 |
| 표 5-10.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 .....               | 144 |
| 표 5-11. 싱가포르산 수입에 대한 한·싱가포르 FTA 활용률: 2006.3~2008.2 ..    | 145 |
| 표 5-12. 싱가포르산 수입에 대한 한·싱가포르 FTA 활용률: 산업별 .....           | 146 |
| 표 5-13. EFTA산 수입에 대한 한·EFTA FTA 활용률: 2006.9~2008.8 ..... | 148 |
| 표 5-14. EFTA산 수입에 대한 한·EFTA FTA 활용률: 산업별 .....           | 149 |
| 표 5-15. ASEAN산 수입에 대한 한·ASEAN FTA 활용률: 2007.6~2008.5 ..  | 152 |
| 표 5-16. ASEAN산 수입에 대한 한·ASEAN FTA 활용률: 산업별 .....         | 153 |
| 표 5-17 ASEAN 국가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분석: 인도네시아 .....         | 154 |
| 표 5-18. ASEAN 국가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분석: 말레이시아 .....        | 155 |
| 표 5-19. 대(對)칠레 수출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2004.4~2007.12 ..    | 157 |
| 표 5-20. 대(對)칠레 수출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 .....            | 158 |
| 표 5-21.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                        | 162 |
| 표 5-22.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국가별 .....                   | 163 |
| 표 5-23. FTA별 엄격성 및 수입품목에 대한 활용률 .....                    | 165 |
| 표 5-24. FTA별 엄격성 및 수출품목에 대한 활용률(실용률) .....               | 167 |
| 표 6-1.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분포 .....                          | 173 |
| 표 6-2.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N=410) .....               | 177 |
| 표 6-3.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 현황 .....                             | 187 |
| 표 6-4. 개성, 중국, 한국의 공단 비교 .....                           | 188 |
| 표 6-5. ASEAN이 선택한 빈도수 상위 5개 품목류 .....                    | 189 |
| 참고 표. 한국의 FTA별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기준 .....                       | 115 |
| 참고 표. 원산지규정 엄격성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비교 .....                  | 137 |
| 부표 1-1. 품목분류표 .....                                      | 212 |

|                                                         |     |
|---------------------------------------------------------|-----|
| 부표 3-1.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기간별 .....          | 218 |
| 부표 3-2. 싱가포르산 수입에 대한 한·싱가포르 FTA 활용률:<br>산업별/기간별 .....   | 220 |
| 부표 3-3. EFTA산 수입에 대한 한·EFTA FTA 활용률: 산업별/기간별 .....      | 222 |
| 부표 4-1. ASEAN 국가의 대한국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분석: 필리핀 .....          | 224 |
| 부표 4-2. ASEAN 국가의 대한국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분석: 미얀마 .....          | 225 |
| 부표 4-3. ASEAN 국가의 대한국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분석: 베트남 .....          | 225 |
| 부표 5-1. 대(對)칠레 수출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기간별 ...         | 226 |
| 부표 6-1. 중복 기제로 인한 삭제 리스트 목록 .....                       | 229 |
| 부표 7-1.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인도네시아 .....                | 233 |
| 부표 7-2.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말레이시아 .....                | 233 |
| 부표 7-3.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베트남 .....                  | 234 |
| 부표 7-4.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필리핀 .....                  | 234 |
| 부표 7-5.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미얀마 .....                  | 235 |
| 부표 8-1.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        | 236 |
| 부표 9-1.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 품목에 대한<br>원산지 결정기준 ..... | 243 |



##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도 .....                     | 32  |
| 그림 2-2. NAFTA 원산지검증절차 .....                       | 41  |
| 그림 3-1. 원산지규정과 생산비용 .....                         | 55  |
| 그림 3-2. FTA하에서 A국 시장가격 결정 .....                   | 57  |
| 그림 4-1. 한국 원산지관련 법령 체계도 .....                     | 114 |
| 그림 4-2.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검증절차 .....                  | 118 |
| 그림 4-3. 한-ASEAN FTA 원산지검증절차 .....                 | 119 |
| 그림 5-1.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분포(Box Plot) .....      | 135 |
| 그림 5-2. 한국의 대(對)칠레 특혜관세 대상 품목의 품목별 수출 비중 .....    | 159 |
| 그림 5-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수출 활용률간 관계 .....              | 166 |
| 그림 5-4.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수출 활용률간 관계: 한 · 칠레 FTA .....  | 168 |
| 그림 5-5.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수출 활용률간 관계: 한 · ASEAN FTA ... | 169 |
| 그림 5-6. 한 · 칠레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비교 .....           | 170 |
| 그림 6-1. 한국 200대 수출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분포 .....        | 174 |
| 그림 6-2. 한국 중소기업 200대 수출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분포 ...     | 176 |
| 그림 6-3. 생산절차에서의 원산지증명 협력 .....                    | 179 |
| 그림 6-4. 양자누적과 유사누적 적용의 차이 .....                   | 196 |



## 약어표기

|       |                                                        |
|-------|--------------------------------------------------------|
| ACP   | 아프리카, 카리브연안 및 남태평양 국가들(African, Carribean and Pacific) |
| AFTA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
| AMPS  | 과징금제도(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
| 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 AV    | 조정가치(Adjusted Value)                                   |
| CACM  |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 CC    | 2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Chapter)                          |
| CCC   |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
| CER   | 긴밀한 경제관계(Closer Economic Relations)                    |
| CH    |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Heading)                          |
| CI    | HS 6단위 이상에서의 세번변경기준(Change in Item Level)              |
| CIF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Cost, Insurance, Freight)              |
| CS    |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Subheading)                       |
| DC    | 국내산 함량 기준(Domestic Content)                            |
| DDA   |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 ECTC  | 세번변경기준 예외항목 존재                                         |
| EEA   |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
| EEZ   |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Eru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 EPA   |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 EU    | 유럽연합(European Union)                                   |
| FDI   |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 FOB   |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

|         |                                                             |
|---------|-------------------------------------------------------------|
| FTA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 FTAA    | 미주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
| GATT    |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 GSP     | 일반특혜원산지규정(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 HS      | 통합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of tariff nomenclature)          |
| MC      | 수입산 함량 기준(Import Content)                                   |
| MFN     |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
| NAFTA   |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 NC      | 순비용방법(Net Cost Method)                                      |
| OPZ     |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 PANEURO | 범유럽연합형(Pan-European Union) 유형                               |
| PSR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                         |
| PTAs    |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
| RI      | 엄격성지수(Restrictive Index)                                    |
| RM      | 원재료에 대한 충족조건(Requirement on Materials)                      |
| ROO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
| RTA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 RVC     | 역내부가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                            |
| SAARC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 TECH    | 특정공정기준(Technical Test Method)                               |
| TPL     | 관세특혜수준(Tariff Preference Level)                             |
| TRQ     |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
| TV      | 거래가액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                            |
| VNM     | 비원산지 재료가치(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 VOM     | 원산지 재료가치(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
| VP      | 부품 가액 기준(Value of Parts)                                    |
| WCO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 WO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
| WTO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 제1장 서론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에서부터 2007년에 타결된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양자간 FTA를 통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FTA 체결은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산업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국내적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이 주요 교역국 및 지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FTA가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한 이해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와 적은 부존자원을 지니고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시장구조를 지닌 한국에게 FTA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시장’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FTA가 발효된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전체 교역비중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한·미 FTA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가 발효에 들어갈 경우,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 FTA가 마무리되는 2012년에는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약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만큼 한국의 통상에서 FTA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sup>1)</sup>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비관세 장벽 및 서비스·투자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FTA는 협상과 비준 그리고 이행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협상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어 이행되는데, 협상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FTA의 효과적인 이행이다. 특히 상품교역에 있어 중심이 되는 특혜관세 혜택이 얼마나 효율적

1) ‘FTA 원산지증명제도 개편 설명회’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으로 이행되는지는 FTA 이행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국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일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FTA 협정문에 명시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되었는가’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문제는 글로벌 공장(global factory)이라 불릴 정도로 품목별로 복잡·다양한 생산공정과 원재료 조달 구조를 지닌 생산과정에서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FTA를 통한 특혜의 범위를 협정 당사국 내로 한정하기 위해 FTA 협정문에 포함되는 원산지규정은 제3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는 하지만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필요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많은 수의 FTA가 체결되면서 각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일관적이지 못한 결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들어 FTA 원산지규정은 학계와 정부 그리고 산업계 모두로부터 점차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전략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연구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과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유형, 그리고 원산지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원산지 증명과 검증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정리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이 다소 일반론적이거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다

루고 있는 반면, 제4장은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의 분포, 그리고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제5장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의 활용률(혹은 실용률)과 경직성 분석을 통해 각각의 FTA 원산지규정이 FTA 이행에 미치는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제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향후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전략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7장은 결론 부분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sup>2)</sup>

---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닌 독자의 경우,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4장부터 읽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 가. 원산지 결정

#### 1) 원산지규정의 의미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특혜무역협정(PT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sup>3)</sup>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규칙 등이라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비수혜국이 무임승차(free-riding)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특혜프로그램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특정국가로부터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당연히 원산지의 식별이 필요하므로 해당정책의 운영상 원산지규정이 요구되는데,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상계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제2조 4항.

관세(countervailing duty),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등의 경우 원산지 식별은 물론 제소대상이 된 상품의 유사상품이나 국내산업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단순히 정확한 무역통계나 수입신고서 작성을 위해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라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PTAs의 급속한 확대로 협정 당사국 간에 관세철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당사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반드시 원산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산지규정은 체약상대국 이외 국가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 특혜관세 부과에 따른 체약국 간 교역 확대, 관세혜택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PTAs의 종류가 다양하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산지규정의 통일성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무역협정에 가입한 한 국가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원산지규정이 혼재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게다가 원산지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기술적·객관적이며 불필요한 무역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기준 때문에 제품 생산자나 관세당국에 추가 부담과 비용을 안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PTAs의 범위와 수가 확대되면서 원산지규정 또한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무역왜곡이나 무역장벽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sup>4)</sup>

## 2)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

FTA의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

4) WTO(2002), p. 3.

결정하는 것으로, 통상 비특혜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FTA 원산지규정이 FTA 특혜관세 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무임승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원재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sup>5)</sup>, 이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을 정하는 것이 원산지규정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당사국의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시 말하면 원산지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역내국간 산업경쟁력 수준과 교역규모 등을 기초로 교역활성화, 우회수입방지, 투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sup>6)</sup>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어느 제품이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과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변경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이 있다.<sup>7)</sup>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method),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5) 정인교·조정란(2007), p. 29.

6) 권 율·정재완·김원중·권경덕(2005), p. 24.

7) 고준성(2003), pp. 44~45.

criterion), 특정공정기준(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또는 기술테스트방법(technical test method) 등 3가지 기준이 이용되고 있다. 이 중 부가가치기준에서는 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하는 세부기준으로 수입산 함량(MC: Import Content), 국내산 함량(DC: Domestic Content) 또는 역내부가가치 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부품 가액(VP: Value of Parts) 등이 이용되고 있다.<sup>8)</sup>

표 2-1. 실질변경기준의 비교

| 기준     | 특 징                                                                                                                                                                                                                    |
|--------|------------------------------------------------------------------------------------------------------------------------------------------------------------------------------------------------------------------------|
| 세번변경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의 체계적인 품목표상의 관세분류 변경에 의한 방식</li> <li>- 생산품과 사용원재료에 적용되는 관세분류가 다를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li> <li>- 관세분류의 변경이 실질적 변경 등에 있어서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 및 추가적 조건을 결정하는 예외품 표를 통상적으로 수반</li> </ul> |
| 부가가치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비율에 의한 방식</li> <li>- 추가된 제조 또는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li> </ul>                                                                                           |
| 특정공정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작업 또는 가공작업표에 의한 방식</li> <li>- 충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조작업 또는 가공이 행해진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li> </ul>                                                                                   |

자료: 日本關稅・外國爲替等審議會(2001)를 토대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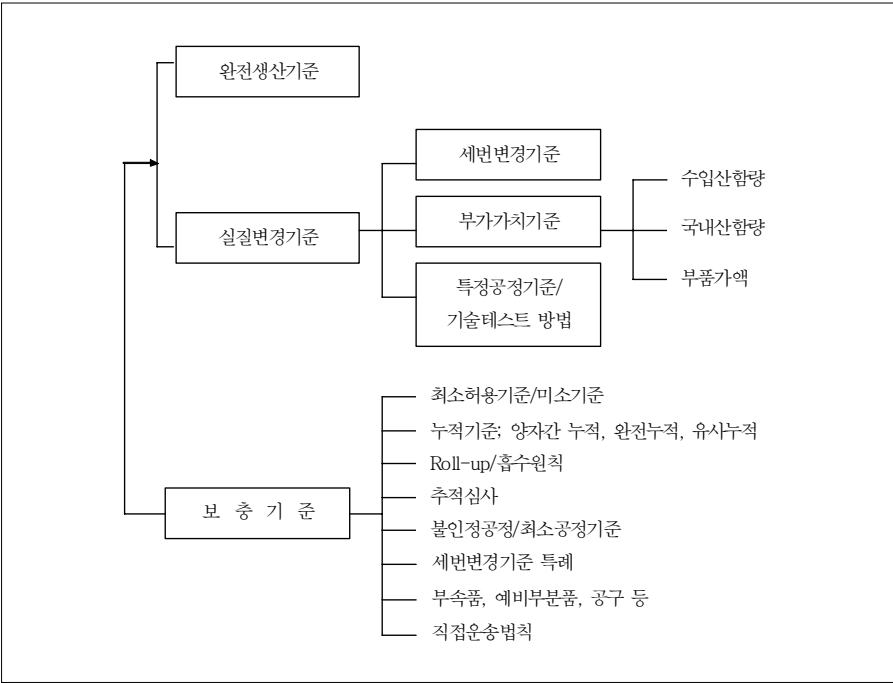
그리고 실질변경기준을 보완하거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 또는 용인기준(tolerance rule), 누적기준(cumulation rule), 롤업원칙(roll-up principle or absorption/takeover principle), 추적심사(tracing test), 불인정 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또는 최소가공기준(minimal process), 세번변경기준

8) WTO(2002), p. 4.



특례, 부속품 및 예비부분품, 직접운송법칙(direct consignment) 등과 같은 보충적인 원산지 결정기준도 적용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역외가공인정(outward processing), 재수입물품,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간접재료,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원산지 특칙규정(sector-specific special rules) 등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1.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 3) 실질변경기준 비교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술적 요건들은 특정 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어느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으로서 적용목적에 따라 혼용하거나 보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실질변경기준으로 사용되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은 해당상품의 본질적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세번변경기준이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세번(稅番, tariff classification)과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sup>9)</sup> 일반적으로 HS 4단위(heading) 혹은 6단위(subheading)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2단위(chapter)에서의 세번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sup>10)</sup>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sup>11)</sup> 특정공정기준은 상품의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생산공정이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에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특정 재료의 사용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둘 수도 있다.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높은 투명성과 예측가능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0호] 제2조 9항.

10) 통상적으로 2단위 변경기준(CC: Change in Chapter)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 4단위 변경기준(CH: Change in Heading)이 엄격하나, 6단위 변경기준(CS: Change in Subheading)은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성윤갑(2007), p. 17.

※ 참고로 HS는 통합물품분류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줄임말로,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말한다.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0호] 제2조 10항.

성을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번변경기준에서 사용되는 HS 코드는 상품의 분류를 위한 코드이지, 원산지규정을 위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은 특혜원산지 판정을 좌우하는 중요부품의 관세번호분류가 국가마다 다른 경우가 존재하고, 예외품의 표를 기술적 진보, 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최신의 것으로 경신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입국 양쪽에서 동일한 품목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공정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방식 및 공정의 선택을 상당히 제약할 뿐 아니라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하여 원산지를 부여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sup>12)</sup>

표 2-2. 각 원산지 결정기준의 장단점 비교

| 기준     | 장 점                                                                                                                               | 단 점                                                                                                                                                                                                                                                          |
|--------|-----------------------------------------------------------------------------------------------------------------------------------|--------------------------------------------------------------------------------------------------------------------------------------------------------------------------------------------------------------------------------------------------------------|
| 세번변경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산지결정을 위한 조건이 기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예측가능함.</li><li>- 제조자가 변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입증과 예측가능성이 높음.</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세분류에 맞추어 품목작성 곤란</li><li>- 분류품목은 기술적 진보, 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최신의 것으로 경신할 필요가 있음.</li><li>- 수출입국 양쪽에서 동일한 품목표를 작성할 필요</li></ul>                                                                                       |
| 부가가치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준이 정확하고 단순</li><li>- 상업상의 기록 또는 서류 등에 의해 원산지의 입증 및 결정이 가능</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준치의 경계선에 있을 경우 문제 발생</li><li>- 원재료의 시장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해 원산지 지위 좌우</li><li>- 수출입국간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제조비나 총경비 등 요소 구성과 해석에 있어서 불일치가 나타날 가능성</li><li>-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업들에게 서류제출부담 및 이행비용이 있고 사후검증에 많은 행정비용 소요</li></ul> |
| 특정공정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산지결정을 위한 조건이 정확하고 객관적</li><li>- 제조자가 변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입증이 일반적으로 용이</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정받는 가공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고 또 작성이 곤란</li><li>- 예외품의 표 작성이 곤란하고 동시에 기술적 진보, 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개정할 필요</li></ul>                                                                                                         |

자료: 日本關稅・外國爲替等審議會(2001)를 토대로 재작성.

12) 고준성(2003), p. 75.

한편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을 산정할 경우 많이 채택되고 있는 거래가격방법(TV: Transaction Value method)은 계산이 편리한 반면에 관계자간의 거래시 왜곡가능성이 있다. 특히 순비용방법(NC: Net Cost method)은 계산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sup>13)</sup>

또한 부가가치기준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높을 경우 생산자가 원산지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역내 부품이나 재료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역외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생산자로서는 보다 경쟁적인 역외부품이나 재료의 글로벌 아웃소싱에 있어 그만큼

표 2-3.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한 비교: 구체적인 사례

| 기준     | 구체적인 결정방법                                                                                                                                                                                                                                                                                                        |
|--------|------------------------------------------------------------------------------------------------------------------------------------------------------------------------------------------------------------------------------------------------------------------------------------------------------------------|
| 세번변경기준 | 예) 철광석(HS 26. 01) → 주괴(ingotto)(HS 72. 06) → 박판(HS 72. 11) → 캐비넷 부분품(HS 9403. 90) → 캐비넷(HS 9403. 10)<br>-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 캐비넷 부분품의 제조자가 원산지<br>-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 캐비넷의 제조자가 원산지                                                                                                                               |
| 부가가치기준 | + 10,000원(A국) + 10,000원(B국) + 40,000원(B국) + 20,000원(C국)<br>예) 철광석(A국산) → 주괴 → 박판 → 캐비넷 부분품 → 캐비넷<br>(20,000원) (30,000원) (40,000원) (80,000원) (100,000원)<br>- A국에 의한 부가가치: 20,000원 + 10,000원 = 30,000원 (30%)<br>- B국에 의한 부가가치: 10,000원 + 40,000원 = 50,000원 (50%)<br>- C국에 의한 부가가치: 20,000원 (20%)<br>⇒ 캐비넷의 원산지는 B국 |
| 특정공정기준 | 精鍊(A국) 압연(B국) 단절·가공(B국) 조립(C국)<br>예) 철광석 → 주괴 → 박판 → 캐비넷 부분품 → 캐비넷<br>- 캐비넷 제조에 관하여 충분히 중요한 가공이<br>精鍊이라하면 ⇒ A국이 원산지<br>압연, 단절, 가공 중 하나라면 ⇒ B국이 원산지<br>조립이라하면 ⇒ C국이 원산지                                                                                                                                           |

자료: 日本關稅・外國爲替等審議會(2001)를 토대로 재작성.

13) 고준성(2003), p. 75.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sup>14)</sup> 이에 반해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최소허용기준(또는 미소기준)을 함께 채택할 경우 FTA 체결에 따른 원산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역내무역이 추가로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FTA 원산지규정은 크게 PANEURO<sup>15)</sup>와 NAFTA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두 방식 모두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입 방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원산지규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정해 왔다(표 2-4 참고).

PANEURO 유형의 경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특혜원산지협정안을 조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7년 이후 PANEURO 유형이 EU와 체결되는 신규 FTA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적용되고 있는데, 예외조항을 포함시킨 HS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누적기준을 많이 이용하면서도 특정공정기준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sup>16)</sup> 무엇보다도 PANEURO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산 원부자재 가치(MC)와 공장도거래(ex-works)가격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최소기준은 상대적으로 높고 누적조항도 양자누적을 비롯한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을 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4) 고준성(2003), p. 52.

15) PANEURO(Pan-European)형 FTA는 EC, EFTA 국가, 중동부 유럽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FTA를 말하며, EC-불가리아 FTA, EC-체코 FTA, EFTA-터키 FTA 등 50여 개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WTO(2002), p. 3과 p. 16을 참고.

16) 권 율·정재완·김완중·권경덕(2005), pp. 123~125.

반면에 NAFTA 유형은 NAFTA 회원국과 주요 국가들 간의 FTA 체결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HS 4단위 변경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보충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정공정기준은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NAFTA 유형은 예외나 보충기준으로 최소허용기준에 대한 수준은 낮으나, 예외품목이 많으며 롤업(roll-up)원칙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누적조항은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만을 적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아시아의 경우 고유한 모델이 없어 PANEURO와 NAFTA 유형이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FTA 체결이 다각적으로 진행되면

표 2-4.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비교

| PANEURO 유형                                                                                                                                                | NAFTA 유형                                                                                                  |
|-----------------------------------------------------------------------------------------------------------------------------------------------------------|-----------------------------------------------------------------------------------------------------------|
| 유럽위원회의 원산지규정 조화노력으로 동일한 형태를 취함(1997년부터 시행)                                                                                                                |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복잡하여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
|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최소기준, 롤업(roll-up)원칙, 누적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완화, 역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폐쇄형 구조<br>① 최소허용기준: 다소 높은 수준과 섬유·의류 예외<br>② 롤업(roll-up)원칙: 전품목 대상<br>③ 누적기준: 양자+유사+완전 | 미국·요르단, 미국·이스라엘 FTA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아닌 부가가치기준 적용<br>① 7% 일반적. 유제품 등 예외 다수<br>② 자동차 제외<br>③ 양자누적(NC방식) |
| HS 4단위 변경 위주                                                                                                                                              | HS 2와 4단위 변경 위주                                                                                           |
| 부가가치기준은 MC에 기초하여 30~50% 기준 채택                                                                                                                             | 부가가치계산은 RVC 기준 채택<br>※ 자동차: 다른 품목보다 높게 책정                                                                 |
| 가격기준: Ex-works                                                                                                                                            | 가격기준: 다양                                                                                                  |
| 기술테스트: Positive 방식                                                                                                                                        | 기술테스트: 보충·예외                                                                                              |
| 1997년 이후 EU 등과 체결되는 FTA에 적용                                                                                                                               | 주로 미주지역에 적용.<br>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원산지모델 채택 가능성                                                              |
| EC, EFTA, 중동부 유럽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FTA로 EC-불가리아 FTA, EC-체코 FTA, EFTA-터키 FTA 등 50여 개                                                                              | NAFTA, 마칠레, 맥코스타리카, 맥칠레, 칠캐나다 등                                                                           |

자료: 저자 작성.

서 PANEURO나 NAFTA 유형과 같이 동아시아 국가의 원산지규정 모델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2. FTA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원산지규정의 이행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통관 비용의 최소화, 원산지규정 요건 충족 여부, 우회 수입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출 전(前) 원산지증명 단계와 수입 후(後) 원산지 검증 단계가 있다.

#### 1)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은 수출 전에 수출국가에서 FTA 특혜무역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증명 주체에 따라 기관발급제와 자율발급제로 나뉜다. 기관발급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발급신청을 받아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발급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물품의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관발급제는 ASEAN, 일본 등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신력이 높아 우회수입방지 기대효과가 있으나, 수출신고와 증명서발급 절차의 중복, 시간과 비용의 증가, 실질적인 확인이 없는 요식행위 등의 단점이 있다. 실제로 기관발급을 시행하고 있던 EU의 경우 기관 발급이 효과적으로 우회 수입을 방지하지 못하고 협정체약

국가 간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행정적 협조의 실패, 허위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자율발급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sup>17)</sup> 자율발급제는 미주지역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발급절차의 신속과 편리, 증명서 발급 비용의 절감,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허위증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FTA를 통한 교역촉진과 수출입자의 편익을 위해서는 발급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율발급제가 보다 적합할 수 있으나 허위증명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수출자와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책임 명시, 현지검증제도, 원산지허위증명에 대한 처벌 강화, 원산지사전검증제, 자료보관의 의무 등의 보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표 2-5. 원산지 증명방식의 장·단점 비교

|    | 기관증명제                                                                                                                               | 자율증명제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력이 높아 우회수입방지 기대 효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절차 신속·편리</li> <li>-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li> <li>- 통관절차 간소화</li> <li>- 계약당사자 자율책임 가능 (수입자와 수출자와 공동책임)</li> </ul>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고와 증명서 발급절차 중복</li> <li>- 절차 복잡·시간·비용 증가</li> <li>- 요식행위</li> <li>- 수입국 세수손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증명 가능성</li> <li>*보완제도 도입</li> <li>• 원산지입증책임제: 수출자나 수입자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배제</li> <li>• 현지검증제도, 허위증명처벌제, 원산지사전검증제, 자료보관의 의무 등</li> </ul> |
| 사례 | ASEAN, 알-멕시코 FTA, EU-칠레 FTA 등                                                                                                       | NAFTA, 미-싱가포르 FTA, 미-호주 FTA, 캐나다-칠레 FTA, 싱가포르-뉴질랜드 FTA                                                                                                                                |

자료: 김석오(2006), p. 22; 방호경(2004), p. 48.

17) 방호경(2004), p. 53.



## 2)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은 수입 후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수입된 상품의 특혜 원산지규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국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계로, 검증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 간접검증, 그리고 제한적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검증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검증은 수출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적 간접검증은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이 절충된 방식으로,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생산자나 수출자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그러한 검증과정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참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검증방식은 협정 회원국가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관세제도, 검증의 효율성, 검증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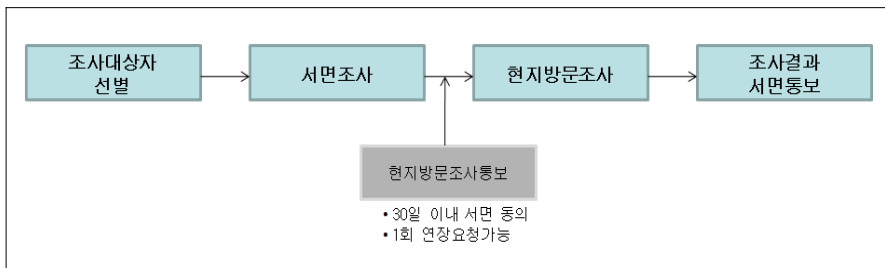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한 NAFTA의 검증절차는 크게 서면조사와 현지방문 조사로 구분된다. 검증의 첫 번째 단계로 수입국은 타방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한 관련 증빙서류 등의 필수 정보를 요청하고 서면질의서를 통보한다. 서면조사 단계만으로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수입 당사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입국이 현지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조사 수행에 앞서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의 관세행정 기관 등에 이를 서면으로 공지해야 하며, 생산자나 수출자로부터 현장방문 검증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장검증 통보를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현지방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통보를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는 현지방문조사

---

18) 김석오(2006), pp. 23~24.

를 연기할 수 있는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알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또는 양국가가 합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연기가 가능하다. 현지방문 조사 후 수입국은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검증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만약 검증결과 수입되는 해당 물품이 특혜 원산지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일 경우 특혜관세대우 부여를 중지할 수 있다.

그림 2-2. NAFTA 원산지검증절차



자료: NAFTA 협정문을 기초하여 작성.

##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각 국가의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할 경우 형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조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국제조약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유형 및 처벌수준 등은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sup>19)</sup>

19) 김석오(2008), p. 1.

### 1) 미국

미국의 FTA 원산지규정 관련 위반 행위는 사기(fraud), 중과실(gross negligence), 과실(negligence)에 의한 벌칙과 자료보관(record-keeping)에 관한 벌칙을 포함한 미국 관세법(U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FTA 원산지 허위증명에 의한 처벌은 「제1592조 사기, 중과실, 과실에 대한 벌칙(19 U.S.C. 1592 Penalties for fraud, gross negligence, negligence)」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① 사기에 의한 경우 그 상품의 ‘국내 가격(domestic value)’ 이하의 벌금, ② 중과실은 그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4배’ 중 더 적은 금액, ③ 과실의 경우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2배’ 중 더 적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중과실과 과실에 의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각각 40%,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증명서를 제공한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서면 통지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당시에는 올바른 정보였으나 후일 상황의 변화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되었고 그러한 변경 상황을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는 위법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1592조 (c)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사실을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전 공개(prior disclosure)’하면 벌금이 경감된다. NAFTA, 미·칠레 FTA, 미·싱가포르 FTA 등에서는 수입자가 잘못된 특혜원산지 신청을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를 사전 공개하고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수정 통보한 후 지불해야 할 관세를 납부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원산지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에 대한 처벌은 「제1508조 자료보관(Record-keeping)」과 「제1509조 장부와 증거에 대한 심사(Examination of books and wit-

표 2-6. 미 관세법 제1592조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관련규정     |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
|----------|--------------------------------------------------------------------------------------------------------------------------------------------------------------------------------------------------------------------------------------------------------------------------------------------------------------------------------------------------------------------------------------------------------------------------|--------------------------------------------------------------------------------------------------------------------|
| 1592 (c) | (1) 사기(fraud)<br>- 민사처벌로 그 상품의 ‘국내 가격(domestic value)’ 이하의 벌금                                                                                                                                                                                                                                                                                                                                                            |                                                                                                                    |
|          | (2) 중과실(gross negligence)<br>- 민사 처벌로 그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미국 정부가 받지 못한 법률에 따르는 ‘관세, 세금, 수수료의 4배’ 중 적은 금액 이하의 벌금<br>- 단 그러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if the violation did not affect the assessment of duties),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40%’ 이하의 벌금                                                                                                                                                                                |                                                                                                                    |
|          | (3) 과실(negligence)<br>- 민사처벌로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미국 정부가 받지 못한 법률에 따르는 ‘관세, 세금, 수수료의 2배’ 중 적은 금액 이하의 벌금<br>- 단 그러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if the violation did not affect the assessment of duties),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20% 부과’의 이하의 벌금                                                                                                                                                                                      |                                                                                                                    |
|          | (4) 사전공개(prior disclosure)<br>-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위법 사실에 대해 사전 공개한 경우<br>- 사기<br>· 사전 공개 시점이나 관세청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의 100%’ 이하의 벌금<br>· 단 그러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if the violation did not affect the assessment of duties),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10%’ 이하의 벌금<br>- 중과실이나 과실<br>· 사전 공개 시점이나 관세청의 통보 후 30일 안에 지불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 이하의 벌금 |                                                                                                                    |
|          | (5) NAFTA 사전공개<br>(6) 미·칠레 FTA 사전공개<br>(7) 미·싱가포르 FTA 사전공개<br>(8) 미·호주 FTA 사전공개<br>(9) 도미니카 공화국·중앙아메리카·미국 FTA 사전공개                                                                                                                                                                                                                                                                                                       | 수입자가 잘못된 특혜 원산지 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수정통보를 한 후 지불해야 할 관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 1592 (f) | NAFTA 원산지 허위 증명                                                                                                                                                                                                                                                                                                                                                                                                          | - 사기, 중과실, 과실에 의한 원산지 허위 증명은 위의 법규를 따름.<br>- 잘못된 정보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서면 통지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 1592 (g) | 미·칠레 FTA 원산지 허위 증명                                                                                                                                                                                                                                                                                                                                                                                                       | - (예외) 증명 당시에 올바른 정보였으나 후일 상황의 변화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되었고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상황의 변화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음.            |
| 1592 (h) | 도미니카 공화국·중앙아메리카·미국 FTA 원산지 허위 증명                                                                                                                                                                                                                                                                                                                                                                                         |                                                                                                                    |

자료: 19 U.S.C. 1592를 기초하여 작성.

ness)」에 규정되어 있다.

제1508조에 의하면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NAFTA, 미·칠레 FTA, CFTA·DR FTA의 경우 ‘1만 달러’ 혹은 ‘미국 관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자료보관에 관한 벌금 (제1509조 (g)항에 의한 벌금)’ 중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미·캐나다 협정은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1509조에서는 통관의 정확성, 관세, 벌금, 과태료 부과, 관세법 준수 등의 조사를 위해 관세 당국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표 2-7. 미 관세법 제1508조와 제1509조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관련규정     |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
| 1508 (e) | (1) NAFTA에 의한 자료 미보관<br>- 민사벌금 1만 달러 이하 또는 미 관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자료보관에 관한 벌금 이하 중 더 큰 금액 부과                                                                                       |
|          | (2) 미-캐나다 협정에 의한 자료 미보관<br>- 민사벌금 1만 달러 이하                                                                                                                                 |
| 1508 (h) | 미-칠레 FTA, 도미니카 공화국-중앙 아메리카- 미국 FTA에 의한 자료 미보관<br>- 민사벌금 1만 달러 이하 또는 미 관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자료보관에 관한 벌금 이하 중 더 큰 금액 부과                                                              |
| 1509 (g) | (2).(A) 고의적(willful)으로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유지(maintain), 보관(store) 또는 복구(retrieve)하지 않은 자<br>- 수입 건당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10만 달러 이하 또는 수입 물품의 평가 가격(appraised value)의 75% 이하 중 적은 금액의 벌금 부과 |
|          | (2).(B) 과실로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유지, 보관, 또는 복구하지 않은 자<br>- 수입 건당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1만 달러 미만 또는 수입 물품의 평가 가격(appraised value)의 40% 이하 중 적은 금액의 벌금 부과                                       |
|          | (3) 벌금의 면제<br>(A) 신의 행동(act of god) 또는 자연재해에 의해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를 분실한 경우<br>(B) 다른 증거에 의해 세관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경우<br>(C) 요구서류가 수입신고 시 세관에게 제출되어 보존되어 있는 경우                       |

자료: 19 U.S.C. 1508 and 19 U.S.C. 1509를 기초하여 작성.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벌금은 수입건당<sup>20)</sup>으로 부과되며 제출 요청을 받은 정보를 고의로 유지, 보관 및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 달러’ 또는 ‘수입 물품 평가 가격(appraised value)의 75%’ 이하 중 적은 금액의 벌금, 과실인 경우는 ‘1만 달러’ 또는 ‘물품 평가 가격의 40%’ 이하 중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정보 분실, 다른 증거에 의해 세관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경우, 요구서류가 수입 신고시 세관에 제출되어 보존되고 있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자료보관인증제도(record-keeping 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하여 인증요건을 만족한 자료보관인증기업이 제출 요청을 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 대신 위법 사실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한다. 그러나 인증기업이 반복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며 인증은 취소된다.

표 2-8. 미 관세법 제1509조 (f)에 의한 자료보관인증제도의 인증요건

- 
- (A) 자료보관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숙지
  - (B) 자료를 준비, 유지, 생산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절차
  - (C) 세관에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준비, 유지 및 생산에 관한 절차
  - (D) 자료보관 준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자 지정
  - (E) 세관의 승인을 받은 원본 및 사본 보관 절차
  - (F) 규정 위반시 세관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
- 

자료: 19 U.S.C. 1509를 기초하여 작성.

---

20) 수입건당(for each release of merchandise)은 세관수입신고서류 사본당(per C.F.3461: copies of customs entry form)을 의미한다.

## 미국의 원산지규정 위반 처벌사례

### — 입증자료 보관의무 위반사례 —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Ford사는 1996년부터 멕시코 회사인 Coclisa사로부터 수천개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Coclisa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NA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였다. 2001년 미 세관은 Ford에게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production)·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ord는 세관이 요구한 자료가 19 U.S.C. 1509(a)(1)(A)에서 정의된 ‘통관서류(entry record)’가 아니라 수출자만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해외 생산자 자료(foreign producer record)’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미 세관은 Ford사가 입증자료 보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19 U.S.C 1509(g)에 의거 약 4,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의 오디오 스피커 회사인 Pioneer사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여 멕시코에서 조립된 스피커를 수입할 때 이러한 수입물품이 NAFTA 특혜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A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수입하였고 원산지 입증자료 역시 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미 세관은 2006년 Pioneer사에 NAFTA 허위 신청에 의한 중과 실과 입증자료 보관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을 적용하여 각각 2,100만 달러,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였다.

두 사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물품을 수입한 수입자가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미 세관이 19 U.S.C 1509(g)에 근거하여 벌금을 부과한 경우이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원산지 입증자료보관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입건당으로 벌금이 부과되어 벌금의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화주(owner), 수입자, 수탁자(consignee),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뿐만 아니라 계약국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나 생산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기준을 앞두고 있는 우리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료: Barnes/Richardson(2007); Rodriguez O'Donnell(2007).

## 2) 캐나다

NAFTA, 칠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등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는 미국처럼 각 협정마다 이행법안을 제정하고, 이행에 따른 법적 절차는 관련 국내 법규를 따르고 있다. 원산지 및 통관 관련 규정에 대한 벌칙은 캐나다 관세법(Customs Act)을 따르며, 관세법을 비롯하여 관세율법(Customs Tariff), 특별수입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그리고 이러한 법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regulation)들을 위

반할 경우 AMPS(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다. AMPS하에서 수입자, 수출자, 중개인 등이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세관은 일정 형식에 따라 벌금 부과 통보(NPA: Notice of Penalty Assessment)를 한다. 벌금의 액수는 위법의 유형, 빈도, 중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단일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최고 2만 5,000캐나다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물품 관세의 특정 퍼센트나 정해진 특정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반복될수록 벌금의 액수는 증가한다. 또한 벌금이 부과될 때마다 클라이언트 위반기록문서(client contravention history)에 추가 기재되어 세관에 의한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 벌금 외에도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서면으로 통지된 후 벌금 지불이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되어 부가되나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 벌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캐나다 관세법 제160조 일반 위법과 처벌(General offence and punishment)에서는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advance ruling)나 원산지증명서의 허위 진술, 자료 또는

표 2-9. 캐나다 관세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관련규정   |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
| 160(1) | (a) 약식기소(summary conviction)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만 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li><li>-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li><li>- 벌금과 징역 동시에 부과</li></ul>         |
|        | (b) 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에 의해 처벌해야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0만 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li><li>- 5년 이하의 징역 또는</li><li>- 벌금과 징역 동시에 부과</li></ul>         |
| 161    | 160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000캐나다달러 이상 2만 5,000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li><li>-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li><li>- 징역과 벌금 동시에 부과</li></ul> |

자료: 캐나다 Customs Act를 기초하여 작성.



회계 장부의 위조, 의도적인 관세 회피 등의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처벌유형과 처벌수준은 [표 2-9]와 같다. 또한 제161조 약식기소 위법과 처벌(Summary conviction offence and punishment)에 따르면 제160조에 의한 위법 행위 외에 관세법 조항을 어긴 자는 약식기소에 따라 처벌해야 할 위법으로 1,000캐나다달러 이상 2만 5,000캐나다달러 미만의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 3) EU

EU 공동관세법에서는 공동관세 부과에 필요한 공동관세율, 원산지규정 및 일반 통관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이나 제재 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회원국의 관할 관세청에서 회원국별 법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sup>21)</sup>

### 4) 싱가포르

미국, 일본, ASEAN,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주요 국가와 FTA를 맺은 싱가포르 역시 싱가포르 관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벌칙 조항에 근거하여 FTA 원산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관세법 128L(1)조에 의하면 증빙서류 위조, 수출입 미신고, 무역거래 서류제출 거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1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 또는 포탈세액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 회피, 답변 거부나 허위 정보 제출, 부작위(omission), 과실(neglect)에 의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은 [표 2-10]과 같다.

21) 김석오(2008), p. 10, 채형복(2001), p. 34, Vermulst and Dacko(2004), p. 34.

표 2-10. 싱가포르 관세법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관련규정 |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
|------|---------------------------------------------------------------------------------------------|-----------------------------------------------------------------------------------------------------------------------------------------------------------------------------------------------------------------------------------------------------------|
| 128  | (1)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미완성의<br>세관신고, 원산지 증명서,<br>증빙서류의 작성 및 서명                                   | L(1)<br>- 1만 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포탈세액 중 더<br>높은 금액의 벌금 또는<br>-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br>- 징역과 벌금 동시에 부과                                                                                                                                                                 |
|      | A.(1) 증빙서류 위조                                                                               |                                                                                                                                                                                                                                                           |
|      | B.(1) 수출입 미신고                                                                               |                                                                                                                                                                                                                                                           |
|      | C. 무역서류 제출거부                                                                                |                                                                                                                                                                                                                                                           |
| 129  | D.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br>회피(fraudulent evasion)                                                  | L(2)<br>- (a) 포탈 세액의 10배 이상 또는 5,000<br>싱가포르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의 벌금<br>- (b) 포탈 세액의 20배 이하 또는 5,000<br>싱가포르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br>* 단 포탈세액을 규명하지 못할 경우에는<br>벌금이 5,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br>L(3) 반복적인 위법일 경우<br>- L(2)에 의한 벌금 또는<br>- 2년 이하의 징역 또는<br>- 징역과 벌금 동시에 부과 |
|      | (1) 답변 거부, 허위 정보나 허위 서류 제출<br>- 5,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br>- 12월 이하의 징역 또는<br>- 징역과 벌금 동시에 부과 |                                                                                                                                                                                                                                                           |
| 139  | 부작위(omission), 과실(neglect)에 의한 위법(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br>- 5,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                                                                                                                                                                                                                                                           |

자료: 싱가포르 Customs Act를 기초하여 작성함.



## 제3장

#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FTA를 통한 특혜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인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한 연구는 다른 무역분야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이는 원산지규정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원산지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특히 시장접근 확대 효과가 일정부분 원산지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분명하며 원산지규정이 FTA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FTA와 관련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연구 대부분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바람직한 원산지규정을 제시하거나,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FTA상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원산지규정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주요 내용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론적 접근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역내와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역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면서 원산지규정은 역내국간에는 교역과 투자 증대 및 특정 부품산업의 발전 등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연구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무역굴절은 낮은 역외관세를 부과하는 회원국을 통해 수입된 재화가 역외관세가 높은 회원국으로 무관세로 재수출되는 것을 일컫는다.<sup>22)</sup> 이는 회원국간 공동의 역외관세(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s)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없으나, 역외 국가에 대해 회원국 각자 독자적인 역외관세를 부과하는 FTA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이 무역굴절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생산과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역외국(저비용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역내국(고비용의 생산국)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23)</sup>

Krueger(1999)는 이와 같은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산지규정의 ‘숨겨진 무역장벽’(hidden protection)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특히 NAFTA를 예로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기업이 NAFTA의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값비싼 미국산 중간재를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중간재 산업이 보호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원산지규정의 보호효과는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역외국의 생산, 교역, 더 나아가 투자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서는 Krishna and Krueger (1995)와 Falvey and Reed(1998)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상

22) A국, B국, 그리고 이 두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ROW라 하자. A국과 B국간 FTA를 체결하는데, A국의 역외관세가 B국보다 낮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ROW는 A국을 통해 B국으로 수출하려는 유인을 가지며, 이를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라 한다.

23) 물론 이러한 무역전환은 역내산 중간재와 역외산 중간재가 밀접한 대체관계(close substitutes)에 있을 때 가능하다.

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Krishna and Krueger(1995) 연구의 초점은 NAFTA 원산지규정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으며, FTA 체결에 따른 교역과 후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고려하면서, FTA 체결 이전 미국과 멕시코 양국 모두 제3국으로부터 최종재를 수입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또한 분석의 편의를 위해 미국은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멕시코는 관세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미국내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미국을 A국, 멕시코를 B국이라 하고, A국과 B국의 최종재 시장가격을 각각  $P_A$ ,  $P_B$ 라 하자. 완전경쟁을 가정함에 따라  $P_B$ 는 단위생산비용  $C_B$ 와 같고, 무관세를 가정함에 따라 세계가격  $P^*$ 와도 같다. 즉,  $P_B = C_B = P^*$ 가 된다. A국은 B국과 달리 관세( $t_A$ )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A국 시장가격은 B국 시장가격보다 낮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B국 기업들은 A국으로 수출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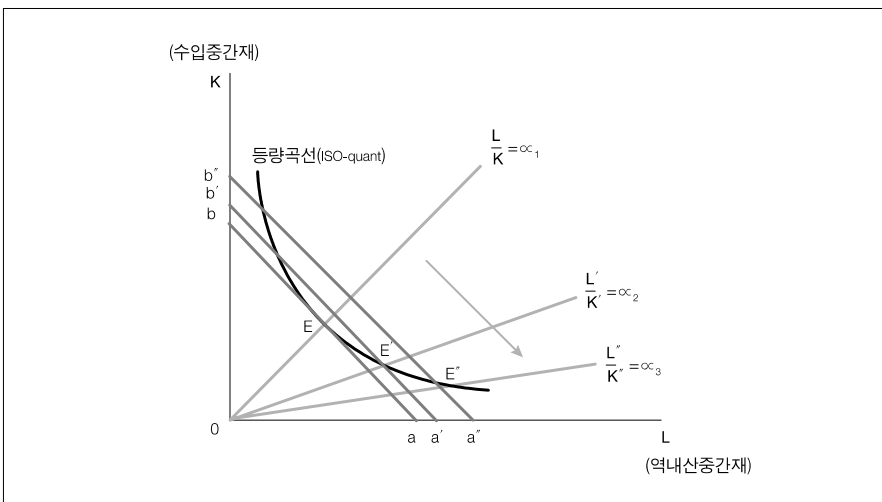
FTA 체결 이후 B국 기업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생산, 수출하는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클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고 MFN 관세율( $t_A$ ) 적용을 받아 수출할 것이다.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생산하는 경우 B국 기업의 생산비용을  $R_B(\alpha)$ 라 하자.

분석적인 관점에서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생산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데, 이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중간재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변경해야 할 때 소요되

는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원산지규정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binding)와 그렇지 않은 경우(not binding)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역외국 생산자에 비해 역내국 생산자가 효율적인 경우, 즉 원산지규정이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비용에 변화가 없다. 물론 원산지 증명 절차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서는 행정비용 부담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R_B(\alpha)$ 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  $\alpha$ ’에 따라 증가한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역내산 중간재 사용비율로 본다면 이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림 3-1]에서 주어진 등량곡선(iso-quant)하에서 역내산중간재(L)과 수입중간재(K)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비용최소화 문제를 고려해보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기업은 E점의 생산요소 조합을 이용하여 비용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때의 생산요소 사용비율은  $\alpha_1$ 이고, 단위당 비용은 등비용(iso-cost) 선인

그림 3-1. 원산지규정과 생산비용



자료: 저자 작성.



ab의 높이가 된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 즉,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역내산 중간재(L) 투입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에 E점은 기업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원산지 결정기준이 생산요소 사용비율을  $\alpha_2$ (혹은  $\alpha_3$ ) 이상 요구하는 경우, 선택되는 생산요소 조합은 E'(혹은 E'')이 되고, 이와 교차하는 등비용선은 이제 ab에서 a'b'(혹은 a''b'')로 옮겨진다. 이를 통해 역내산 중간재 사용비율이 높아 질수록, 즉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질수록 생산비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제 B국 기업의 이윤을 정의할 수 있는데, ①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생산, 수출하는 경우 B국 기업의 이윤은  $P_A - R_B(\alpha)$ 가 되고, ② MFN 관세율을 선택한 경우 B국 기업의 이윤은  $P_A - C_B(1+t_A)$ 가 된다.

B국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단순히 풀리는데,  $R_B(\alpha) < C_B(1+t_A)$ 인 경우, 즉 ①에서의 이윤이 ②에서의 이윤보다 큰 경우, B국 기업은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 생산, 수출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질수록  $R_B(\alpha)$ 가 증가하는데, 만약  $R_B(\alpha) > C_B(1+t_A)$ 라면 B국 기업은 MFN 관세율 적용을 선택하여 수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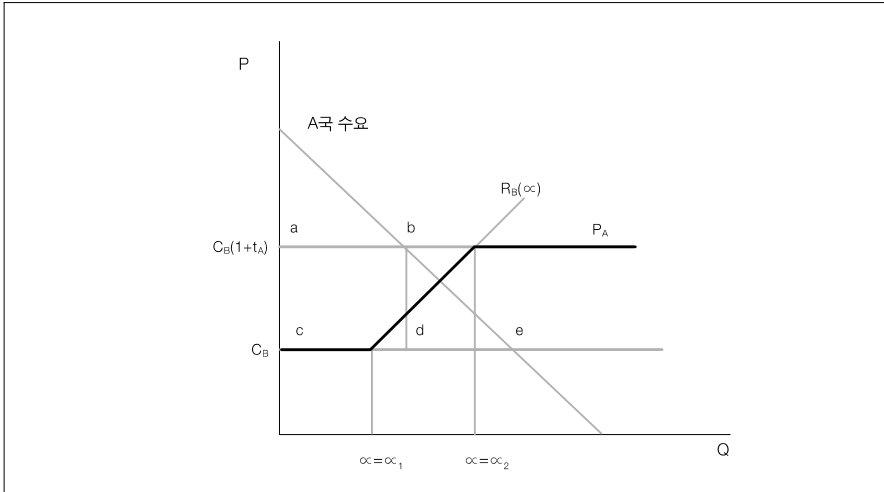
결국 A국 시장가격은  $R_B(\alpha)$ 와  $C_B(1+t_A)$  중 최소값으로 결정된다.<sup>24)</sup> 이제 FTA 체결이 A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A국 시장가격과 후생<sup>25)</sup>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3개 범위, 즉  $\alpha \leq \alpha_1$ ,  $\alpha_1 < \alpha < \alpha_2$ ,  $\alpha > \alpha_2$ 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먼저  $\alpha \leq \alpha_1$  인 경우,  $P_A = C_B$ 가 된다. 이는 원산지규정이 엄격하지 않은 경

24) 단  $C_B(1+t_A)$ 은 FTA 체결 이전 가격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25)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후생(welfare)은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와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그리고 관세수입(tariff revenue)의 합으로 정의된다.

그림 3-2. FTA하에서 A국 시장가격 결정



자료: Krishna(2005), p. 15.

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B국 기업의 생산비용은  $C_B$ 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A국 시장가격은 FTA 체결 이후 낮아졌으며,<sup>26)</sup> A국은 FTA 체결 이후 전적으로 B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A국 후생이 증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자잉여에서 얻는 이득(abce 영역)이 관세수입의 손실(abcd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alpha_1 < \alpha < \alpha_2$ 인 경우  $R_B(\alpha) < C_B(1+t_A)$ 이기 때문에,  $P_A = R_B(\alpha)$ 가 된다. 이를 통해 A국 시장가격은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질수록 높아지지만 FTA 체결 전보다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국은 FTA 체결 이후 B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나, A국 후생은 FTA 체결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는 관세수입의 손실은 그대로인 반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alpha_2$ 에 가까워질

26) FTA 체결 이전 A국 시장가격이  $P_A = C_B(1+t_A)$ 임을 상기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수록 소비자잉여에서 얻는 이득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alpha > \alpha_2$ 인 경우  $R_B(\alpha) > C_B(1+t_A)$ 가 되고,  $P_A = C_B(1+t_A)$ 가 된다. 즉,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에는 B국 기업이 MFN 관세율을 선택하여 수출하게 되면서, A국 시장가격은 FTA 체결 전과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A국 후생에도 변화가 없다.

상기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FTA 체결과 함께 A국이 B국으로부터 전적으로 수입하는 결과는 B국 기업의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에 제약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결과이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B국 기업의 생산능력에 대한 제약으로 A국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국은 FTA 체결 이후에도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병행함으로써 A국 시장가격은 FTA 체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A국 후생은 감소하는데, 이는 B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만큼에 대한 관세수입의 손실 때문이다.

####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Krishna and Krueger(1995)는 최종재가 회원국 중 한 곳에서만 생산되는 경우를 가정함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역내국 중 최종재 생산지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Falvey and Reed(1998)는 FTA 체결 전 회원국 모두 최종재를 생산하는 경우와 모두 생산하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원산지규정이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alvey and Reed의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최종재 생산에 교역중간재(tradable inputs)와 비교역중간재(non-tradable inputs)가 투입되는 산업을 가정, FTA를 체결하는 국가인 H국과 L국의 교역, 비교역중간

재 가격을 각각  $p_H$ ,  $w_H$ 와  $p_L$ ,  $w_L$ , 역외국의 교역중간재 가격을  $p^*$ , 비교역중간재 가격을  $w^*$ 라 하자. 또한 H국과 L국의 최종재에 대한 역외관세를 각각  $T_H$ ,  $T_L$ , 교역중간재에 대한 역외관세는  $t_H$ ,  $t_L$ 이라 하자.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들은  $p^* < p_L$ ,  $p^* < p_H$ 이고  $w^* < w_L < w_H$ 와  $T_H > T_L$ 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즉 역외국의 생산비용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교역재 가격이 높은 국가인 H국이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Krishna and Krueger(1995)와 마찬가지로 완전경쟁을 가정함에 따라 최종재 가격은 단위당 생산비용과 같다. 여기서는 역외국의 최종재 생산비용은  $C^*$ , FTA 체결 이전  $j(=H, L)$ 국의 최종재 생산비용은  $C_j(\min(p^*[1+t_j], p_j))$ 라 정의되었다.

FTA 체결 전 H국과 L국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경우 무역굴절의 가능성이 없는 반면, H국과 L국에서 모두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역굴절의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FTA 체결 전 H국과 L국에서 모두 최종재가 생산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는 FTA 체결 이전  $j(=H, L)$ 국의 최종재 생산비용과 관련해서  $C^* < C_j(\min(p^*[1+t_j], p_j)) < C^*[1+T_j]$ 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FTA 체결의 효과는 H국, L국간 서로의 중간재에 대한 관세철폐로 나타나고, 이때의 최종재 생산비용 원산지규정이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C_j(\min(p^*[1+t_j], p_L, p_H))$ 로 정의된다. 결국 FTA 체결 이후에는 H국이나 L국 중 최종재 생산에 효율적인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비교역중간재 가격이 낮은 L국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L국에서 사용되는 중간재 조합이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충족시켜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간재

조합에 변화가 있게 되고, 이에 달라진 생산비용을  $R_L(\min(p^*[1+t_L], p_L, p_H))$ 이라 하자.

이제 H국의 입장에서 L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직접 생산할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  $R_L(\min(p^*[1+t_L], p_L, p_H))$ 과  $C_H(\min(p^*[1+t_H], p_L, p_H))$ 를 비교하면 된다. 만약 L국에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 생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H국의 생산비용보다 낮다면, 즉  $R_L(\min(p^*[1+t_L], p_L, p_H)) < C_H(\min(p^*[1+t_H], p_L, p_H))$ 인 경우, L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L국에서 전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H국은 L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FTA 체결 전후 H국의 시장가격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FTA 체결 이후 H국의 시장가격은 세계가격보다 높고, L국의 것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H국 소비자가 L국 소비자보다 비싼 가격으로 최종재를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H국 후생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 할 수 있다. 한편 L국에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 생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H국의 생산비용보다 높다면, 즉  $R_L(\min(p^*[1+t_L], p_L, p_H)) > C_H(\min(p^*[1+t_H], p_L, p_H))$ 인 경우 최종재는 L, H국 양국에서 생산된다. 이는 원산지규정이 결과적으로 L국 최종재 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H국 최종재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H, L국에서 모두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러한 경우에는  $C_H(\min(p^*[1+t_H], p_H)) > C_L(\min(p^*[1+t_L], p_L)) > C^*[1+T_H] > C^*[1+T_L]$ 이거나  $C_H(\min(p^*[1+t_H], p_H)) > C^*[1+T_H] > C_L(\min(p^*[1+t_L], p_L)) > C^*[1+T_L]$ 가 성립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FTA 체결 이전 양국이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가정한다.

전자의 경우 양국 모두 FTA 체결 이후에도 역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FTA 체결 이후 H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L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H국은 역외국 대신 L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해 L국에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 생산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R_L(\min(p^*[1+t_L], p_L, p_H))$ 과  $C^*[1+t_H]$ 를 비교한다.

만약  $R_L(\min(p^*[1+t_L], p_L, p_H)) > C^*[1+t_H]$ 라면, H국 입장에서 FTA 체결 이후에도 역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FTA상에서의 원산지규정이 무역전환을 방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와 달리  $R_L(\min(p^*[1+t_L], p_L, p_H)) < C^*[1+t_H]$ 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L국 대신 H국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원산지규정으로 말미암아 H국 내부에 생산설비를 갖추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종합하면, Krishna and Krueger(1995)와 Falvey and Reed(1998)의 연구에서 원산지규정 적용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특징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질수록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값비싼 역내산 중간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생산비용의 증가가 오히려 역내산 중간재 수요의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이 역내산 중간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해당 산업의 원산지 결정기준 엄격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Rosellon(2000)은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역내산 중간재 수요가 증가함을 보였으나, Ju and Krishna(2005)는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오히려 역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 라. 소결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접근의 분석 결과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원산지규정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풍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연구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연구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원산지규정의 효과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역내 중간재 산업보호 효과, 더 나아가 역내국간 교역확대와 역내외국가로부터의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될 경우는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오히려 생산, 교역 및 투자에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FTA 원산지규정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역내외 국가 간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원산지규정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산지규정이 FTA 체결에 따른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실증연구가 NA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한국 FTA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 국내 연구에는 정인교(1999), 정인교 외(2007)를 들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연구를 포함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실증 연구의 주요 내용과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 2. 실증적 접근

원산지규정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원산지규정의 시장접근 및 투자에 대한 과급

효과 분석과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원산지규정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이들 연구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처음으로 계량적으로 분석된 Estevadeoardal(2000)에 기초한다.

Estevadeoardal(2000)은 NAFTA에서 마련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제시된 모든 종류의 기준에 대해 엄격성 지수를 부여, 최소 1에서 최대 7점 범위 내에서 지수를 만들었다.<sup>27)</sup> 그는 엄격성지수(RI: Restrictiveness Index)와 관세철폐 스케줄(preferential tariff phase-out programme)을 이용하여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먼저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길수록 원산지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이 관세철폐만큼이나 시장접근 협상(market access negotiation)에서 중요한 무역정책의 일부로 활용

표 3-1. NAFTA 원산지규정과 관세철폐 이행기간

|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 관세철폐 이행기간(Years to liberalization) |          |           |           |
|------------|------------------------------------|----------|-----------|-----------|
|            | 멕시코 대 미국                           | 미국 대 멕시코 | 멕시코 대 캐나다 | 캐나다 대 멕시코 |
| CI         | 1.75                               | 1        | 1.75      | 2.5       |
| CS         | 2.65                               | 1.21     | 2.65      | 1.41      |
| CS&RVC     | 2.28                               | 0.52     | 2.28      | 1.11      |
| CH         | 4.9                                | 2.28     | 5.11      | 4.56      |
| CH&RVC     | 4.71                               | 1.68     | 4.79      | 4.36      |
| CC         | 4.34                               | 1.72     | 4.47      | 6.46      |
| CC&TECH    | 5.23                               | 4.40     | 9.61      | 9.44      |

주: 엄격성 순으로 볼 때 CI<CS<CS&RVC<CH<CH&RVC<CC<CC&TECH임.

자료: Estevadeoardal(2000) p. 151 재인용.

27) Estevadeoardal의 엄격성지수는 다음의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1) CC가 CH보다 엄격하고, CH가 CS보다 엄격하다. (2) 세번변경기준에 추가되는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든다. (엄격성지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5장 참고)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NAFTA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별 관세철폐기간은 [표 3-1]과 같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이 엄격해질수록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Estevadeordal(2000)에서는 미국과 멕시코간 관세율 차이가 클수록, 즉 무역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수록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됨을 밝혔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FTA에서 원산지규정이 도입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역갈등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sup>28)</sup>

이후 Estevadeordal 지수를 이용하여 원산지규정이 시장접근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FTA 체결과 함께 회원국은 역내국간 수출 및 시장접근 기회 확대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즉 FTA 체결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효과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데, 역내국간 무역 증대와 경쟁 촉진, 이와 더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경제성장의 촉진이 기대된다.

그러나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되는 경우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시장접근 확대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Cadot *et al.*(2002)은 NAFTA의 원산지규정이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관세특혜수준의 결합효과가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는데, 추정결과에 따르면

2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rueger(1999), Krishna and Krueger(1995), Ju and Krishna(1996)을 참고한다.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이 감소하는 반면 관세특혜수준이 클수록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시물레이션을 통해 두 상반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됨에 따라 NAFTA 체결이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NAFTA의 원산지규정이 관세철폐(시장접근 확대)의 이득을 상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이 FTA 체결에 따른 역내국간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특혜관세와 원산지규정의 준수비용(*compliance costs*)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관세특혜수준에 따른 혜택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이 높은 경우 FTA 협정의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관세철폐, 통관절차 등 여타 무역조치와 더불어 특혜원산지규정의 효과를 살펴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Anson *et al.* (2005)은 멕시코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NAFTA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sup>29)</sup>을 추정함으로써 멕시코 입장에서 NA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 확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평균 준수비용이 관세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로 평균 약 6%에 이르는데, 멕시코에 대한 평균 관세특혜폭(*margin of preference*)이 약 4%임을 감안한다면 NAFTA의 원산지규정이 관세철폐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를 이용하여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비용의 최대·최소 상한을 추정하는 Herin(1986)의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 엄격할수록 기업들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지불하

29) 세관 등 정부기관이 원산지를 관리하고 검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행정비용: *administration costs*)과 수입자,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협정문에 명시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간재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변경할 때 소요되는 비용(준수비용: *compliance costs*)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보다는 MFN 관세율 사용을 선택함에 따라 FTA 활용도가 낮아진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률간 관계를 이용하여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비용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것이다.<sup>30)</sup>

예를 들어 FTA 활용률이 100%인 산업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이 준수비용보다 높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FTA 활용률이 0%인 산업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이 준수비용보다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TA 활용률이 0%와 100%인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의 관세특혜폭을 평균한 값이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의 추정치가 된다. Cadot *et al.*(2002), Carrere and de Melo(2004) 역시 NAFTA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 5.06%와 6.16%<sup>31)</sup>로 추정하고 있다. Cadot *et al.*(2006b)은 NAFTA뿐만 아니라 EU의 PANEURO 시스템의 준수비용을 추정, 각각 6.8%와 8%의 값을 얻었다. 이들은 각 FTA별 활용률이 다른 원인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서 비롯되는 준수비용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NAFTA와 PANEURO 시스템의 경우 행정비용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는 약 1.9%인 데 반해 후자의 경우 약 6.8%의 값을 얻고 있다. 이는 PANEURO 시스템의 원산지 확인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평가와 일치한다.

Carrere and de Melo(2004)의 경우 NAFTA에 관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구분하여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특정공정기준 충족에 따른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이 가장 크고, 부가

30) 해당 산업의 관세특혜폭과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이용하여 원산지규정 준수비용의 최소상한치를 추정한다. 한편 해당 산업의 관세특혜폭과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이용하면 원산지규정 준수비용의 최대상한치가 구해진다.

31) Carrere and de Melo(2004)는 Anson *et al.*(2005)이 사용한 2000년도 데이터와 2001년 데이터를 이용 각각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을 추정하였다. 본문에 제시된 값은 2001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한 값이다.

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내용이 NAFTA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Cadot *et al.*(2006a)은 단일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이용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EU와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대상국가,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연합(ACP: Africa Caribbean and Pacific Associables) 국가들간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역내산 인정비율의 변화가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역내산 인정비율을 10% 낮추면 FTA 활용률이 2.5~8.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FTA상의 원산지규정이 역내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이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Estevadeordal *et al.*(2006)은 처음으로 원산지규정과 FDI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멕시코 제조업 122개 산업을 대상으로 NAFTA 체결 이후 7년 동안 이루어진 FDI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멕시코 내 투자를 결정할 때 NAFTA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고려수단임을 밝혔다. 특히 투명하고 유연한(flexible) 원산지 결정기준이 마련된 산업에 FDI가 유입되고 있음을 보였다.

중간재에 대하여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마련된 산업의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자는 역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거나 생산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FDI 유입이 촉진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유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도 투자유입이 촉진됨을 밝힌 것으로, 글로벌 소싱 전략에 의존하는 산업의 경우 최종재 산업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이 유연할수록 중간재 산업에 대한 투자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유연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소결

지금까지 원산지규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의 주요 내용과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NAFTA 원산지규정에 기초하여 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것이므로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활용률을 낮추게 되고, FTA 체결에 따른 자유화 혜택이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주로 연산균형분석모형(CGE: Computerized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여 FTA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을 고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FTA 체결에 따른 수출량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의 효과를 파악하였는데, 정인교(1999)는 한·일 FTA, 정인교 외(2007)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예상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인교(1999)에서는 FTA에서 원산지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무역굴절 현상이 감소됨을 보였는데, 한·일 FTA 체결시 원산지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한국은 대일본 수입을 줄이고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은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오던 역외 수입품이 차단되고, 한국이 직접 수입하면서 관세수입을 확보하게 되어 후생 증진까지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인교 외(2007)에서는 원산지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원산지규정을 고려하는 경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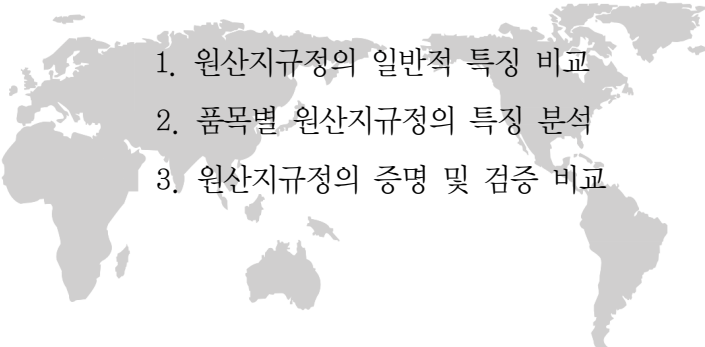
수출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감소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NA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기초하여 한·미 FTA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과 FTA 활용률(utilization rate)을 분석함으로써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FTA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 인정을 받아야만 관세철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곧 수출품목의 시장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 현황 분석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 제4장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2008년 6월 현재 한국이 체결한 FTA로는 이미 발효중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FTA와 국내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가 있다. 5개 FTA의 원산지규정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FTA 체결 상대국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FTA 원산지 조항이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미주 지역에 위치한 칠레 및 미국과 체결한 한·칠레 FTA 및 한·미 FTA는 NAFTA 유형을 따르고 있고, 유럽의 EFTA와 체결한 한·EFTA FTA는 PANEURO 유형을, 동아시아에 위치한 싱가포르 및 ASEAN과 맺은 한·싱가포르 FTA와 한·ASEAN FTA는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한·EFTA FTA는 수입산 원부자재 가치(MC)와 공장도거래(ex-works)가격, 다소 높은 최소허용기준 등을 적용한 점을 감안할 때 PANEURO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 반면, 혼합 유형에서 한·싱가포르 FTA는 NAFTA 유형의 특징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는 FTA 경험이 일천하던 당시에 NAFTA를 FTA의 전형으로 보고, NAFTA의 원산지규정을 많이 활용하였기 때문이다.<sup>32)</sup>

본 장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원산지결정에 대한 일반 적용방식이 각 FTA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방법이 실제 품목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하면서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FTA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 방식 및 한국의 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처벌규정 등 국내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FTA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32)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2005), p. 38.

##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한국은 특혜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경기준을 기본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실질변경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협정문 체계는 다소 상이해,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는 협정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EFTA FTA와 한·ASEAN FTA는 바로 부속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자간 FTA와 다자간 FTA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 FTA를 제외한 4개의 FTA에서는 원산지규정 장(Chapter)을 통해 FTA 상의 특혜관세혜택을 받는 상품을 정하는 기준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절차적인 내용은 모두 통관절차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규정 장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상품의 기준뿐만 아니라 이 상품들에 대한 신청절차까지도 규정하고 있다.<sup>33)</sup> 한·미 FTA에서는 또 한 섬유 및 의류 장(Textile and Apparel Chapter)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일부 농업과 광업제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평가기준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투자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세계화시대에서는 적용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실질적으로 완전 역내산은 아니지만 역내산 인정 범위의 확대와 경제통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완전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물품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5개 FTA 모두가 영해 내에서 획득한 것에 대해 선박의 국적 여

---

33) 강준하(2008), p. 73.

하를 막론하고 연안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해 밖의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이나 선상가공품에 대해서도 자국산 선박이 획득하였다면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자국산 선박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ASEAN 그리고 한·미 FTA에서는 기국요건(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과 등록요건(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한·EFTA FTA에서는 기국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서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가 맞서고 있다. 한·칠레 FTA와 한·미 FTA에서는 연안국주의를, 한·싱가포르와 한·EFTA에서는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sup>34)</sup>

표 4-1. FTA 원산지규정의 완전생산기준 비교

| 구분      | 완전생산기준            | 자국선박 요건     |
|---------|-------------------|-------------|
| 한·칠레    |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간주기준 | 기국요건 + 등록요건 |
| 한·싱가포르  |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간주기준 | 기국요건 + 등록요건 |
| 한·EFTA  | 완전생산기준            | 기국요건        |
| 한·ASEAN | 완전생산기준            | 기국요건 + 등록요건 |
| 한·미     | 완전생산기준            | 기국요건 + 등록요건 |

자료: 각 협정문을 토대로 작성.

나. 실질변경기준

1) 부가가치기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그리고 한·미 FTA는 DC<sup>35)</sup>를 부가가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EFTA FTA는 MC<sup>36)</sup>만을 인정

34) 강준하(2008), p. 79 참고

표 4-2.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차이점 비교

| 구 분                  |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제품기준가격               |            | FOB                        | FOB              | Ex-works               | FOB            | FOB                             |
| 부가가치 산정공식            |            | 공제법/<br>집적법 선택             | 공제법              | MC방식                   | 공제법/<br>집적법 선택 | 공제법/<br>집적법 선택<br>순원가법<br>(자동차) |
| 부가<br>가치<br>비율       | 역외산 가치     | 55% 미만<br>또는<br>70% 미만     |                  |                        |                |                                 |
|                      | 역내산 가치     | 45% 또는<br>30% 이상           | 50% 또는<br>55% 이상 | 30~60%                 | 40% 이상         | 35% 이상                          |
| 부가가치수준 <sup>1)</sup> |            | 45%<br>(과실주스 80%)<br>(공제법) | 45~55%<br>(공제법)  | 40~70%<br>(공제법<br>환산시) | 35~60%         | 35~60%                          |
| 역내추가<br>가공품          | 원산지<br>인정  | 100% 인정                    | 100% 인정          | 100% 인정                | 100% 인정        | 100% 인정                         |
|                      | 원산지<br>불인정 | 국산재료비<br>공제                | 국산재료비<br>공제      | 국산재료비<br>비공제           | 국산재료비<br>공제    | 국산재료비<br>공제                     |

주: 1) 부가가치수준은 성윤갑(2007)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토대로 작성.

하고 있다. 하지만 가치인정 수준은 낮게는 30% 이상에서 높게는 60% 이상에 이르기까지 FTA별로 다양하다. FTA별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차이점은 [표 4-2]와 같다.

부가가치비율 산정 공식에는 공제법(build-down method)과 집적법(build-up method)이 있다(표 4-3 참고). 공제법은 비원산지재료의 부가가치를 제품가격에서

35)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요구되는 국내부가가치(domestic value-added) 또는 누적기준(cumulation)이 적용될 경우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added)의 최소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6) 당해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데 허용되는 수입부품 및 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에 관한 상한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제하는 방식이고 집적법은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직접 더하는 방식이다. 한·칠레 FTA, 한·ASEAN FTA, 한·미 FTA에서는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무역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였으나, 공제법과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공제법만 규정하고 있다.

표 4-3. 부가가치기준 산정공식

| 구분                         | 수식                                       |
|----------------------------|------------------------------------------|
| 공제법<br>(Build-down Method) |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
| 집적법<br>(Build-up Method)   | $RVC = \frac{VOM}{AV} \times 100$        |

- 주: 1)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非역내산 원재료의 가격.  
2) AV(Adjusted Value): 조정가치로, 미국-싱가포르 FTA(USSFTA)에 의하면 역내재화의 경우에는 취득시 지불된 가치에서 운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외 재화를 생산자의 소재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 그리고 관세, 내국세 및 세관중계비용(customs brokerage fee) 등을 포함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이미 포함되지 않았다면), 역외재화의 경우에는 취득시 지불된 가치에서 앞의 비용들을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해당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고 획득되거나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한 원재료의 가치.

자료: 저자 작성.

부가가치의 일정비율도 계산법에 따라 기준가격이 달라지는데, 현재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는 공장도거래(ex-works)가격<sup>37)</sup>, 본선인도(FOB)가격<sup>38)</sup>, 도착항인도(CIF)가격, 공장도착(into-factory)가격이, 그리고 국내산 재료에 대해서는 공장도착

37)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0호] 제2조 11항).

38)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0호] 제2조 12항).

가격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계산법이다.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미 FTA는 FOB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선정하고 있고 한·EFTA FTA는 공장도거래가격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역내 추가가공품에 대한 원산지인정 여부도 중요하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친 반제품을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 반제품의 가격을 비원산지 재료 가격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반제품이 역내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받을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할 필요가 없으나,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미 FTA는 반제품의 가격 전체를 비원산지 재료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추가가공에 소요된 국내산 재료비는 공제할 수 있다. 반면 한·EFTA FTA에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국산재료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sup>39)</sup>

## 2) 특정공정기준

특정공정기준에는 일정한 제조나 공정이 있어야만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 positive test 방식과 일정한 제조나 공정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negative test 방식이 있다.<sup>40)</sup> 한국이 체결한 FTA 중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는 positive와 negative test 방식 모두를, 한·EFTA FTA와 한·ASEAN FTA는 positive test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의 특정공정기준 적용 물품을 비교해 보면, 직물제품(HS

39)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2005), pp. 65~66.

40) positive test 방식은 PANEURO형 FTA와 최근 체결되고 있는 FTA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주로 섬유 및 화학제품 등 공산품 분야와 관련하여 많이 이용된다. 반면 NAFTA, 멕시코·칠레 FTA 등에서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충기준이나 예외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50~60류)에 한하여 한·EFTA FTA는 염색공정이나 날염공정을 거친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입한 생지(生紙)의 가격이 최종 제품가격의 50% 이하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류제품(HS 61~62류)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는 원단의 원산지와는 무관하게 재단과 봉제공정을 거친 의류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고, 한·싱가포르 FTA는 보다 엄격하게 자국산 원단을 사용하고 재단과 봉제공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ASEAN FTA와 한·미 FTA는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품목별 원산지규정(PSR: Product Specific Rule)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4-4. FTA별 특정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

| 품명       | 세번부호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의류<br>제품 | 제61류~<br>제62류 | CC +<br>국산원단요건 +<br>재단·봉제요건 | CC+재단·<br>봉제요건        | CC+재단·봉제요건                                                     | PSR에<br>개별적으로 규정 |          |
| 직물       | 제50류~<br>제60류 | CC                          | CC                    | CTH 또는 염색 또는<br>날염(단, 수입한 생지의<br>가격이 최종<br>제품가격의 50%<br>이하일 것) |                  |          |
| 테스트 방식   |               | Positive/<br>Negative       | Positive/<br>Negative | Positive                                                       | Positive         | Positive |

자료: 각 협정문을 토대로 작성.

다. 원산지 보충규정

1) 최소허용기준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최대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되는, 즉 누적기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수입된 재료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완화하거나 매우 적은 비역내산 부품이나 재료를 둘러싼 원산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미로 도입되었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최소허용기준은 품목별로 또한 FTA별로 상이하다. 일반품목의 경우 한·칠레 FTA는 FOB가격으로 8% 미만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나머지 4개 FTA는 10% 미만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EFTA FTA는 공장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한·미 FTA는 조정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섬유제품(HS 50~63류)은 중량을 기준으로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는 8% 미만, 한·EFTA FTA와 한·ASEAN FTA는 10% 미만, 한·미 FTA는 7% 미만을 최소허용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 HS 1~14류에 해당하는 기초농산물은 한·칠레 FTA는 8%+CS, 한·EFTA FTA는 10%+CS, 한·ASEAN FTA는 1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싱가포르 FTA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HS 15~24류인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ASEAN FTA는 기초농산물과

표 4-5. FTA별 최소허용기준 비교

| 구 분                           |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FTA                                             |
|-------------------------------|----------------------|----------------|-----------------|----------------------|-----------------|-----------------------------------------------------|
| 일반용품<br>(가격기준)                |                      | 8% 미만<br>(FOB) | 10% 미만<br>(FOB) | 10% 미만<br>(Ex-works) | 10% 미만<br>(FOB) | 10% 미만<br>(AV)                                      |
| 섬유제품<br>(중량기준)<br>(제50류~제63류) |                      | 8% 미만          | 8% 미만           | 10% 미만               | 10% 미만          | 7% 미만                                               |
| 농수<br>산물                      | 기초농산물<br>(제1류~제14류)  | 8%+CS          | 적용 제외           | 10%+CS               | 10% 미만<br>(FOB) | 일부 농수산물은<br>최소기준을<br>적용하지 않기로<br>합의하고 이를<br>부속서에 정리 |
|                               | 가공농산물<br>(제15류~제24류) | 8%+CS          | 10%+CTSH        | 10%+CS               |                 |                                                     |

자료: 성윤갑(2007).



같은 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한·싱가포르 FTA도 10%+CS를 최소허용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농산물은 섬유나 일반 물품에 비해 국내 농어민 보호와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최소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다.

## 2) 누적기준

누적기준은 비원산지 재료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것이 도입되면 특정 국가에서 수입한 비원산지 재료가 특혜를 받는 국가내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 누적기준은 실제로는 FTA 체결국의 한 당사국(수출국) 내에서 완전히 생산되었거나 실질적인 변경을 거친 제품만이 FTA 체결 상대국(수입국)으로부터 특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원산지규정의 기본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원자재가 협정 밖의 국가에서 수입될 때에는 실질적 변경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같은 자재가 협정 대상국에서 수입될 때는 덜 엄격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sup>41)</sup>

현재 적용되고 있는 누적기준 형태로는 양자간 누적(bilateral cumulation),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등 세 가지가 있다.<sup>42)</sup> 양자간누적은 특혜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원산지 인증을 받지는 못했으나 당해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당사국 중 한 국가에 원산지를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해 누적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양자간 FTA의 당사국들 사이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완전누적은 상기의 누적기준 적용시 단일의 특혜 영역으로 간주되는 복수국가간 FTA에서 적용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사누적은 당해 RTA의 당사국이

41) WTO(2002), pp. 5~6.

42) 고준성(2003), pp. 56~59.

아닌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방식이다. 이는 역내산 부품 또는 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역내간 교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는 누적기준 중 양자간 누적만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EFTA FTA의 경우 4개국으로 구성된 EFTA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내국 간 누적에 대한 특례조항이 추가로 도입되었다.<sup>43)</sup> 또한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서는 부가가치누적,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이 모두 허용되고 있다.

### 3) 롤업원칙

롤업원칙은 중간재의 원산지결정과 관련이 있는데,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또 최종 제품에 사용되면 해당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방식이다.<sup>44)</sup> 이는 흡수원칙(absorption/takeover principle)이라고도 하는데,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해 역외산 재료 수입과 역내 가공을 통해 생산된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여기에 투입된 역내 부품과 부가가치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을 롤다운(roll-down)원칙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서는 롤업(roll-up)원칙만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칠레와 한·싱가포르 및 한·ASEAN FTA에서는 중간재에 대해 그리고 한·미국 FTA에서는 자가생산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한·EFTA FTA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롤업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3) 한국-EFTA FTA 협정문 부속서 I 제3조 3항과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2005), p. 72.

44) WTO(2002), p. 6.

#### 4) 불인정공정기준

불인정공정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공정을 의미하며, 대개 별도의 리스트로 규정되어 있다. 즉,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단순·경미한 작업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말하며, 최소가공(minimal process)기준 또는 불충분가공(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기준이라고도 한다. 이는 우회수입 또는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되었다.

표 4-6. FTA별 불인정공정기준의 유형비교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저장 보존 공정</li> <li>- 선적·운송 촉진 공정</li> <li>- 판매용 포장·전시공정</li> <li>- 포장변경·해체·재포장·건조·냉동·냉장</li> <li>- 혼합·절단·분류·세척</li> <li>- 탈피·분쇄·뼈 제거 등</li> <li>- 재료도포·먼지 제거</li> <li>- 회석·염화·가당</li> <li>- 단순조립·세트</li> <li>- 분해</li> <li>- 동물의 도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저장 보존 공정</li> <li>- 시험·측정·품질조사</li> <li>- 단순 포장공정(병입등)</li> <li>- 포장변경·해체·재포장·건조·냉동·염장</li> <li>- 혼합·절단·연마</li> <li>- 탈피·분쇄·뼈 제거 등</li> <li>- 재료도포·먼지 제거</li> <li>- 회석</li> <li>- 단순조립·분해</li> <li>- 동물의 도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저장 보존 공정</li> <li>- 시험·측정</li> <li>- 단순 포장공정(병입등)</li> <li>- 포장변경·해체·재포장</li> <li>- 혼합·절단·분류·세척</li> <li>- 탈피·분쇄·뼈 제거 등</li> <li>- 재료도포·먼지제거</li> <li>- 회석</li> <li>- 단순조립·분해</li> <li>- 동물의 도축</li> <li>- 식물 다림질</li> <li>- 곡물의 껍질제거·광택</li> <li>- 설탕 킬러링·럼프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저장 보존 공정</li> <li>- 포장변경·해체·재포장</li> <li>- 단순 세척·세정제거</li> <li>- 단순 도장 및 광택</li> <li>- 곡물 등의 탈각·표백</li> <li>- 연마·도장</li> <li>-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li> <li>- 단순연마·분쇄·절단</li> <li>- 선별·구분·등급화·매칭</li> <li>- 단순 포장공정</li> <li>- 라벨, 로고 등의 단순첨부, 인쇄</li> <li>- 단순 혼합</li> <li>- 단순 조합·해체</li> <li>- 단순 실험·측정</li> <li>- 동물의 도축</li> </ul> | 규정 없음 |
| 열거방식                                                                                                                                                                                                                                                                                      | 예시방식                                                                                                                                                                                                                                                               | 열거방식                                                                                                                                                                                                                                                                                                                  | 예시방식                                                                                                                                                                                                                                                                                                                                                                            |       |

자료: 각 협정문을 토대로 작성.

현재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와 한·ASEAN FTA는 불인정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불인정공정의 구체적인 정도와 유형은 FTA별로 차이가 있다. 반면 한·미 FTA는 불인정공정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sup>45)</sup>

불인정공정기준은 한·ASEAN FTA와 한·EFTA FTA에서는 열거방식(exhaustive list)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싱가포르 FTA와 한·칠레 FTA는 예시방식(illustrative list)으로 규정되어 있다.

#### 5)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과 포장재료의 원산지 결정

한국이 체결한 주요 FTA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은 본제품과 같이 수입되어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본 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속품 등을 별도로 수입하거

표 4-7. FTA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의 원산지기준 비교

|         |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                 | 운송용 포장재료 | 소매용 포장재료                      |
|---------|-------------------------------|----------|-------------------------------|
| 한·칠레    | 세번변경: 본제품 원산지<br>부가가치: 계산시 포함 | 고려 제외    | 세번변경: 본제품 원산지<br>부가가치: 계산시 포함 |
| 한·싱가포르  | 세번변경: 본제품 원산지<br>부가가치: 계산시 포함 | 고려 제외    | 세번변경: 본제품 원산지<br>부가가치: 계산시 포함 |
| 한·EFTA  | 본제품 원산지                       | 명시규정 없음  | 명시규정 없음                       |
| 한·ASEAN | 세번변경: 본제품 원산지<br>부가가치: 계산시 포함 | 고려 제외    | 세번변경: 본제품 원산지<br>부가가치: 계산시 포함 |
| 한·미     | 세번변경: 본제품 원산지<br>부가가치: 계산시 포함 | 고려 제외    | 세번변경: 본제품 원산지<br>부가가치: 계산시 포함 |

자료: 저자 작성.

45) 한·칠레 FTA 협정문 제4장 제13조,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4장 제16조, 한·EFTA 협정문 부속서 I 제6조, 한·ASEAN FTA 협정문 부속서 3 제8조.

나 통상 인정되는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와 한·미 FTA에서는 부속품 등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본 제품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면 본 제품의 원산지를 따르고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면 부가가치를 계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EFTA FTA는 전체적으로 본 제품의 원산지를 따른다고 규정한다.

운송용 포장재료나 포장류에 대해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와 한·미 FTA는 원산지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EFTA FTA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다른 FTA처럼 운송용 포장재료나 포장류는 원산지 기준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매용 포장재료나 포장류의 경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미 FTA는 본 제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준수할 경우 원산지 고려에서 제외하나 본 제품이 부가가치기준을 따를 경우 부가가치를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용 포장재료 경우처럼 한·EFTA FTA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으나, 본 제품이 부가가치기준을 따를 경우 부가가치를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6) 대체가능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 판정

대체가능물품 또는 재료(fungible goods and materials)란 종류 및 상업적 가치가 같은 재료로서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재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떤 표지에 의해서도 서로 구별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곡물, 과일, 석탄 등의 산물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 범용성 부분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sup>46)</sup> 이들 물품들은 상업적으로 원산지 구분의 필요성이 낮을

46) 한·ASEAN FTA 협정문 부속서3 제1조

뿐만 아니라 혼합 보관에 따른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주요 FTA는 대체가능물품과 재료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sup>47)</sup> 이 물품과 재료들은 수입산과 혼용하여 포장판매하거나 제품생산에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와 비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료가격의 사용범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각 회사의 재고물품관리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sup>48)</sup>

## 7)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란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 과정에서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상품, 또는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중립요소(neutral elements)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아니하는 요소를 말한다.<sup>49)</sup>

이러한 재료나 요소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한·칠레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간접재료는 생산 지역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다른 하나는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와 한·미 FTA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들 재료나 요소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

47) 한·칠레 FTA 협정문 제4장 제7조,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4장 제11조, 한·EFTA 협정문 부속서 I 제11조, 한·ASEAN FTA 협정문 부속서 3 제14조,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제7조

48) 자세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0호]」별표1참고.

49) 한·칠레 FTA 협정문 제4장 1조와 제9조,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4장 제8조

##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최근 한국이 체결한 FTA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원칙과 이를 보완하는 보충적 결정기준 외에도 상대국의 지형적 특수성과 수평적 산업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원산지특례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 1) 역외가공 인정제도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이란 FTA 체결 당사국 내에서 반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수출하여 제3국에서 가공하고 다시 해당 당사국 내로 재수입하여 최종제품을 만든 후 이를 상대 체결당사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sup>50)</sup> 해외 임가공물품이 주요 대상이 된다.

한국이 체결한 FTA 중 역외가공을 처음으로 인정된 것은 한·싱가포르 FTA이고, 그 후 한·EFTA FTA와 한·ASEAN FTA도 도입하고 있다. 이들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역외가공인정제도는 역외가공에 대한 품목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인정하는 일반적 역외가공기준과 HS 6단위 또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EFTA FTA는 양 기준 모두를 적용하고 있고 한·싱가포르 FTA와 한·ASEAN FTA는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EFTA FTA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역외가공인정기준은 역외가공비율이 10% 이하에 불과한 경우에 인정되며,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 및 한·ASEAN FTA가 채택하고 있는 제한적 역외가공인정제도는 물품요건, 대상품목, 인적요건, 대상지역, 인정요건 등이 각각 상

50)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최종 생산국에서만 발생한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국산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단 역외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하다. 이 중 제한적 역외가공인정은 사실상 개성공업지구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미 FTA는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을 지정할 수 있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다.

표 4-8. FTA별 역외가공인정제도 비교

| 구 분      |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일반적 역외가공 |          | 없음   | 없음                                       | 역외가공비용<br>10% 이하                                  | 없음                                              | 없음                            |
| 제한적 역외가공 | 물품<br>요건 | 없음   | 비원산지 총가치<br>40% 이하+원산지<br>재료가격 45%<br>이상 | 비원산지 재료가격<br>40% 이하+<br>총재료비 중 원산지<br>재료가격 60% 이상 | 역외산 재료비율<br>40% 이하+총재료비<br>중 역내산 재료비율<br>60% 이상 | 한반도<br>역외가공지<br>역위원회에<br>서 규정 |
|          | 대상<br>품목 | 없음   | 134개 품목(HS<br>10단위 기준)                   | 267개 품목 (HS<br>6단위 기준)                            | 232개 품목 (HS<br>6단위 기준) 각<br>회원국별 100개           |                               |
|          | 인적<br>요건 | 없음   | 원재료 수출자 및<br>역외가공품<br>재수입자 동일요건          | 없음                                                | 없음                                              |                               |
|          | 대상<br>지역 | 없음   | 제한없음<br>(개성공업지구<br>포함)                   | 제한없음<br>(개성공업지구 포함)                               | 개성공업지구                                          |                               |
|          | 인정<br>요건 | 없음   | · 협정상의 원산지<br>요건 충족<br>· 직접운송            | · 협정상의<br>원산지요건 충족<br>· 직접운송                      | · 협정상의<br>원산지요건 충족<br>· 직접운송                    |                               |

자료: 성윤갑(2007).

사실 역외가공은 국토 면적이 협소하여 초기 단계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한 국가 내에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최종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원재료 및 반제품이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sup>51)</sup> 전자는 싱가포르의 사례로 지형적 특수성과 수평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후자는 EFTA의 사례로 EU 국가들과 같이 지리적 인접성 및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물품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외가공인정제도는 역내산 부품의 사용 촉진과 교역 증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세행정 복잡, 무역업자의 법규준수 비용 가중, 우회수입 및 관세 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sup>52)</sup>

## 2) 개성공업지구 생산품

개성공업지구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규정을 처음으로 협정문에 적시한 것은 한·싱가포르 FTA이다. 한·싱가포르 FTA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개성공업지구와 한반도 내의 그 밖의 공업지구(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부속서 4B 제2절)”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북한 내 다른 공업지구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직접 수출되는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싱가포르가 이미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역외가공인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개성공업지구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최초로 인정한 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5년 12월 체결한 한·EFTA FTA는 특히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적용대상 품목에 있어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될 예정인 HS 6단위 267개 품목으로 제한되고 있다.<sup>53)</sup> 역외가공 지역이나 생산제품을 크게

51) 성윤갑(2007), p. 347.

52)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2005), pp. 80~81.

53) 즉, 한·EFTA FTA에서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중립화하는 대신에 적용대상품목은 실제 개성

표 4-9. FTA별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의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 구 분         |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제한적<br>역외가공 | 지역 제한                      | 없음   | 제한없음<br>(개성공업지구 포함)                                                                 | 제한없음<br>(개성공업지구 포함)                                                                                                                       | 개성공업지구                                                       | · 개성공업지구<br>제품이<br>한국산과<br>동일한<br>특혜관세를<br>부여받을 수<br>있는 구체적인<br>제도적 틀 마련<br>· “한반도역외가<br>공지역위원회”<br>에서 일정<br>기준하에<br>역외가공지역<br>(OPZ) 지정 |
|             | 대상 물품                      | 없음   | 134개 품목<br>(HS 10단위 기준)<br>제25류~제96류 중<br>해당 공산품(제36류,<br>제49류, 제93류,<br>제97류) 제외   | 267개 품목<br>(HS 6단위 기준)<br>(제39류, 제40류,<br>제62류, 제64류,<br>제69류, 제70류,<br>제73류, 제81류,<br>제82류, 제83류,<br>제84류, 제85류,<br>제87류, 제90류,<br>제91류) | 232개 품목<br>(HS 6단위<br>기준)<br>(각 회원국별<br>100개 품목<br>지정)       | · OPZ내에서<br>생산된 제품은<br>일정 요건 하에<br>한국산과<br>동일한<br>특혜관세를<br>부여받으며,<br>개성공업지구<br>외 다른<br>북한지역도<br>OPZ로 선정<br>가능                           |
|             | 인정 요건                      | 없음   | 비원산지 총가치<br>40% 미만,<br>원산지재료가치<br>45% 이상,<br>협정상의<br>원산지요건충족+ 직<br>접운송              | 비원산지 재료가격<br>40% 이하 + 총재료비<br>중 원산지재료가격<br>60% 이상, 협정상의<br>원산지요건충족+ 직접<br>운송                                                              | 역외산 재료비율<br>40% 이하 +<br>총재료비 중<br>역내산 재료비율<br>60% 이상<br>직접운송 |                                                                                                                                         |
|             | 개성<br>공업<br>지구<br>특례<br>요건 | 없음   | 4,625개 품목<br>(HS 6단위 기준)<br>개성공업지구 및<br>한반도 내에서<br>역외가공 후<br>한국에서 수출하는<br>경우 한국산 인정 | 없음                                                                                                                                        | 없음                                                           |                                                                                                                                         |

자료: 성윤갑(2007).

공업지구에서 생산하는 품목 위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개성공업지구 생산품목에 대해 원산지특례를 인정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는 개성 공업지구를 특정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은 WTO 최혜국대우 조항에도 어긋날 수 있고 체약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2005), pp. 163~164.

확대할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나, EU 및 동구권 역외가공제품의 우회수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ASEAN FTA에서는 북한의 개성시와 그 인근에 위치한 공업지구만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도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232개(HS 6단위 기준)에 한정된다. 한·미 FTA는 아직 개성공업지구 생산 물품에 대한 역외가공인정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협상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제품에 대한 원산지 예외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협의조항을 명시하고 있다.<sup>54)</sup>

##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앞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FTA에는 완전생산에 대한 정의, 부가가치기준 적용을 위한 기준가격 및 산정방법, 최소기준의 적용 등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준에 있어 서로 유사하지만 통일되지 않은 규칙을 지니고 있다. 원산지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까닭은 각각의 FTA 원산지규정에서 정의하는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다는 점도 작용하지만, 품목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보다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

많은 FTA가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5개 FTA도 부속서의 형태로 협정문에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일·ASEAN EPA를 비롯하여 일본이 ASEAN 6개 회원국과 양자간에 체결한 EPA와

54)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한·미 FTA 합의내용은 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관 및 분쟁해결 장(제22장)의 부속서 22-나에 규정되어 있다.

일·칠레 및 일·멕시코 EPA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 파키스탄 간에 맺어진 FTA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ASEAN FTA의 경우에는 협정 체결 당시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없었으나 추후 추가 협상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다.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활용되는 까닭은 일반적 원산지규정만으로 일국에서 완전 생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실질적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이 도입되기도 하지만, 수만 가지 품목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10여개의 기준으로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직된 원산지규정의 적용은 FTA를 활용한 체결국간 교역을 확대한다는 FTA 취지에 반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원산지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체결국간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원산지규정 관련 전문가들은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너무 세분화되면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동일 품목에 대하여 각각의 FTA에서 상이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늘어남으로써 수출자의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의 원산지규정을 품목별로 살펴보고 품목별로 FTA별 원산지규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한·칠레 FTA부터 한·미 FTA까지 한국이 체결한 5개 FTA는 모두 HS 2002 분류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HS 6단위 총 5,224개 품목으로 분류되는데 각 FTA

표 4-1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 규정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총계   |
|--------------------------|------|--------|--------|---------|------|------|
| CC                       | 1090 | 676    | 89     | 3       | 802  | 2660 |
| CC or CH*                |      |        |        |         | 3    | 3    |
| CC or CH*/CS*+RVC        |      |        |        |         | 1    | 1    |
| CC or CH*+RVC            |      |        |        |         | 25   | 25   |
| CC or CH+RVC             | 44   | 5      |        |         |      | 49   |
| CC or CS*                |      |        |        |         | 41   | 41   |
| CC or CS*+RVC            |      |        |        |         | 30   | 30   |
| CC or CS+RVC             | 39   |        |        |         | 2    | 41   |
| CC or RVC                | 16   |        |        | 243     | 61   | 320  |
| CC or RVC+TECH           |      |        | 41     |         |      | 41   |
| CC or TECH               | 10   | 1      |        |         |      | 11   |
| CC+ECTC                  | 293  | 216    | 31     |         | 464  | 1004 |
| CC+ECTC or CH*+RVC       | 1    |        |        |         | 1    | 2    |
| CC+ECTC or CS*           |      |        |        |         | 9    | 9    |
| CC+ECTC+RM               |      |        |        |         | 2    | 2    |
| CC+ECTC+TECH             | 293  | 61     | 25     |         | 287  | 666  |
| CC+ECTC+TECH or CS*+TECH |      |        |        |         | 3    | 3    |
| CC+RM                    |      |        |        | 2       |      | 2    |
| CC+RM or RVC+RM          |      |        |        | 11      |      | 11   |
| CC+RM+TECH or RVC        |      |        |        | 64      |      | 64   |
| CC+RVC                   | 80   | 68     | 31     | 2       |      | 181  |
| CC+TECH                  | 1    | 230    | 231    |         | 6    | 468  |
| CC+TECH or RVC           |      |        |        | 227     |      | 227  |
| CC+TECH or RVC+TECH      |      |        | 34     |         |      | 34   |
| CH                       | 1200 | 2803   | 1469   | 9       | 1768 | 7249 |
| CH or CH*+RVC            |      |        |        |         | 1    | 1    |
| CH or CS*+RVC            |      |        |        |         | 87   | 87   |
| CH or CS+ECTC+RVC        | 1    | 9      |        |         |      | 10   |
| CH or CS+RVC             | 345  | 360    |        |         | 69   | 774  |
| CH or CS+TECH            |      |        |        |         | 8    | 8    |
| CH or RVC                | 723  | 23     | 1852   | 4014    | 47   | 6659 |
| CH or RVC*               |      |        |        |         | 4    | 4    |
| CH or RVC+TECH           |      |        | 249    |         |      | 249  |

표 4-10. 계속

| 규정                        | 한·칠레 | 한·<br>싱가포르 | 한·<br>EFTA | 한·<br>ASEAN | 한·미  | 총계    |
|---------------------------|------|------------|------------|-------------|------|-------|
| CH or TECH or RVC         |      |            |            | 21          |      | 21    |
| CH+ECTC                   | 416  | 175        | 53         | 2           | 403  | 1049  |
| CH+ECTC or CH*+RVC        | 74   |            |            |             | 24   | 98    |
| CH+ECTC or CH+RVC         |      | 74         |            |             | 2    | 76    |
| CH+ECTC or CS*            |      |            |            |             | 14   | 14    |
| CH+ECTC or CS* or CS*+RVC |      |            |            |             | 3    | 3     |
| CH+ECTC or RVC            | 1    |            | 210        | 20          |      | 231   |
| CH+ECTC or TECH           |      |            |            |             | 4    | 4     |
| CH+ECTC+RVC               | 102  |            | 1          |             | 9    | 112   |
| CH+RM                     |      |            | 5          | 1           | 1    | 7     |
| CH+RM or RVC              |      |            |            | 3           |      | 3     |
| CH+RM or RVC+RM           |      |            |            | 13          |      | 13    |
| CH+RVC                    | 240  | 355        | 117        | 4           | 119  | 835   |
| CH+RVC or CS*+RVC         |      |            |            |             | 7    | 7     |
| CH+RVC or RVC             |      |            | 34         |             |      | 34    |
| CS                        | 77   | 117        | 34         |             | 630  | 858   |
| CS or RVC                 | 5    | 1          |            | 61          | 82   | 149   |
| CS* or CH or RVC          | 1    |            |            |             |      | 1     |
| CS*+RVC                   |      |            |            |             | 2    | 2     |
| CS+ECTC                   | 13   |            |            |             | 91   | 104   |
| CS+ECTC or CS*+RVC        |      |            |            |             | 24   | 24    |
| CS+ECTC+RVC               | 8    |            |            |             |      | 8     |
| CS+RVC                    | 98   | 19         |            |             | 8    | 125   |
| RM                        |      |            | 478        |             |      | 478   |
| RVC                       | 30   | 31         | 201        | 61          | 31   | 354   |
| RVC+RM                    |      |            | 12         | 5           |      | 17    |
| WO                        |      |            | 23         | 458         |      | 481   |
| 기타                        | 23   |            | 4          |             | 49   | 76    |
| 총합계                       | 5224 | 5224       | 5224       | 5224        | 5224 | 26120 |

주: CC (HS 2단위 세번변경), CH (HS 4단위 세번변경), CS (HS 6단위 세번변경), RVC (부가가치기준), RM (원재료에 대한 충족조건), TECH (특정공정기준), ECTC (적용에서 제외되는 세번 존재), WO (완전생산기준), CH\*/CS\* (각 결정기준에서 명시된 4단위/6단위에서의 세번변경), RVC\* (특정 세번에 한해 부가가치기준 적용)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원산지규정에서 5,22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정별로 분류하여 [표 4-10]에 정리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특정공정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특정공정기준의 경우 하나의 결정기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바, [표 4-10]의 분류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주요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HS 2단위(CC), 4단위(CH) 그리고 6단위(CS) 세번변경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경우 다른 결정기준과 결합하거나 2개 이상의 적용규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또한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원자재 혹은 생산요소에 대한 역내 생산조건을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기준(Requirement on Materials, 이하 RM)으로 다른 결정기준과 결합하거나 독립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완전생산기준만을 인정하는 경우를 ‘WO(Wholly Obtained)’로 분류하여 따로 집계하였다. 특히 선택적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특정 호나 소호로부터의 세번변경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로 표기하여 따로 분류하였다.<sup>55)</sup> [표 4-10]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를 이러한 방법에 따라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기타를 포함하여 총 61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56)</sup>

5개 FTA 전체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CH)이 전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27.8%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RVC)을 선

55) 예를 들어 ‘CC or CH\*+RVC’는 HS 해당 상품이 HS 2단위에서 세번변경이 일어났거나 혹은 특정 4단위에서의 세번변경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56)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위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로, 특히 한 소호를 2개 이상의 품목으로 세분하여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타로 분류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택적으로 사용하는 원산지규정이 25.5%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을 적용하는 경우가 10.2%를 구성하고 있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이 단독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한·ASEAN FTA를 제외한 나머지 4개 FTA에서 고루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에 그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RVC)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원산지규정의 경우는 한·ASEAN FTA에서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이용되면서 전체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경직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볼 수 있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의 경우는 한·칠레, 한·미 그리고 한·싱가포르 FTA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FTA별로 비교했을 때, 한·미 FTA가 61개 유형 중, 40개 유형을 사용하여 가장 다양한 결정기준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FTA 조항을 단순화하여 분류한 유형이 많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다양한 결정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타로 분류된 품목이 49개로 5개 FTA 중 가장 많다는 점이나 NAFTA 원산지규정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은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는 한·칠레 FTA가 27개 유형을 사용하여 한·미 FTA에 이어 가장 많은 결정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ASEAN FTA, 한·EFTA FTA 그리고 한·싱가포르 FTA는 비교적 많지 않은 유형의 결정기준이 이용되고 있다.

한·미 FTA와 한·칠레 FTA는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에 있어 서로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 각각의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을 적용하는 경우가 한·미 FTA의 경우 1,768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의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칠레 FTA도 23.0%에 해당되는 1,200개 품목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따르고 있다. 또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한·미와 한·칠레 FTA 경우 각각 802개 품목과 1,090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의 절반에 가까운 품목이 2단위 혹은 4단위 세번변



경기준을 유일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총 630개 품목으로 전체의 약 1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칠레 FTA에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보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선택적 원산지 결정기준이 한·미 FTA에 비해 많은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도 유형상으로는 나머지 두 FTA보다는 한·미 FTA나 한·칠레 FTA와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다. 전체 품목의 53.7%에 이르는 2,803개 품목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을 단독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단위 세번변경을 적용하는 경우도 전체의 12.9%에 이른다. 그러나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이 한·미 FTA나 한·칠레 FTA에 비하여 적고, 2단위 혹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단독으로 이용되는 품목 비중이 전체의 2/3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나 한·칠레 FTA에 비해 간단·명료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EFTA FTA와 한·ASEAN FTA는 비교적 단순한 원산지규정을 지니고 있다. EU 방식의 원산지규정 특성을 지닌 한·EFTA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전체 품목의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총 1,469개로 28.1%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충족할 경우 최종 생산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도 478개 품목(9.2%)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sup>57)</sup>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은 ‘품목별 원산지규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다. 총 5,224개 품목 중 4,014개 품목이 부가가치기준 혹은 4

57) 주로 1차산품 및 가공 1차산품의 경우에 원산지 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점에 따라 동 조항을 완전생산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협정문에 규정된 내용에 기초하여 이를 ‘생산 재료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는 원산지규정으로 분류하였다.

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이 간결한 형태를 지니게 된 데에는 원산지규정을 설정함에 있어 Negative List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5,224개 전 품목에 대해 일일이 결정기준을 명시하는 Positive List 방식이 아닌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품목은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FOB가격의 40% 이상이거나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실제로 총 5,224개 품목 중, 품목별 원산지규정으로 정의되지 않은 3,920개 품목은 일반 원산지 결정규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한·ASEAN FTA에서 458개 품목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생산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축수산물에 적용되고 있다.

## 나. 산업별·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각각의 FTA에서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규정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유사성과 차별성이다. 동일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서로 상이할 경우, 여러 지역에 수출을 하는 생산자는 다양한 원산지규정을 맞추기 위해 각기 다른 원재료 조달과 생산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FTA별 원산지규정의 수직적 분포를 살펴보는 것 외에도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수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소절에서는 97장으로 된 HS 분류를 15개 대분류로 나누어 각 품목별 FTA 원산지규정을 비교하였다.<sup>58)</sup>

먼저 HS 1~10류를 포함하는 1차산품의 경우, HS 6단위 396개 품목을 포함하고

58) HS 2단위를 15개 산업으로 분류한 분류표는 [부록 1]에 정리하였다.

표 4-1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1차산품

| 규정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소계   |
|--------------|------|--------|--------|---------|-----|------|
| CC           | 310  | 226    |        |         | 288 | 824  |
| CC or TECH   |      | 1      |        |         |     | 1    |
| CC+ECTC      | 86   | 167    |        |         | 86  | 339  |
| CH+RM or RVC |      |        |        | 3       |     | 3    |
| CS           |      |        |        |         | 1   | 1    |
| CS+ECTC      |      |        |        |         | 1   | 1    |
| RM           |      |        | 358    |         |     | 358  |
| RVC          |      | 2      | 3      | 17      |     | 22   |
| RVC+RM       |      |        | 12     |         |     | 12   |
| WO           |      |        | 23     | 376     |     | 399  |
| 기타           |      |        |        |         | 20  | 20   |
| 소계           | 396  | 396    | 396    | 396     | 396 | 1980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있다. 한·칠레와 한·싱가포르 그리고 한·미 FTA 원산지규정에서 1차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주로 2단위 세번변경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2단위 세번변경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여 단순가공이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쇠고기 (HS 020210)의 경우 생우를 수입하여 도축·포장할 경우 2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나는데, ‘1장으로부터의 HS 2단위 세번변경을 제외한 세번변경’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원산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FTA는 기타로 분류된 결정기준이 20개 품목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HS 6단위로 분류된 품목을 더욱 세분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한·EFTA FTA의 경우는 생산 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생산 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은 해당 제품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나, 분류에 있어 따로 집계하였다. 한·ASEAN FTA의 경우도 1차산품에 대한 원산지는 2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완전생산기준만을 허용하고 있다.

가공1차산품의 경우도 2단위 세번변경과 같은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주로 이용

표 4-1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가공1차산품

| 규정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SEAN | 한·미 | 소계   |
|-----------------|------|--------|--------|--------|-----|------|
| CC              | 122  | 114    | 10     | 2      | 225 | 473  |
| CC or CH*       |      |        |        |        | 3   | 3    |
| CC or RVC       |      |        |        | 30     |     | 30   |
| CC+ECTC         | 12   | 29     | 31     |        | 77  | 149  |
| CC+ECTC+RM      |      |        |        |        | 2   | 2    |
| CC+RM           |      |        |        | 2      |     | 2    |
| CC+RM or RVC+RM |      |        |        | 11     |     | 11   |
| CC+RVC          | 75   | 68     | 31     | 2      |     | 176  |
| CH              | 26   | 28     | 57     |        | 12  | 123  |
| CH or RVC       |      |        |        | 177    |     | 177  |
| CH+ECTC         |      | 3      | 9      |        | 2   | 14   |
| CH+RM           |      |        | 5      | 1      | 1   | 7    |
| CH+RM or RVC+RM |      |        |        | 12     |     | 12   |
| CH+RVC          | 95   | 84     | 70     | 1      |     | 250  |
| CS              |      |        |        |        | 3   | 3    |
| RM              |      |        | 120    |        |     | 120  |
| RVC             | 3    | 7      |        | 14     |     | 24   |
| RVC+RM          |      |        |        | 5      |     | 5    |
| WO              |      |        |        | 76     |     | 76   |
| 기타              |      |        |        |        | 8   | 8    |
| 소계              | 333  | 333    | 333    | 333    | 333 | 1665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되고 있는데, 특히 한·미 FTA의 경우 HS 6단위로 총 333개 품목 중 225개 품목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한·ASEAN FTA는 HS 4단위에서의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어 비교적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1차산품과 가공1차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완전생산기준과 같은 강력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제품에 민감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S 25~28류를 포함하는 가공광물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과 4단위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칠레 FTA만이 110개 품목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FTA에 비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칠레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품

표 4-1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가공광물

| 규정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소계   |
|------------------|------|--------|--------|---------|-----|------|
| CC               | 110  |        |        |         | 5   | 115  |
| CH               | 42   | 321    | 151    |         | 307 | 821  |
| CH or CS+TECH    |      |        |        |         | 8   | 8    |
| CH or RVC        | 180  |        | 182    | 334     |     | 696  |
| CH+ECTC          |      | 13     |        |         |     | 13   |
| CH+ECTC or TECH  |      |        |        |         | 4   | 4    |
| CS               |      |        | 1      |         | 3   | 4    |
| CS* or CH or RVC | 1    |        |        |         |     | 1    |
| CS+ECTC          |      |        |        |         | 7   | 7    |
| 기타               | 1    |        |        |         |     | 1    |
| 소계               | 334  | 334    | 334    | 334     | 334 | 1670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목은 주로 광·화·슬랙의 26류로 26류로 분류된 109개 품목 (HS 6단위 기준)이 모두 동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가죽제품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EFTA FTA의 경우 동 품목군의 전 품목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58개 품목에 동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한·ASEAN FTA는 73개 품목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EFTA나 한·싱가포르 FTA에 비해 느슨한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1개 품목에 대해서만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이용되고 있다.<sup>59)</sup>

표 4-1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가죽제품

| 규정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소계  |
|----------------|------|--------|--------|---------|-----|-----|
| CC             | 22   |        |        | 1       | 14  | 37  |
| CC or TECH     | 10   |        |        |         |     | 10  |
| CC+ECTC        |      | 10     |        |         |     | 10  |
| CC+TECH        |      |        |        |         | 4   | 4   |
| CH             | 23   | 58     | 74     |         | 27  | 182 |
| CH or RVC      |      |        |        | 73      |     |     |
| CH+ECTC        | 19   | 6      |        |         |     | 25  |
| CH+ECTC or CS* |      |        |        |         | 14  | 14  |
| CS             |      |        |        |         | 15  | 15  |
| 소계             | 74   | 74     | 74     | 74      | 74  | 370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59)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은 HS 420321이다.

고무·화학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ASEAN FTA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1개 품목의 경우만 예외적인 조항을 부과하고 있다. 한·EFTA FTA도 한·ASEAN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4단위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한·미 FTA나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대다수 품목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이 적용된다.

표 4-15.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고무·화학

| 규정                | 한·칠레 | 한·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소계   |
|-------------------|------|------|--------|---------|-----|------|
| CC                | 15   | 6    |        |         | 17  | 38   |
| CC or CH+RVC      |      | 3    |        |         |     | 3    |
| CC+ECTC           |      | 9    |        |         | 9   | 18   |
| CH                | 255  | 677  | 79     |         | 587 | 1598 |
| CH or CS+RVC      |      |      |        |         | 5   | 5    |
| CH or RVC         | 489  |      | 684    | 832     |     | 2005 |
| CH+ECTC           | 7    | 73   | 2      |         | 43  | 125  |
| CH+ECTC or CH+RVC |      | 16   |        |         | 2   | 18   |
| CH+ECTC or RVC    |      |      | 47     |         |     | 47   |
| CH+RM or RVC+RM   |      |      |        | 1       |     | 1    |
| CH+RVC            | 25   | 58   |        | 3       | 62  | 148  |
| CS                | 30   |      | 5      |         | 113 | 148  |
| CS or RVC         | 4    | 1    |        | 7       |     | 12   |
| CS+ECTC           | 1    |      |        |         |     | 1    |
| CS+RVC            |      |      |        |         | 5   | 5    |
| RVC               |      |      | 24     |         |     | 24   |
| 기타                | 17   |      | 2      |         |     | 19   |
| 소계                | 843  | 843  | 843    | 843     | 843 | 4215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종이·목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주로 4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이 이용되고 있다. 한·ASEAN FTA는 전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기준 충족’이라는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64개 품목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표 4-16.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종이·목재

| 규정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소계   |
|-----------|------|--------|--------|---------|-----|------|
| CC        | 24   |        |        |         | 64  | 88   |
| CH        | 202  | 209    | 211    |         | 170 | 792  |
| CH or RVC |      |        |        | 234     |     | 234  |
| CH+ECTC   | 8    | 25     | 22     |         |     | 55   |
| RVC       |      |        | 1      |         |     | 1    |
| 소계        | 234  | 234    | 234    | 234     | 234 | 1170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금속제품은 NAFTA 방식을 따르는 한·미 FTA 및 한·칠레 FTA와 다른 FTA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으나 다른 많은 혼합기준과 선택기준이 품목별로 자세히 기술되고 있다. 한·칠레 FTA의 경우도 한·미 FTA 만큼 다양하게 구분되어 분류되지는 않지만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한·싱가포르 FTA나 한·EFTA FTA, 그리고 한·ASEAN FTA의 경우는 세부 품목에서 예외적인 조항을 따르는 품목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따르는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7.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금속제품

| 규정                    | 한·칠레 | 한·<br>싱가포르 | 한·<br>EFTA | 한·<br>ASEAN | 한·미 | 소계   |
|-----------------------|------|------------|------------|-------------|-----|------|
| CC                    | 150  | 66         |            |             | 68  | 284  |
| CC or<br>CH*/CS*+RVC  |      |            |            |             | 1   | 1    |
| CC or CS*             |      |            |            |             | 41  | 41   |
| CC or CS*+RVC         |      |            |            |             | 28  | 28   |
| CC or CS+RVC          |      |            |            |             | 2   | 2    |
| CC or RVC             | 16   |            |            |             | 12  | 28   |
| CC+RVC                | 4    |            |            |             |     | 4    |
| CH                    | 247  | 500        | 453        | 9           | 299 | 1508 |
| CH or CS*+RVC         |      |            |            |             | 11  | 11   |
| CH or CS+RVC*         |      |            |            |             | 2   | 2    |
| CH or RVC             |      |            | 115        | 557         | 9   | 681  |
| CH+ECTC               | 115  | 5          |            | 2           | 58  | 180  |
| CH+ECTC or<br>CH+RVC  |      | 13         |            |             |     | 13   |
| CH+ECTC or RVC        | 1    |            |            | 12          |     | 13   |
| CH+ECTC+RVC           |      |            | 1          |             |     | 1    |
| CH+RVC                | 16   |            | 15         |             |     | 31   |
| CS                    | 25   |            |            |             | 39  | 64   |
| CS or RVC             |      |            |            | 4           | 3   | 7    |
| CS+ECTC               | 4    |            |            |             | 8   | 12   |
| CS+ECTC or<br>CS*+RVC |      |            |            |             | 1   | 1    |
| CS+ECTC+RVC           | 6    |            |            |             |     | 6    |
| 기타                    |      |            |            |             | 2   | 2    |
| 소계                    | 584  | 584        | 584        | 584         | 584 | 2920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운송기기 및 기타 운송기기의 경우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운송기기의 경우 한·칠레 FTA와 한·ASEAN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부가가치기준만이 단독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한·EFTA FTA는 HS 6단위 76개 품목 중 73개 품목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의 혼합기준이 주요 결정기준이 되고 있으며 한·미 FTA의 경우는 보다 세부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명시되어 적용되고 있다.

표 4-18.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운송기기

| 규정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소계  |
|--------------------|------|--------|--------|---------|-----|-----|
| CC+RVC             | 1    |        |        |         |     | 1   |
| CH                 |      | 18     |        |         | 4   | 22  |
| CH or CS*+RVC      |      |        |        |         | 17  | 17  |
| CH or CS+RVC       |      | 6      |        |         |     | 6   |
| CH or RVC          | 48   |        | 73     | 51      | 3   | 175 |
| CH+ECTC or CH*+RVC |      |        |        |         | 9   | 9   |
| CH+ECTC or RVC     |      |        | 1      |         |     | 1   |
| CH+RVC             |      | 52     |        |         |     | 52  |
| CH+RVC or RVC      |      |        | 2      |         |     | 2   |
| CS or RVC          |      |        |        |         | 15  | 15  |
| RVC                | 27   |        |        | 25      | 28  | 80  |
| 소계                 | 76   | 76     | 76     | 76      | 76  | 380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기타 운송기기의 경우 한·ASEAN FTA와 한·EFTA FTA가 4단위 세번변경기

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3개 FTA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에서부터 6단위 세번변경기준까지 품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강력한 원산지 결정기준도 15개 품목에서 이용되고 있다.

표 4-19.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기타운송기기

| 규정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소계  |
|--------------------|------|--------|--------|---------|-----|-----|
| CC                 |      | 15     |        |         |     | 15  |
| CC or CH+RVC       | 17   |        |        |         |     | 17  |
| CC or RVC          |      |        |        |         | 9   | 9   |
| CH                 | 41   | 25     |        |         | 24  | 90  |
| CH or RVC          |      |        | 57     | 58      |     | 115 |
| CH+ECTC or CH*+RVC |      |        |        |         | 10  | 10  |
| CH+RVC             |      | 7      |        |         |     | 7   |
| CH+RVC or RVC      |      |        | 1      |         |     | 1   |
| CS                 |      | 11     |        |         | 12  | 23  |
| CS+ECTC            |      |        |        |         | 2   | 2   |
| 기타                 |      |        |        |         | 1   | 1   |
| 소계                 | 58   | 58     | 58     | 58      | 58  | 290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의류·직물 제품은 FTA 상대국에 따라 FTA의 주요 수혜품목이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한국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품목이다. 한·미 FTA에서 섬유·직물 제품은 대표적인 수혜품목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한·ASEAN FTA의 경우에는 ASEAN으로부터 수입 급증이 우려되는

표 4-2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의류·직물

| 규정                          | 한·칠레 | 한·<br>싱가포르 | 한·<br>EFTA | 한·<br>ASEAN | 한·미 | 소계   |
|-----------------------------|------|------------|------------|-------------|-----|------|
| CC                          | 177  | 125        | 79         |             | 42  | 423  |
| CC or RVC                   |      |            |            | 211         |     | 211  |
| CC or RVC+TECH              |      |            | 41         |             |     | 41   |
| CC+ECTC                     | 195  | 1          |            |             | 291 | 487  |
| CC+ECTC or CS*              |      |            |            |             | 9   | 9    |
| CC+ECTC+TECH                | 293  | 61         | 25         |             | 287 | 666  |
| CC+ECTC+TECH or<br>CS*+TECH |      |            |            |             | 3   | 3    |
| CC+RM+TECH or RVC           |      |            |            | 64          |     | 64   |
| CC+TECH                     | 1    | 230        | 231        |             | 2   | 464  |
| CC+TECH or RVC              |      |            |            | 227         |     | 227  |
| CC+TECH or RVC+TECH         |      |            | 34         |             |     | 34   |
| CH                          | 20   | 462        | 226        |             | 17  | 725  |
| CH or RVC                   |      |            |            | 369         |     | 369  |
| CH or RVC+TECH              |      |            | 249        |             |     | 249  |
| CH or TECH or RVC           |      |            |            | 21          |     | 21   |
| CH+ECTC                     | 191  | 24         | 11         |             | 221 | 447  |
| CH+ECTC or RVC              |      |            |            | 8           |     | 8    |
| CH+ECTC+RVC                 | 25   |            |            |             | 9   | 34   |
| CS                          |      |            |            |             | 20  | 20   |
| CS+RVC                      | 1    |            |            |             |     | 1    |
| RVC                         |      |            | 6          |             |     | 6    |
| WO                          |      |            |            | 3           |     | 3    |
| 기타                          |      |            | 1          |             | 2   | 3    |
| 소계                          | 903  | 903        | 903        | 903         | 903 | 4515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품목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NAFTA 방식의 원산지규정이 섬유·의류 제품에 적용되면서, 과연 한·미 FTA의 한국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한·미 FTA에서 자국이나 역내에서 생산된 직물을 이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fabric-forward나 원산지 자격을 원사와 직물 모두 역내산 재료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는 yarn-forward를 적용하고 있어 역외산 원사를 주로 이용하는 한국의 경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60)</sup>

전반적으로 의류·직물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정공정을 다른 기준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복잡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FTA 간에 결정기준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예외조항을 두고 특정공정을 명시하는 강력한 원산지기준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한·ASEAN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비교적 느슨한 결정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기계류와 전기기계 그리고 정밀기계류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ASEAN과 한·EFTA FTA는 4단위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일반기계류의 경우 한·ASEAN FTA에서는 HS 6단위 총 512개 품목 중 4개 품목을 제외한 508개 품목에 동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EFTA FTA에서는 약 64%에 해당하는 품목이 동 규정을 원산지 결정

60) 이를 완화하기 위해 TPL(Tariff Preference Level)을 지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TPL은 한정된 분량에 대해서만 Yarn-forward나 Fibre-forward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로 경직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한·싱가포르나 한·칠레 FTA는 4단위 세번변경을 요구하는 품목이 각각 110개와 129개로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들에 대해 경직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미 FTA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원산지 결정기

표 4-2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일반기계

| 규정                 | 한·칠레 | 한·<br>싱가포르 | 한·<br>EFTA | 한·<br>ASEAN | 한·미 | 소계   |
|--------------------|------|------------|------------|-------------|-----|------|
| CH                 | 110  | 129        |            |             | 75  | 314  |
| CH or CS*+RVC      |      |            |            |             | 13  | 13   |
| CH or CS+ECTC+RVC  | 1    |            |            |             |     | 1    |
| CH or CS+RVC       | 173  | 189        |            |             |     | 362  |
| CH or RVC          | 2    | 10         | 329        | 508         | 24  | 873  |
| CH or RVC*         |      |            |            |             | 3   | 3    |
| CH+ECTC            |      | 4          |            |             | 18  | 22   |
| CH+ECTC or CH+RVC  |      | 14         |            |             |     | 14   |
| CH+ECTC or CH*+RVC | 25   |            |            |             |     | 25   |
| CH+ECTC or RVC     |      |            | 124        |             |     | 124  |
| CH+ECTC+RVC        | 77   |            |            |             |     | 77   |
| CH+RVC             | 71   | 92         |            |             | 57  | 220  |
| CH+RVC or CS*+RVC  |      |            |            |             | 7   | 7    |
| CS                 |      | 42         |            |             | 250 | 292  |
| CS or RVC          |      |            |            | 3           | 6   | 9    |
| CS+ECTC            | 7    |            |            |             | 38  | 45   |
| CS+ECTC or CS*+RVC |      |            |            |             | 17  | 17   |
| CS+ECTC+RVC        | 2    |            |            |             |     | 2    |
| CS+RVC             | 43   | 10         |            |             |     | 53   |
| RVC                |      | 22         | 59         | 1           | 3   | 85   |
| 기타                 | 1    |            |            |             | 1   | 2    |
| 소계                 | 512  | 512        | 512        | 512         | 512 | 2560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세번변경의 예외를 두거나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혼합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전기기계와 정밀기계도 일반기계류와 마찬가지로 동일 기준을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하는 한·ASEAN FTA와 한·EFTA FTA와는 달리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그리고 한·미 FTA는 품목별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용

표 4-2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전기기계

| 규정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소계   |
|---------------------------|------|--------|--------|---------|-----|------|
| CH                        | 78   | 61     |        |         | 55  | 194  |
| CH or CS*+RVC             |      |        |        |         | 13  | 13   |
| CH or CS+ECTC+RVC         |      | 9      |        |         |     | 9    |
| CH or CS+RVC              | 87   | 79     |        |         | 8   | 174  |
| CH or RVC                 |      | 5      | 227    | 265     | 5   | 502  |
| CH or RVC*                |      |        |        |         | 1   | 1    |
| CH+ECTC                   |      | 8      |        |         |     | 8    |
| CH+ECTC or CH*+RVC        | 49   |        |        |         | 1   | 50   |
| CH+ECTC or CH+RVC         |      | 31     |        |         |     | 31   |
| CH+ECTC or CS* or CS*+RVC |      |        |        |         | 3   | 3    |
| CH+ECTC or RVC            |      |        | 38     |         |     | 38   |
| CH+RVC                    | 18   | 49     |        |         |     | 67   |
| CS                        |      | 36     |        |         | 147 | 183  |
| CS or RVC                 |      |        |        | 22      | 1   | 23   |
| CS+ECTC                   |      |        |        |         | 34  | 34   |
| CS+ECTC or CS*+RVC        |      |        |        |         | 2   | 2    |
| CS+RVC                    | 54   | 9      |        |         | 3   | 66   |
| RVC                       |      |        | 22     |         |     | 22   |
| 기타                        | 1    |        |        |         | 14  | 15   |
| 소계                        | 287  | 287    | 287    | 287     | 287 | 1435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하고 있다. 세번변경에 대한 많은 예외조항과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의 결합 사용 등은 단순·명료한 형태를 지닌 한·ASEAN이나 한·EFTA FTA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표 4-2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정밀기계

| 규정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소계   |
|--------------------|------|--------|--------|---------|-----|------|
| CC                 | 27   | 27     |        |         |     | 54   |
| CC or CH*+RVC      |      |        |        |         | 25  | 25   |
| CC or CH+RVC       | 2    | 2      |        |         |     | 4    |
| CC or RVC          |      |        |        |         | 15  | 15   |
| CC+ECTC or CH*+RVC | 1    |        |        |         | 1   | 2    |
| CH                 | 56   | 48     |        |         | 37  | 141  |
| CH or CS*+RVC      |      |        |        |         | 10  | 10   |
| CH or CS+RVC       | 85   | 86     |        |         | 54  | 225  |
| CH or RVC          | 4    | 8      | 119    | 212     | 5   | 348  |
| CH+ECTC            | 4    | 4      |        |         | 1   | 9    |
| CH+ECTC or CH*+RVC |      |        |        |         | 4   | 4    |
| CH+RVC             | 15   | 13     | 13     |         |     | 41   |
| CH+RVC or RVC      |      |        | 31     |         |     | 31   |
| CS                 | 21   | 28     |        |         | 22  | 71   |
| CS or RVC          | 1    |        |        | 4       | 36  | 41   |
| CS*+RVC            |      |        |        |         | 1   | 1    |
| CS+ECTC or CS*+RVC |      |        |        |         | 4   | 4    |
| RVC                |      |        | 53     |         |     | 53   |
| 기타                 |      |        |        |         | 1   | 1    |
| 소계                 | 216  | 216    | 216    | 216     | 216 | 1080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그 밖에 기타 제조품과 비금속광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는 [표 4-24]와 [표 4-25]에 정리하고 있다.

표 4-2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기타 제조품

| 규정            | 한·칠레 | 한·<br>싱가포르 | 한·<br>EFTA | 한·<br>ASEAN | 한·미 | 소계  |
|---------------|------|------------|------------|-------------|-----|-----|
| CC            | 18   | 30         |            |             | 25  | 73  |
| CC or CH+RVC  | 25   |            |            |             |     | 25  |
| CC or CS*+RVC |      |            |            |             | 2   | 2   |
| CC or CS+RVC  | 39   |            |            |             |     | 39  |
| CC or RVC     |      |            |            |             | 25  | 25  |
| CC+ECTC       |      |            |            |             | 1   | 1   |
| CH            | 98   | 150        | 73         |             | 76  | 397 |
| CH or CH*+RVC |      |            |            |             | 1   | 1   |
| CH or CS*+RVC |      |            |            |             | 23  | 23  |
| CH or RVC     |      |            | 57         | 177         | 1   | 235 |
| CH+ECTC       |      | 1          |            |             |     | 1   |
| CH+RVC        |      |            | 19         |             |     | 19  |
| CS            |      |            |            |             | 4   | 4   |
| CS or RVC     |      |            |            |             | 21  | 21  |
| CS*+RVC       |      |            |            |             | 1   | 1   |
| CS+ECTC       | 1    |            |            |             | 1   | 2   |
| RVC           |      |            | 31         | 4           |     | 35  |
| 기타            |      |            | 1          |             |     | 1   |
| 소계            | 181  | 181        | 181        | 181         | 181 | 905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표 4-25.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비금속광물

| 규정        | 한·칠레 | 한·<br>싱가포르 | 한·<br>EFTA | 한·<br>ASEAN | 한·미 | 소계  |
|-----------|------|------------|------------|-------------|-----|-----|
| CC        | 115  | 67         |            |             | 54  | 236 |
| CC or RVC |      |            |            | 2           |     | 2   |
| CH        | 2    | 117        | 145        |             | 78  | 342 |
| CH or RVC |      |            | 9          | 167         |     | 176 |
| CH+ECTC   | 72   | 9          | 9          |             | 60  | 150 |
| CS        | 1    |            | 28         |             | 1   | 30  |
| CS or RVC |      |            |            | 21          |     | 21  |
| RVC       |      |            | 2          |             |     | 2   |
| WO        |      |            |            | 3           |     | 3   |
| 기타        | 3    |            |            |             |     | 3   |
| 소계        | 193  | 193        | 193        | 193         | 193 | 965 |

주: 약어 설명은 [표 4-10] 주 참고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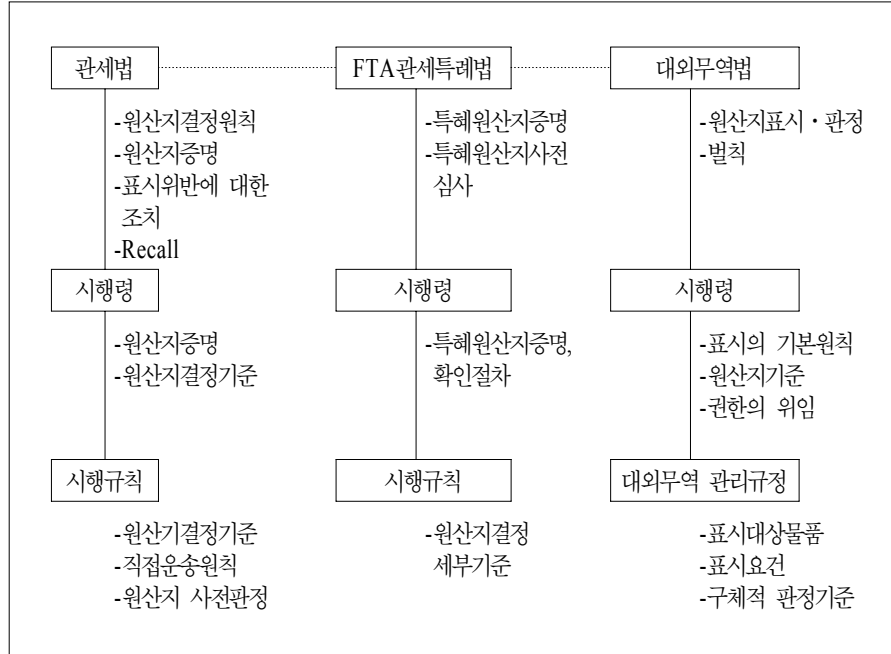
###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한국의 원산지 관련 규정은 1974년 EU의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도협약)’ 원산지 관련 부속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90년 5월 원산지규정(D1) 및 원산지등록에 관한 부속서(D2)에 가입하였다.

원산지 관련 법률체계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혜원산지규정인 관세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인 대외무역법을 기본축으로 하고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외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을 다루는 것으로는 대외무역법외에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한편 한국의 FTA 체결이 활성화

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5. 12. 31 제정, 2008. 2. 29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2006. 2. 9 제정, 2008. 2. 29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006. 2. 28 제정, 2008. 7. 15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7. 6. 1)」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체결된 한·칠레 FTA를 위해서는 각각의 같은 법령을 별도로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FTA별 원산지 이행절차와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국내 처벌법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1. 한국 원산지관련 법령 체계도



자료: 조미진 · 여지나 · 김민성(2008), p. 23.

##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한국이 기체결한 FTA의 원산지 이행에 관한 절차는 협정에 따라 통관절차에 대한 장이나 별도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FTA별로 경미한 차이가 있으나 원산지 증명과 검증, 비밀 유지와 기록보관의 의무, 사전심사 등의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는 제5장 통관절차, 한·EFTA FTA는 부속서 1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한·ASEAN FTA는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서 각각 원산지 증명과 이행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섬유 및 의류의 이행과 증명은 제4장 섬유 및 의류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 1) 원산지증명<sup>61)</sup>

한국이 기체결한 FTA의 원산지 증명방식은 FTA별로 다르며 한·싱가포르

- 61) 원산지 증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 표. 한국의 FTA별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기준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이 미화 1,000달러 미만인 상품의 상업적 및 비상업적 수입</li> <li>-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미만인 상품의 수입</li> <li>-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미만,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500 유로 미만</li> <li>-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미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1,200유로 미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FOB 가격 200달러 미만</li> <li>-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미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미만인 상품의 수입</li> <li>-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상품</li> </ul> |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하여 작성.

FTA, 한·ASEAN FTA는 기관발급제를,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미국 FTA는 자율발급제를 채택하였다.

기관발급제인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당해 물품의 FTA 해당품목 여부 및 원재료 구입 경로를 확인하여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등 제출근거서류와 함께 신청양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발급기관에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한·싱가포르 FTA는 양 국가에서 각각 택한 2개의 원산지증명 서식으로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한·ASEAN FTA는 하나의 통일된 원산지증명 서식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sup>62)</sup>

한·칠레 FTA, 한·EFTA FTA와 한·미 FTA는 모두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증명주체, 원산지증명방법과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다.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는 양국의 통일된 단일 형식으로 서명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한·EFTA FTA에서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대신 당해 물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송장 및 상업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자에 한하여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면 서명 없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도 인증해 주는 인증수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한·미 FTA는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다른 협정들과 달리 수출자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 행정 비용과 편의를 향상시켰으며,<sup>63)</sup> 원산지증명서 역시 특정형식이 없이 필수사항<sup>64)</sup>만 기재하도록 하였다.

62)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부록 2] 참고.

63) 최낙균 외(2007).

64) 다음의 요소에 한정되지 않으나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② 상품의 수입자(이는 경우에 한함)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④ 상품의 생산자(이는 경우에 한함)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 분류와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⑧ 증명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표 4-26.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구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증명방식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 증명주체 | 수출자           | 한국: 세관,<br>상공회의소,<br>싱가포르: 싱가포르<br>세관 | 수출자,<br>생산자  | 한국: 세관,<br>상공회의소,<br>ASEAN <sup>1)</sup> : 국가별<br>지정기관 | 수출자, 생산자,<br>수입자  |
| 증명방법 | 양국간<br>통일증명서식 | 양국<br>각자증명서식                          | 인보이스<br>신고방식 | 양국간<br>통일증명서식                                          | 무형식<br>(필수사항만 기재) |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6월                                                     | 4년                |

주: 1) 브루나이-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캄보디아-캄보디아 상무부,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통상부, 라오스-라오스 통상산업부,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미얀마 상무부, 필리핀-필리핀 세관, 싱가포르-싱가포르 세관, 베트남-베트남 통상부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하여 작성.

## 2) 원산지 검증

한국이 기체결한 FTA의 검증방식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섬유·의류산업은 간접검증과 공동검증)<sup>65)</sup>는 직접검증방식을, 한·ASEAN은 선(先) 간접검증 후(後) 직접검증방식을, 한·EFTA FTA는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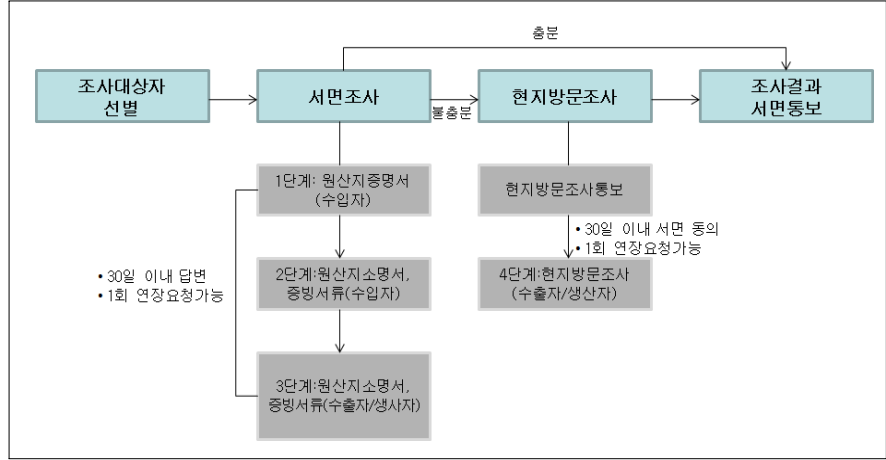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섬유·의류 사업 제외)의 검증절차는 NAFTA의 검증절차와 유사하다. 수입국은 사후검증을 위해 수입자나 수출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증빙자료 요청과 서면질의서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수출자나 생산자는 일정 기간 안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정해진

65)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입국의 관세당국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함께 원산지 검증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간 안에 요청한 정보와 답변에 회신하지 못하였거나 정보와 답변이 허위, 미흡한 경우 수입국은 해당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서면 조사 단계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수입당사국이 직접 타방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지방문조사 절차는 NAFTA 절차방식과 동일하다.

그림 4-2.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검증절차<sup>66)</sup>



자료: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을 기초하여 작성.

한·미 FTA에서는 현지방문조사 결과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자에게 이러한 예비결정 내용을 통보하고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수출자나 생산자가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국에게 관련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다. 추가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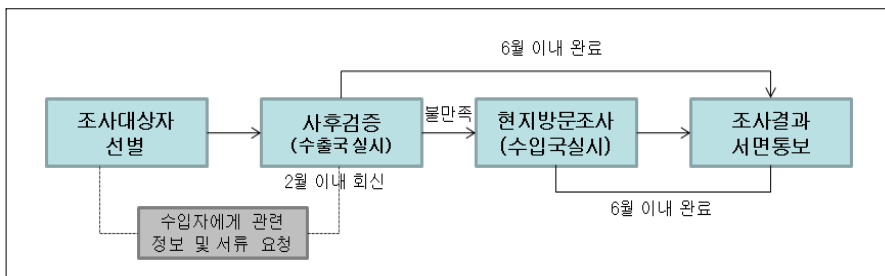
66) 한·칠레 FTA에서는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 질의서 및 필수 정보를 요청한다.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와 질의를 요청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수입 당사국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자와 생산자의 영업 비밀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수입국은 원산지 상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섬유·의류 산업의 원산지 검증을 ‘4장 섬유 및 의류’에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수입국의 요청이 있을 시 수출 당사국이 검증을 실시하는 간접 검증과 수출국과 수입국이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을 하는 공동검증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문검증은 증거의 인멸이나 변경의 위험으로 인해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한·ASEAN FTA의 검증방식은 ‘선(先) 간접검증 후(後) 직접검증’으로 서류의 진정성 또는 원산지에 대한 정보 정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수입국이 수출국의 발급기간에 언제든지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사후검증을 요청받은 수출국의 발급기관은 2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수입국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수입 당사국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대상 물품의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원산지 사후검증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국이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 및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이 직접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지방문 조사절차는 한·칠

그림 4-3. 한-ASEAN FTA 원산지검증절차



자료: 한-ASEAN FTA 협정문을 기초하여 작성.



레 FTA, 한·싱가포르 FTA와 동일하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한·EFTA FTA는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언제든지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조회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사본을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면 수출국은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수입국의 세관 공무원이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서류의 진정성 또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입국은 해당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

표 4-27. 한국의 FTA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 구분               |          |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미                                   |
|------------------|----------|----------|-------------------------------------------------|-------------------------------------------------|---------------------------|-------------------------------------------------|---------------------------------------|
| 검증방식             |          |          | 직접검증제                                           | 직접검증제                                           | 제한적<br>간접검증제              | 先 간접검증<br>後 직접검증                                | 직접검증제<br>(섬유·의류<br>간접검증 및<br>공동검증)    |
| 직<br>접<br>검<br>증 | 서면<br>조사 | 회신<br>기간 | 서면질의를<br>요청받은<br>날로부터<br>30일 이내                 | 서면질의를<br>요청받은<br>날로부터<br>30일 이내                 | -                         | -                                               | -                                     |
|                  | 현지<br>조사 | 조사<br>주체 | 수입국세관                                           | 수입국세관                                           | 수출국세관<br>(수입국세관<br>직원 참여) | 先 수출국세관<br>後 수입국세관                              | 수입국세관<br>(섬유·의류<br>수출국세관 및<br>수입국세관 ) |
|                  |          | 서면<br>동의 | 현장검증<br>통보 후 30일<br>이내에<br>서면동의,<br>1회 연기<br>가능 | 현장검증<br>통보 후 30일<br>이내에<br>서면동의,<br>1회 연기<br>가능 | -                         | 현장검증<br>통보 후 30일<br>이내에<br>서면동의,<br>1회 연기<br>가능 | -                                     |
| 간접검증             |          | 회신<br>기간 | -                                               | -                                               | 10개월                      | 2개월                                             | -                                     |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하여 작성.

### 3) 비밀유지와 서류보관의 의무

각 당사국은 원산지발급절차상 얻어진 영업정보의 비밀을 자국 국내법에 따라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수출자 및 생산자와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서류들을 협정문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출자와 생산자는 수출된 상품의 구입·비용·가격 및 이에 대한 지불,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입·비용·가격 및 이에 대한 지불,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그 상품의 생산 등 원산지 관련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수입자 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명시된 기간은 FTA 협정문마다 상이하며, 서면형식뿐만 아니라 전자기록 형태를 포함한다.

표 4-28. 한국의 FTA별 기록유지 요건 비교

| 구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수출자/생산자 | 5년 이상 | 5년 이상  | 최장 5년                       | 3년 이상                       | 5년 이상 |
| 수입자     | 5년 이상 | 5년 이상  |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 |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 | 5년 이상 |

자료: 각 협정문을 기초하여 작성.

### 4) 사전판정(사전심사)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에서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수입자나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전판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 당사국은 품목 분류,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원

산지 상품 여부 등을 심사하고 사전판정신청인에게 언제든지 보충적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명시된 일정기간 안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한·싱가포르 FTA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한 날부터 90일 이내, 한·미 FTA는 사전판정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각각 사전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전판정결과는 경우에 따라 변경·철회가 가능한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는 ① 사실착오, ②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의 변경, ③ 사법 또는 행정 결정 또는 국내법상의 변경 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한·미 FTA는 판정이 부정확한 정보 및 허위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전판정신청인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사실을 누락한 경우, 판정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2004년 3월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여 한·칠레 FTA 이행에 대한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을 반영하여 2005년 12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칠레 FTA를 제외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등 기체결한 또는 향후 체결하게 될 FTA에 대한 법적 이행 절차를 마련하였다. FTA 관세특례법은 FTA 이행에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체약상대국가의 관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처벌유형과 처벌수준은 FTA 관세특례법의 제22조(벌칙)와 제24조(과태료)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는 위반 행위는

표 4-29.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관련규정  | 처벌유형                                                                                                                     | 처벌수준                      |
|-------|--------------------------------------------------------------------------------------------------------------------------|---------------------------|
| 제22조① | 제출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22조② | 1.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2. 용도세울적용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sup>1)</sup>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3. 관세면제물품을 당해 용도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sup>2)</sup>                                                                     | 단, 과실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5. 원산지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 심사를 위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                                                                |                           |
|       | 6.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제출 또는 미제출한 자                                                                                          |                           |
| 제22조③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23조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임원·직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2항 및 3항을 위반할 때에는 그 행위자와 더불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부과 | -                         |
| 제24조①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미제출한 자<br>2.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제24조② | 1.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sup>3)</sup>                                                       |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 2.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 <sup>4)</sup>                                                                   |                           |
|       | 3.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sup>5)</sup>                                                            |                           |
|       | 4.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고도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자                                                                  |                           |

- 주: 1)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의 2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관세법 제83조 제1항에 의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2)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의 2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재수출되어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가능하다.
- 3)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의 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관세법 제8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
- 5) 관세법 제97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기초하여 작성.

일반 법률인 「관세법」에 적용된다.

FTA 관세특례법 제22조(벌칙)에 의하면 원산지 결정을 위해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증빙서류의 허위 발급이나 작성,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지는 물품을 당해 용도 외에 사용, 관세를 면제받은 특정 물품을 당해 용도 외에 사용, 관련 서류의 미보관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과실에 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24조(과태료)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면, 현지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통보를 받고도 세액 정정 및 수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수입자의 경우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

표 4-30.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 처벌유형과 처벌수준

| 관련규정   | 처벌유형                                                                                                  | 처벌수준                                   |
|--------|-------------------------------------------------------------------------------------------------------|----------------------------------------|
| 제270조① | 1.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의 허위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br>2.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 미완성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 수입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
| 제270조② |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270조④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 제270조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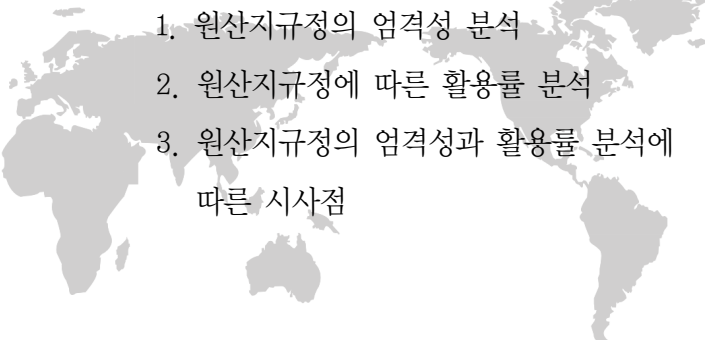
자료: 「관세법」을 기초하여 작성.

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 부정한 방법으로의 관세 감면이나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 제5장

#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FTA를 체결함에 있어 정부, 언론, 학계의 관심은 개방의 폭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빨리 관세 철폐 혹은 인하가 이루어지는가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개방의 폭과 깊이가 FTA 체결 당사국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결된 FTA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도 FTA를 체결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 된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에서는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100% 관세 철폐 혹은 100%에 가까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FTA를 통해 체결국간의 교역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한 당사국들의 국민 총생산과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TA 체결 후에 양자 간에 교역되는 수출입 품목이 모두 해당 FTA 협정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FTA 협정문 상에서 특정 상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서, 혹은 정보 부재로 인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원산지 인정을 위해 복잡하고 강력한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FTA 원산지규정은 체결국이 교환한 상품양허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특혜관세 혜택의 부여를 거부당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국이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 재화를 수출할 때, 해당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특혜관세를 허용한다면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에서는 FTA 체결 상대국에서 수출된 경우라도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잣대, 즉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수출품목이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혹은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절차와 비용이 특혜관세를 허용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를 포기하게 된다. 이는 체결 당사국이 아닌 제3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이 체결국 간의 원활한 교역과 FTA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예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활용률(utilization rate)’<sup>67)</sup>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규정의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sup>68)</sup>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품목에 대한 FTA별 원산지규정이 FTA를 활용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sup>68)</sup>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Estevadeordal(2000)에 의해 처음으로 계량적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는 NAFTA에서

67)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체결 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과 한국에서 FTA 체결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활용률을 모두 고려한다.

68)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의 분석방법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는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엄격성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Estevadeordal의 방법론은 다른 여러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를 추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이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Estevadeordal의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다.

마련된 원산지규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카테고리별로 최소 1에서 최대 7점까지의 지수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에서 더욱 확대되었는데, 엄격성지수 요건은 [표 5-1]과 같다.

표 5-1. 엄격성지수 요건

| 엄격성지수 ( $y^*$ ) | 지수 요건                                                                  |
|-----------------|------------------------------------------------------------------------|
| 7               | - $CC < y^* \leq CC\&TECH$<br>- WO                                     |
| 6               | $CH\&RVC < y^* \leq CC$                                                |
| 5               | - $CH < y^* \leq CH\&RVC$<br>- 부가가치기준이 단일기준인 경우 $RVC(>50\%)$           |
| 4               | - $CS\&RVC < y^* \leq CH$<br>- 부가가치기준이 단일기준인 경우 $RVC(50\% \text{ 이하})$ |
| 3               | $CS < y^* \leq CS\&RVC$                                                |
| 2               | $CI < y^* \leq CS$                                                     |
| 1               | $y^* \leq CI$                                                          |

주: CI는 HS 6단위 이상에서의 세번변경율을 의미함.

자료: Estevadeordal(2000),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참고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격성지수는 기본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지수가 부여되는데, 지수가 높을수록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

먼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H)보다 엄격하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S)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요구되는 경우 각각 6, 4, 2점이 부여된다. 그리고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기준 혹은 특수공정기준이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규정이 더 엄격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 4,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기준 혹은 특수공정기준이 결합되는 경우 각각 7, 5, 3점이 부여된다. 세번변경기준이 요구되지 않

는 품목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7점, 부가가치기준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요구되는 역내부가가치 비율에 따라 4~5점을 부여하고 있다.<sup>69)</sup>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에서는 상기의 엄격성지수 요건을 이용하여 유럽과 미주지역 12개 FTA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EU의 PANEURO 시스템과 NA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는 [표 5-2]와 같다.

표 5-2. EU와 NAFTA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비교

|       | EU  | NAFTA |
|-------|-----|-------|
| 엄격성지수 | 4.5 | 5.1   |

자료: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p. 24.

EU가 체결하는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PANEURO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PANEURO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각 품목별 엄격성지수의 평균값이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NAFTA의 경우 엄격성지수가 5.1로, EU의 원산지규정보다 다소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성지수와 세번변경기준 적용 비중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EU FTA와 NAFTA의 세번변경기준 적용 비중은 [표 5-3]과 같다. NAFTA 원산지규정이 EU의 FTA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비중이 높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69) 다만 부가가치기준이 단일기준으로 사용된 품목에 한해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에서는 역내산 인정비율 50%를 기준으로 50% 이하인 경우 엄격성지수 4를 부여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 엄격성지수 5를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제법 기준으로 역내산 인정비율을 40% 이하를 요구하는 경우 엄격성지수 4를 부여하고, 40%를 초과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 엄격성지수 5를 부여하였다. 이는 한·ASEAN FTA의 경우 대부분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엄격성지수 4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가치기준(40%) 역시 동일한 수준의 엄격성지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표 5-3. EU의 FTA와 NAFTA에서의 세번변경기준 적용 비중

(단위: %)

| 구분                 | EU의 FTA |       |       | NAFTA |
|--------------------|---------|-------|-------|-------|
|                    | 남아공     | 멕시코   | 칠레    |       |
| CC+ 요구             | 14.24   | 14.47 | 14.24 | 54.44 |
| CH+ 요구             | 57.65   | 58.34 | 57.25 | 40.65 |
| CS+ 요구             | 2.37    | 2.37  | 2.25  | 4.35  |
|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25.6    | 24.82 | 26.16 | 0.54  |

자료: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p. 16.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이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이 엄격할수록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고 MFN 관세율 사용을 선택함에 따라 FTA 활용도를 낮추게 되고, 이는 FTA 체결에 따른 자유화 혜택이 감소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Estevadeordal 지수를 사용하여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sup>70)</sup>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총 61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각각에 [표 5-1]에 기초하여 지수를 부여하였는데,

70)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측면을 평가함에 있어 Estevadeordal 지수 외에도 호주 Productivity Commission(2004)의 원산지규정 평가지수가 있다. Estevadeordal 지수에는 누적기준, 미소기준 등 원산지규정 완화수단이 반영되지 않는 데 반해, 호주의 연구는 Estevadeordal(2000)과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FTA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원산지규정을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 평가지수를 설계하였다. 호주 Productivity Commission 지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한국 FTA에 대한 적용결과는 정인교 외(2005)를 참고하도록 한다.

그 결과는 [표 5-4]와 같다. 복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되는 경우 Estevadeordal (2000)에서와 같이 높은 수준의 엄격성지수가 부여되는 것을 따르고 있다.

표 5-4.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과 엄격성지수

| 엄격성지수 |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
|-------|--------------------------------------------------------------------------------------------------------------------------------------------------------------------------------------------------------------------------------------------------------------------------|
| 7     | CC+ECTC+RM ; CC+ECTC+TECH<br>CC+ECTC+TECH or CS*+TECH ; CC+RM<br>CC+RM or RVC+RM; CC+RM+TECH or RVC<br>CC+RVC; CC+TECH ; CC+TECH or RVC<br>CC+TECH or RVC+TECHCH+RM; CH+RM or RVC<br>CH+RM or RVC+RM; RM ; RVC+RM ; WO                                                   |
| 6     | CC ; CC or CH* ; CC or CH*/CS*+RVC<br>CC or CH*+RVC ; CC or CH+RVC; CC or CS*<br>CC or CS*+RVC ; CC or CS+RVC ; CC or RVC<br>CC or RVC+TECH; CC or TECH ; CC+ECTC<br>CC+ECTC or CH*+RVC ; CC+ECTC or CS*                                                                 |
| 5     | CH or CH*+RVC; CH+ECTC or CH*+RVC<br>CH+ECTC or CH+RVC; CH+RVC<br>CH+RVC or CS*+RVC; CH+RVC or RVC<br>RVC(>40%)                                                                                                                                                          |
| 4     | CH ; CH or CS*+RVC ; CH or CS+ECTC+RVC<br>CH or CS+RVC ; CH or CS+TECH ; CH or RVC<br>CH or RVC* ; CH or RVC+TECH<br>CH or TECH or RVC ; CH+ECTC ; CH+ECTC or CS*<br>CH+ECTC or CS* or CS*+RVC ; CH+ECTC or RVC<br>CH+ECTC or TECH; CS* or CH or RVC<br>RVC( $\leq$ 40%) |
| 3     | CS*+RVC ; CS+ECTC or CS+RVC* ; CS+ECTC+RVC<br>CS+RVC                                                                                                                                                                                                                     |
| 2     | CS ; CS or RVC ; CS+ECTC                                                                                                                                                                                                                                                 |
| 1     | -                                                                                                                                                                                                                                                                        |

주: RM의 경우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WO 수준과 동일하다는 판단하에 7점을 부여함. 기타 제외.  
자료: 저자 작성.

한·칠레 FTA부터 한·미 FTA까지 HS 6단위 총 5,224개 품목에 대한 엄격성 지수의 분포를 [표 5-5]에 엄격성지수별로 정리해보았다.

표 5-5. FTA별 엄격성지수 분포

(단위: 품목 수, %)

| 구분<br>엄격성지수 | 한·칠레             | 한·<br>싱가포르       | 한·EFTA           | 한·<br>ASEAN      | 한·미              |
|-------------|------------------|------------------|------------------|------------------|------------------|
| 7           | 374<br>(7.16)    | 359<br>(6.87)    | 815<br>(15.6)    | 786<br>(15.05)   | 297<br>(5.69)    |
| 6           | 1,493<br>(28.58) | 898<br>(17.19)   | 161<br>(3.08)    | 246<br>(4.71)    | 1,441<br>(27.58) |
| 5           | 446<br>(8.54)    | 460<br>(8.81)    | 404<br>(7.73)    | 47<br>(0.9)      | 193<br>(3.69)    |
| 4           | 2,687<br>(51.44) | 3,370<br>(64.51) | 3,806<br>(72.86) | 4,084<br>(78.18) | 2,407<br>(46.08) |
| 3           | 106<br>(2.03)    | 19<br>(0.36)     | -<br>-           | -<br>-           | 34<br>(0.65)     |
| 2           | 95<br>(1.82)     | 118<br>(2.26)    | 34<br>(0.65)     | 61<br>(1.17)     | 803<br>(15.37)   |
| 1           | -<br>-           | -<br>-           | -<br>-           | -<br>-           | -<br>-           |
| 소계          | 5,201*           | 5,224            | 5,220*           | 5,224            | 5,175*           |

주: \*한·칠레, 한·EFTA, 한·미 FTA의 경우 각각 23개, 4개, 49개 등 [표 4-10]에서 ‘기타’로 구분된 품목이 제외됨(각주 49) 참고).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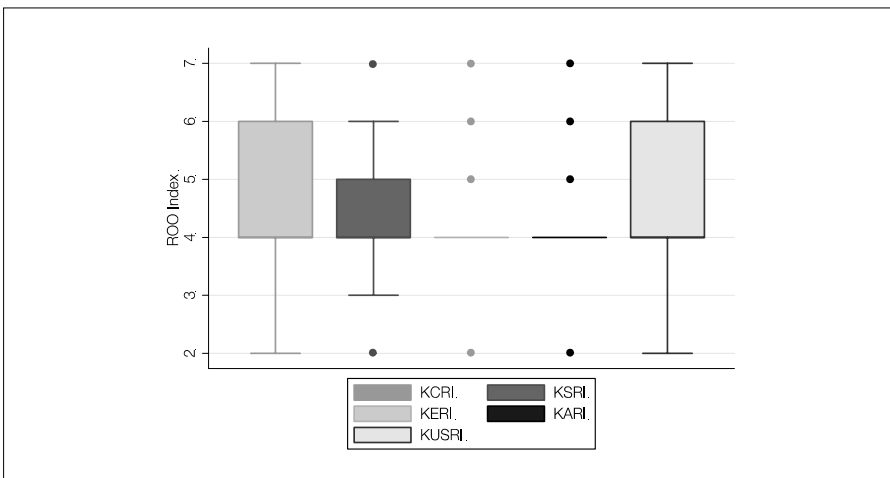
FTA별 엄격성지수 분포를 비교함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모두 엄격성지수 4에 많은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ASEAN FTA가 약 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한·EFTA, 한·싱가포르, 한·칠레, 한·미 FTA가 각각 73%, 65%, 51%, 4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엄격성지수 6이상인 품목은 한·칠레, 한·미 FTA가 각각 전체의 36%, 33%로 여타 FTA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한·싱가포르 FTA는 약 24%,

한·EFTA, 한·ASEAN FTA는 약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EFTA와 한·ASEAN FTA의 경우 여타 FTA와 달리 엄격성지수 7에 속한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개 FTA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RM”과 “WO” 기준 때문이다. 한·EFTA FTA의 경우 “RM” 기준이 단독으로 적용되는 품목이 487개, “WO”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 23개가 있으며, 한·ASEAN FTA의 경우 “WO”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458개에 달한다(표 4-10 참고).

[그림 5-1]은 5개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분포에 대한 상자그림(Box Plot)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칠레와 한·미 FTA 그리고 한·EFTA와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분포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칠레와 한·미 FTA는 NAFTA 원산지규정에 기초하여 원산지규정을 마련한 만큼 그 분포 또한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EFTA와 한·ASEAN FTA의

그림 5-1.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분포(Box Plot)



주: 상자 안의 선은 중앙값(median), 상자의 양 끝은 각각 1사분위 수(Q1: 25th percentile), 3사분위 수(Q3: 75th percentile)를 나타냄. 상자 밖의 선은 1사분위 수와 3사분위 수와  $1.5 \times (Q3 - Q1)$ 만큼 떨어져 있는 값을 말함. 이밖에 ‘o’는 이상점(extreme outlier)임.

자료: 저자 작성.



표 5-6. FTA별 엄격성지수 평균 비교

| 구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전체      | 4.82 | 4.59   | 4.59   | 4.53    | 4.45 |
| 1차산품    | 6    | 5.99   | 6.98   | 6.89    | 5.98 |
| 가공1차산품  | 5.77 | 5.74   | 5.86   | 5.19    | 5.88 |
| 가공광물    | 4.66 | 4      | 3.99   | 4       | 3.97 |
| 고무/화학   | 3.98 | 4.13   | 4.02   | 3.99    | 3.86 |
| 가죽제품    | 4.86 | 4.27   | 4      | 4.03    | 4.14 |
| 종이/목재   | 4.21 | 4      | 4      | 4       | 4.55 |
| 의류/직물   | 5.83 | 5.25   | 5.16   | 5.44    | 5.7  |
| 비금속광물   | 5.20 | 4.69   | 3.72   | 3.85    | 4.55 |
| 금속제품    | 4.51 | 4.25   | 4.07   | 3.99    | 4.35 |
| 일반기계    | 4.22 | 4.07   | 4.17   | 3.99    | 2.95 |
| 전기기계    | 4.05 | 4      | 4.08   | 3.85    | 2.65 |
| 운송기기    | 4.39 | 4.68   | 4.03   | 4.33    | 4.09 |
| 기타 운송기기 | 4.59 | 4.26   | 4.02   | 4       | 4    |
| 정밀기계    | 4.14 | 4.07   | 4.45   | 3.96    | 3.84 |
| 기타 제조품  | 4.9  | 4.33   | 4.28   | 4.02    | 4.3  |

자료: 저자 작성.

경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엄격성지수 4에 집중되어 그 분포가 유사해 보이나, 한·칠레, 한·미 FTA와 같이 원산지규정의 유형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시 통상 FTA별 엄격성지수 평균과 각 산업별 엄격성지수 평균을 비교하는데, 이를 [표 5-6]에 정리해보았다.<sup>71)</sup>

7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연구는 정인교 외(2005)와 고영제(2008)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들의 분석결과는 [참고 표]와 같다. 정인교 외(2005)에서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를 대상으로 엄격성을 분석하였는데 엄격성지수 평균이 각각 4.69와 4.57로, 본 연구결과와

[표 5-6]을 이용하여 엄격성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평균이 모두 4와 5사이로, NAFTA와 EU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각각 5.1과 4.5임을 감안해볼 때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의 원산지규정 모두 NAFTA 원산지규정보다는 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에 한해서는 한미 FTA를 제외하고 나머지 FTA 원산지규정은 모두 EU FTA의 것보다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별로 살펴보면, 한·칠레 FTA부터 한·미 FTA까지 체결 순서대로 점차 완화된 원산지규정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미 FTA 원산지규정이 NAFTA 원산지규정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성지수 평균이 4.4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여타 FTA와 비교해서 한·미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다(표 5-7 참고). 이들 품목은 엄격성지수 2에 해당되며,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낮추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주로 일반기계 및 전기기계 산업에 적용되었는데, [표 5-6]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산업에 대한 한·미 FTA 엄격성지수 평균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정인교 외(2005)에서 'RVC'에 대한 엄격성지수를 4가 아닌 1로 부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영제(2008)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5개 FTA를 대상으로 엄격성을 분석하였으나, 5개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역시 엄격성지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점은 확인할 수 없다.

참고 표. 원산지규정 엄격성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비교

| 구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정인교 외(2005) | 4.69 | 4.57   | -      | -       | -    |
| 고영제(2008)   | 5    | 5      | 5      | 5       | 5    |
| 본 연구        | 4.82 | 4.59   | 4.59   | 4.53    | 4.45 |

여타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이러한 차이가 전체 평균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된다.

표 5-7. 세번변경기준 비중 비교

(단위: 품목 수)

| 구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CC+   | 1,867 | 1,257  | 482    | 552     | 1,737 |
| CH+   | 3,102 | 3,799  | 3,990  | 4,087   | 2,570 |
| CS+   | 202   | 137    | 34     | 61      | 837   |
| 기타 품목 | 53    | 31     | 718    | 524     | 80    |
| 합계    | 5,224 | 5,224  | 5,224  | 5,224   | 5,224 |

주: 1) [표 4-11]를 세번변경기준별로 정리한 것으로 CC+, CH+, CS+는 각각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포함함.

2) 세번변경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타로 분류함.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한·EFTA와 한·ASEAN FTA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RM” 기준과 “WO” 기준은 주로 1차산품과 1차 가공산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엄격성지수 7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의 존재가 한·EFTA,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1차산품을 제외한 경우 엄격성지수 평균을 구해본 결과 한·EFTA, 한·ASEAN,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평균의 차이가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표 5-8 참고). 그렇지만 여전히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산품 및 1차 가

표 5-8. 케이스별 엄격성지수 평균 비교

| 엄격성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1차산품 제외         | 4.73 | 4.47   | 4.40   | 4.34    | 4.33 |
| 1차산품·1차 가공산품 제외 | 4.64 | 4.38   | 4.29   | 4.27    | 4.22 |

공산품을 제외할 경우 한·EFTA,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더욱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TA마다 산업간 엄격성지수의 평균 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는데, 5개 FTA에서 모두 1차산업, 가공1차산업, 의류·직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여타 산업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의 경우 한·EFTA, 한·ASEAN FTA에서 마련된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1차산품은 한·EFTA와 한·미 FTA가 그리고 의류/직물은 한·칠레, 한·미 FTA가 가장 엄격하다. 한편 한·칠레, 한·미 FTA의 경우 엄격성지수 분포상으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산업별로는 엄격성 수준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기계와 전기기계 부분에서 양 FTA간 상대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활용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sup>72)</sup>

72) 예를 들어, 한국이 FTA를 맺은 칠레에서 수입한 총 수입액 중, 미양허 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총 수입액이 10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실제로 한·칠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의 수입액이 5억 달러일 경우, 활용률은  $(5\text{억 달러}/10\text{억 달러}) \times 100\% = 50\%$ 이다.

$$\text{활용률(\%)} = \frac{\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품목}}} \text{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 M_{p,s}}{\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품목}}} \text{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 M_{p,s}} \times 100,$$

여기서  $M$ 은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의미.

즉, 활용률은 특정 무역협정 혹은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활용률이 0%인 경우, 해당 FTA가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활용률이 100%인 경우는 FTA가 완벽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한 한국의 수입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의 FTA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각각의 FTA 활용률을 측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현재 FTA가 발효되어 운용되고 있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그리고 한·ASEAN FTA 등 총 4개 FTA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왜곡을 피하기 위해 발효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활용률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이용 가능한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활용률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FTA에서 한국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과 한·ASEAN FTA와 같이 아직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세 인하/철폐가 시작되지 않은 품목은 활용률 계산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의 관세가 이미 0%인 품목도 활용률 계산에서 제외되었다.<sup>73)</sup>

73) 활용률은 특정 FTA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되는가’를 측정하는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양허 제외된 품목이나 관세 인하가 철폐되지 않은 품목, 혹은 이미 무관세인 품목을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효율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eligible to preferential treatment)’이라는 기준에서 이와 같은 품목은 제외된다.

##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sup>74)</sup>

### 1) 대(對)칠레 수입의 한·칠레 FTA 활용률

2002년 10월 타결된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FTA로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칠레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하여 즉시철폐, 5, 7, 9, 10, 16년 철폐, 계절관세 (국내 비생산 기간에 한해 10년 철폐), TRQ+DDA 이후 논의, DDA 이후 논의, 양허 제외 등 총 10개의 관세 양허 카테고리 나누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협정 당시 총 11,170개 품목 중 87.2%인 9,74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이행과 동시에 철폐하였으며, 쌀, 사과, 배 등 총 21개 농산품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칠레 수입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을 계산함에 있어 이미 무관세인 품목과 양허제외 품목 (21개), DDA 이후 논의하기로 한 품목(373개), 그리고 16년 철폐 품목(12개)<sup>75)</sup> 활용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포도에 대해서는 11월~4월에만 10년 균등 관세 철폐를 적용하는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활용률 계산에서도 동 기간 동안 수입된 칠레산 포도만을 고려하였다.<sup>76)</sup>

74) FTA 체결 상대국 수입에 대한 FTA 기간별 활용률은 산업별로 나누어 [부록 3]에 정리하였다.

75) 16년 철폐 품목은 협정 발효 5년 후에 협상을 개시하여 1년 협상에 최장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들이다. 따라서 연구기간인 2004년 4월~2008년 3월 동안에는 동 카테고리에 속하는 품목들에 대한 특혜관세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활용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76) 실제로 활용률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FTA 특혜관세가 MFN 관세보다 낮은 경우를 추려 활용률을 계산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활용률이란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수입액에서 실제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린 수입액의 비율을 의미하고, 이는 특정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가 된다. MFN 관세가 FTA 특혜관세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특혜관세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를 보기 위해 MFN 관세가 FTA 특혜관세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FTA 특혜관세는 MFN 관세보다 낮지만, 무관세 품목의 경우나 아직 관세 인가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혹은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의 경우 특혜관세와 MFN 관세는 동일하거나 MFN 관세가 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동 연구에서는 특정 FTA 특혜

한·칠레 FTA 한국 양허안 내용을 고려하여 측정한 칠레산 수입품에 대한 한·칠레 FTA 기간별 활용률은 [표 5-9]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은 협정 발효 첫해인 2004년 4월~2005년 3월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협정 발효 첫해에 한·칠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12억 2천만 달러의 전체 수입 중, 9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수입이 실제로 한·칠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77.7%의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협정 발효 2년차인 2005년 4월~2006년 3월 기간 동안에 활용률은 93.8%에 달했으며 이후 협정 발효 3년차와 4년차에도 각각 93.6%와 93.3%라는 높은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협정 발효 4년 동안 한·칠레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총 64억 6천만 달러의 수입 중, 58억 4천만 달러에 대한 수입이 실제로 한·칠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90.5%의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동 기간 동안 총 수입에 대한 수입 건수는 한·칠레 FTA 발효 첫해의 5,570건에서 4년차인 2007년 4월~2008년 3월 기간에 9,825건으로 약 76% 증가하였다. 반면에 한·칠레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총 3,936건에서 9,323건으로 약 137%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한·칠레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의 평균 수입액은 발효 첫해에 약 24만 1천 달러에서 발효 4년차에는 19만 4천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평균 수입 신청액이 감소한 것은 협정 발효 초기에 특혜관세를 통한 절세효과가 높은 수입규모가 큰 거래를 중심으로 한·칠레 FTA를 활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칠레 FTA 활용에 대한 홍보와 학습효과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됨으로써 규모가 작은 거

---

관세가 MFN 관세보다 낮은 경우만을 활용률 계산에서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측정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다.

래들도 활발히 한·칠레 FTA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9.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2004.4~2008.3

(단위: 천 달러, 건)

| 구분                   | 04.4~05.3 | 05.4~06.3 | 06.4~07.3 | 07.4~08.3 | 총합계       |
|----------------------|-----------|-----------|-----------|-----------|-----------|
| 한·칠레 FTA 특혜관세 신청액    | 948,978   | 1,364,402 | 1,718,895 | 1,811,939 | 5,844,214 |
| 한·칠레 FTA 특혜관세 신청건수   | 3,936     | 6,205     | 7,539     | 9,323     | 27,003    |
| 총 수입액*               | 1,221,566 | 1,454,367 | 1,836,161 | 1,943,107 | 6,455,201 |
| 총 수입건수*              | 5,570     | 7,169     | 8,269     | 9,825     | 30,833    |
| 한·칠레 FTA 특혜신청 평균 수입액 | 241       | 220       | 228       | 194       | 216       |
| 활용률                  | 77.7%     | 93.8%     | 93.6%     | 93.3%     | 90.5%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10]은 산업별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을 살펴보고 있다. 총 15개 산업으로 분류된 한국의 대(對)칠레 수입에서 금속 산업 관련 품목이 전체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1차산품(10%), 고무/화학(9%), 가공광물(6%) 등에 포함된 품목이 주로 칠레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이들 주요 수입품목들은 모두 높은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칠레로부터의 최대 수입품목인 금속제품의 경우 90.3%의 활용률을 기록하였으며 1차산품은 95.3%, 고무/화학제품 87.1%, 가공 광물 88.0% 등 매우 높은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의류/직물 (11.5%), 기타 제조품 (2.9%) 등은 10%대 혹은 10%이하의 낮은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발효 4년 동안 총 200만 달러 이상 수입된 전기기계와 정밀기계 품목은 실질적으로는 단 한 건의 특혜관세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10.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

(단위: 천 달러, 건)

| 대분류    | 특혜관세<br>신청액 | 특혜관세<br>신청건수 | 총 수입액     | 총 수입건수 | 활용률<br>(%) |
|--------|-------------|--------------|-----------|--------|------------|
| 1차산품   | 595,324     | 14,151       | 624,880   | 14,873 | 95.3       |
| 가공1차산품 | 221,642     | 8,010        | 231,435   | 9,473  | 95.8       |
| 가공광물   | 340,641     | 865          | 387,141   | 1,191  | 88.0       |
| 가죽제품   | 0           | 1            | 115       | 17     | 0.2        |
| 고무/화학  | 503,885     | 995          | 578,291   | 1,285  | 87.1       |
| 금속제품   | 4,069,505   | 1,918        | 4,508,761 | 2,393  | 90.3       |
| 기타제조품  | 1           | 3            | 33        | 30     | 2.9        |
| 비금속광물  | 31,230      | 34           | 31,243    | 57     | 100        |
| 운송기기   | -           | -            | 66        | 15     | 0.00       |
| 의류/직물  | 66          | 9            | 573       | 106    | 11.5       |
| 일반기계   | 11,884      | 12           | 12,091    | 49     | 98.3       |
| 전기기계   | -           | -            | 2,184     | 117    | 0.0        |
| 정밀기계   | 0           | 1            | 2,214     | 51     | 0.0        |
| 종이/목재  | 70,036      | 1,004        | 76,174    | 1,176  | 91.9       |
| 총계     | 5,844,214   | 27,003       | 6,455,201 | 30,833 | 90.5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결과적으로 칠레 수입품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은 90%가 넘는 매우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주요 수입품인 금속제품과 1차산품에 대한 높은 활용률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주요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활용도가 극도로 낮은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의 특징적 현상으로 여겨진다.

2) 대(對)싱가포르 수입의 한·싱가포르 FTA 활용률

2006년 3월 2일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발효한 한·싱가포르 FTA에서 양국은

상품무역에 있어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싱가포르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한국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91.6%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고, 쌀, 사과, 배, 양파, 열대 관상어 등과 같은 농수산물과 휘발유, TV 수신기 등 몇몇 공산품은 양허제의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양허제의 품목과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한국의 대상가포르 수입에 대한 한·싱가포르 FTA 활용률은 [표 5-11]에 정리하였다.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2년 동안의 활용률은 29.8%로 나타났으며, 한·싱가포르 FTA 발효 원년인 2006년 3월~2007년 2월 기간의 활용률은 28.2%이고 발효 2년차 활용률은 1년차 활용률보다 근소하게 상승한 31.4%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품목의 총 수입액은 발효 1년차에 약 2억 5천만 달러에서 발효 2년차에는 약 2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특혜 신청 건수도 2,810건에서 3,501건으로 증가하였다.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의 평균 수입액은 발효 1년차에 약 8만 8천 달러에서 2년차에는 8만 4천 달러로 감소하였는데, 한·싱가포르

표 5-11. 싱가포르산 수입에 대한 한·싱가포르 FTA 활용률: 2006.3~2008.2

(단위: 천 달러, 건)

|                        | 06.3~07.2 | 07.3~08.2 | 총합계       |
|------------------------|-----------|-----------|-----------|
|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 신청액    | 248,126   | 293,037   | 541,163   |
|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 신청건수   | 2,810     | 3,501     | 6,311     |
| 총 수입액*                 | 880,209   | 933,960   | 1,814,169 |
| 총 수입건수*                | 50,250    | 47,937    | 98,187    |
| 한·싱가포르 FTA 특혜신청 평균 수입액 | 88        | 84        | 86        |
| 활용률                    | 28.2%     | 31.4%     | 29.8%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12. 싱가포르산 수입에 대한 한·싱가포르 FTA 활용률: 산업별

(단위: 천 달러, 건)

| 대분류    | 특혜관세<br>신청액 | 특혜관세<br>신청건수 | 총 수입액     | 총 수입건수 | 활용률(%) |
|--------|-------------|--------------|-----------|--------|--------|
| 1차산품   | 2           | 1            | 3,238     | 806    | 0.1    |
| 가공1차산품 | 15,869      | 534          | 59,817    | 2,934  | 26.5   |
| 가공광물   | 9,025       | 134          | 63,068    | 833    | 14.3   |
| 가죽제품   | 8,682       | 421          | 9,888     | 1,098  | 87.8   |
| 고무/화학  | 212,592     | 3,303        | 614,264   | 20,835 | 34.6   |
| 금속제품   | 8,315       | 251          | 119,585   | 9,200  | 7.0    |
| 기타운송기기 | -           | -            | 2,453     | 61     | 0.0    |
| 기타제조품  | -           | -            | 6,187     | 1,130  | 0.0    |
| 비금속광물  | 148,937     | 275          | 198,835   | 2,446  | 74.9   |
| 운송기기   | 7,039       | 146          | 15,796    | 1,005  | 44.6   |
| 의류/직물  | 3,050       | 73           | 24,523    | 2,283  | 12.4   |
| 일반기계   | 16,197      | 194          | 242,945   | 18,244 | 6.7    |
| 전기기계   | 37,764      | 285          | 214,977   | 23,788 | 17.6   |
| 정밀기계   | 71,794      | 577          | 236,002   | 12,932 | 30.4   |
| 종이/목재  | 1,898       | 117          | 2,590     | 592    | 73.3   |
| 총계     | 541,163     | 6,311        | 1,814,169 | 98,187 | 29.8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FTA 특혜신청 평균 수입액은 한·칠레 FTA와 비교했을 때, 약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2년간 한국의 주요 수입은 고무/화학 (34%), 정밀기계 (13%), 일반기계 (13%) 및 전기기계(12%)에 해당되는 품목이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5-12 참고). 싱가포르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이들 주요 수입 품목들의 활용률은 고무/화학제품과 정밀기계 제품의 경우에는 각각 34.6%와 30.4%로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전기기계(17.6%), 일반기계

(6.7%), 금속제품(7.0%) 등의 경우 매우 저조한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싱가포르 제품에 대한 한·싱가포르 FTA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주변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싱가포르의 중계무역 국가로서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 3) 대(對)EFTA 수입의 한·EFTA FTA 활용률

한·EFTA FTA에서 한국은 총 8,726개 품목(86.3%)에 대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3년 철폐 388개 품목(3.8%), 5년 철폐 395개 품목(3.9%), 7년 철폐 138개 품목(1.2%), 1년 철폐 123개 품목(1.2%) 등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여겨지는 95개 농산물과 수산물은 양허 제외하였고 그 밖에도 10~50% 관세인하 187개 품목, TRQ 1개 품목, 향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61개 품목이 있다.

동 양허내용을 기초로 한국이 EFTA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2006년 9월~2008년 8월까지 발효 2년간의 한·EFTA FTA 활용률은 [표 5-13]에서 정리하고 있다.<sup>77)</sup> 동 기간 동안의 한·EFTA 활용률은 발효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43.2%와 41.9%를 기록하여 2년차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활용률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E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은 발효 1년차에 총 11억 8천만 달러였지만 2년차에 들어서면서 총 14억 8천만 달러로 약 2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발효 1년 차인 2006년 9월에서 2007년 8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활용률 측정 대

77) 앞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활용률 계산에서 한국의 무관세 품목은 제외하였으며 TRQ 적용 품목은 활용률 계산에 포함하였다. 또한 2006년에 2007년으로 넘어가면서 HS 2007에 기준한 새로운 세번이 적용되는바, HS 2002를 HS 2007 기준으로 전환하여 양허안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세번 분류가 되지 않아 99xxxxxxx와 같이 표기된 품목은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표 5-13. EFTA산 수입에 대한 한·EFTA FTA 활용률: 2006.9~2008.8

(단위: 천 달러, 건)

|                        | 06.9~07.8 | 07.9~08.5 | 총합계       |
|------------------------|-----------|-----------|-----------|
| 한·EFTA FTA 특혜관세 신청액    | 1,180,564 | 1,480,479 | 2,661,043 |
| 한·EFTA FTA 특혜관세 신청건수   | 24,652    | 32,261    | 56,913    |
| 총 수입액*                 | 2,732,962 | 3,534,843 | 6,267,805 |
| 총 수입건수*                | 63,801    | 70,027    | 133,828   |
| 한·EFTA FTA 특혜신청 평균 수입액 | 48        | 47        | 47        |
| 활용률                    | 43.2%     | 41.9%     | 42.5%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상이 되는 총 수입액은 약 27억 3천만 달러로, 이 중에 실제로 한·EFTA 특혜관세를 받은 수입액은 총 24,652건 1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년차에는 총 35억 3천만 달러의 수입액 중 총 32,261건 14억 8천만 달러가 한·EFTA 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EFTA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의 평균 수입액은 4만 7천 달러로 한·칠레나 한·싱가포르 FTA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발효 2년차에 들어서면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 활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액에서 약 13%씩의 비중을 지니고 있는 비금속광물과 고무/화학 산업의 경우 활용률이 각각 81.5%와 63.8%의 높은 활용률은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대(對)EFTA 수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기계의 경우 24.2%의 낮은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수입 비중은 낮지만 운송기기, 비금속광물 제품, 1차산품은 8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운송기기, 전기기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4. EFTA산 수입에 대한 한·EFTA FTA 활용률: 산업별

(단위: 천 달러, 건)

| 대분류    | 특혜관세<br>신청액 | 특혜관세<br>신청건수 | 총 수입액     | 총 수입건수  | 활용률<br>(%) |
|--------|-------------|--------------|-----------|---------|------------|
| 1차산품   | 95,569      | 3,554        | 117,282   | 4,475   | 81.5       |
| 가공1차산품 | 38,328      | 999          | 58,270    | 2,002   | 65.8       |
| 가공광물   | 17,665      | 368          | 32,537    | 879     | 54.3       |
| 가죽제품   | 2,955       | 246          | 6,385     | 821     | 46.3       |
| 고무/화학  | 518,814     | 7,560        | 813,264   | 20,950  | 63.8       |
| 금속제품   | 142,890     | 4,488        | 430,742   | 10,515  | 33.2       |
| 기타운송기기 | 33          | 5            | 2,227     | 34      | 1.5        |
| 기타제조품  | 22,018      | 605          | 43,902    | 1,723   | 50.2       |
| 비금속광물  | 670,364     | 1,645        | 822,109   | 2,865   | 81.5       |
| 운송기기   | 14,435      | 418          | 17,729    | 844     | 81.4       |
| 의류/작물  | 43,021      | 3,300        | 56,325    | 5,984   | 76.4       |
| 일반기계   | 618,120     | 12,942       | 2,557,368 | 32,160  | 24.2       |
| 전기기계   | 107,457     | 6,403        | 593,768   | 17,191  | 18.1       |
| 정밀기계   | 366,934     | 14,093       | 710,823   | 30,763  | 51.6       |
| 종이/목재  | 2,442       | 287          | 5,074     | 2,622   | 48.1       |
| 총계     | 2,661,043   | 56,913       | 6,267,805 | 133,828 | 42.5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4) 대(對)ASEAN 수입의 한·ASEAN FTA 활용률

한국과 ASEAN 10개국 간에 체결된 한·ASEAN FTA 상품협정은 2006년 8월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되었다. 이후 국내 기준을 거쳐 한국과 ASEAN 국가 중 기준을 마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갔으며, 2008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각각 필리핀과 브루나이가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양자간 협정을 발효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ASEAN FTA에서 관세품목 기준으로 90%에 해당되는 품목

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일반 민감품목군에 속한 품목들의 관세도 2016년까지 0~5%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초민감품목에 속한 상품 중, HS 6단위 기준으로 40개 품목에 대하여 양허제외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양허 내용을 반영하여 협정이 발효된 ASEAN 5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에 대한 활용률은 [표 5-15]에 정리하였다.<sup>78)</sup>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ASEAN FTA 발효 후 1년간 ASEAN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7.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sup>79)</sup> 국별로는 필리핀 제품에 대한 활용률이 6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46.1%), 인도네시아(29.5%), 말레이시아(15.6%) 그리고 미얀마(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8,893건에 대해 총 36억 9천만 달러에 대한 한·ASEAN FTA 특혜관세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특혜신청 평균 수입액은 7만 5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별로 살펴보면, 한·ASEAN FTA 특혜관세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총 19,083건이 신청되었다. 이는 ASEAN 대상 국가 중 총 수입액에서

78) 2008년 7월 1일 발효된 브루나이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9)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에서 입수한 대ASEAN 수입 데이터에는 총 60,667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에

- 1) 한·ASEAN FTA 특혜관세와 MFN이 '#N/A'로 표기된 29개 행, 3개 세번
- 2) 한·ASEAN FTA 양허세율이 미양허로 기재된 총 390개 행, 37개 세번
- 3) 활용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의 데이터 15,110개 행
- 4) 필리핀과의 한·ASEAN FTA가 발표되기 이전인 2007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총 4,358개 행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총 60,667개 데이터 가운데 40,780개 행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총량세 적용을 받는 경우 1) TRQ 형태와 2) 금액에 대한 비율 또는 총량당 관세 중 선택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량세가 적용된 교역 데이터는 356개 행, 19개 세번이 파악되었다. 동 19개 세번에 대해 1)에 해당하는 세번은 실제 교역량(총량)과 한·ASEAN FTA 신청 여부를 고려하였으며 2)에 해당하는 세번은 한·ASEAN FTA 양허세율과 MFN을 비교하여 19개 중 11개 세번(음영처리된 부분)의 데이터를 [한·ASEAN FTA 특혜관세 < MFN]으로 분류하여 활용률 계산에 반영하였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인도네시아의 18,086건보다 많은 신청 건수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규모가 큰 수입을 중심으로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베트남 수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수입에서도 한·ASEAN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혜신청 평균 수입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필리핀으로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평균 수입액

종량세 적용품목

| HS세번       | 한·아세안 FTA 세율                       | MFN(2007)                                        | MFN(2008)                                        |
|------------|------------------------------------|--------------------------------------------------|--------------------------------------------------|
| 0301929000 | 10                                 | 30% or 1,908won/kg<br>whichever is greater       | 27% or 1,879won/kg<br>whichever is greater       |
| 0306131000 | 0 (연간 5,000톤 이하에 한한다)              | 20                                               | 20                                               |
| 0306139000 | 0 (연간 5,000톤 이하에 한한다)              | 20                                               | 20                                               |
| 0306231000 | 0 (연간 300톤 이하에 한한다)                | 20                                               | 20                                               |
| 0306233000 | 55% 또는 363원/kg, 양자 중<br>고액(율)      | 50% or 363won/kg<br>whichever is greater         | 46% or 315won/kg<br>whichever is greater         |
| 0307491010 | 0 (2,000톤 이하), 10 (2,000톤<br>초과시)  | 10                                               | 10                                               |
| 0409000000 | 243% 또는 1,864원/kg, 양자 중<br>고액(율)   | 243% or 1,864won/kg,<br>whichever is the greater | 243% or 1,864won/kg,<br>whichever is the greater |
| 0712320000 | 0                                  | 30% or 1,218won/kg,<br>whichever is the greater  | 30% or 1,218won/kg,<br>whichever is the greater  |
| 0712902030 | 30% 또는 1,159원/kg, 양자 중<br>고액(율)    | 30% or 1,159won/kg,<br>whichever is the greater  | 30% or 1,159won/kg,<br>whichever is the greater  |
| 0713339000 | 0 (연간 2,000톤 이하에 한한다)              | 27                                               | 27                                               |
| 0714102010 | 20 (연간 25,000톤 이하에<br>한한다)         | 887.4                                            | 887.4                                            |
| 0714104000 | 20 (연간 25,000톤 이하에<br>한한다)         | 45                                               | 45                                               |
| 0802402000 | 219.4% 또는 1,470원/kg, 양자<br>중 고액(율) | 219.4% 또는 1,470원/kg,<br>양자 중 고액(율)               | 219.4% 또는 1,470원/kg,<br>양자 중 고액(율)               |
| 1108149000 | 9 (연간 9,600톤 이하에 한한다)              | 455                                              | 455                                              |
| 1207400000 | 630% 또는 6,660원/kg, 양자 중<br>고액(율)   | 630% or 6,660won/kg,<br>whichever is the greater | 630% or 6,660won/kg,<br>whichever is the greater |
| 1605209090 | 0 (2,000톤 이하), 20(2,000톤<br>초과시)   | 20                                               | 20                                               |
| 1902192000 | 45% 또는 355원/kg, 양자 중<br>고액(율)      | 45% or 355won/kg<br>whichever is greater         | 40% or 316won/kg<br>whichever is greater         |
| 3706105020 | 6.5%, 182원/m                       | 6.5% or 182won/meter                             | 6.5% or 182won/meter                             |
| 8523292231 | 0                                  | 13% or 20won/min(at<br>standard speed)           | 13% or 20won/min(at<br>standard speed)           |



규모는 22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수입액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ASEAN 주요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총 수입액 51억 8천만 달러 중, 한·ASEAN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은 약 8억 1천만 달러로 약 15.6% 정도의 낮은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5. ASEAN산 수입에 대한 한·ASEAN FTA 활용률: 2007.6~2008.5  
(단위: 천 달러, 건)

|                         |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총합계        |
|-------------------------|-----------|--------|-----------|-----------|---------|------------|
| 한·ASEAN FTA 특혜관세 신청액    | 807,723   | 12,912 | 568,102   | 1,967,760 | 329,115 | 3,685,612  |
| 한·ASEAN FTA 특혜관세 신청건수   | 9,654     | 586    | 19,083    | 18,086    | 1,484   | 48,893     |
| 총 수입액*                  | 5,187,435 | 98,966 | 1,218,954 | 6,661,604 | 485,647 | 13,652,606 |
| 총 수입건수*                 | 40,706    | 1,910  | 52,298    | 44,485    | 8,828   | 148,227    |
| 한·ASEAN FTA 특혜신청 평균 수입액 | 84        | 22     | 30        | 109       | 222     | 75         |
| 활용률                     | 15.6%     | 13.0%  | 46.6%     | 29.5%     | 67.8%   | 27.0%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필리핀은 한·ASEAN FTA 발효 후인 2008년 1월~5월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파악함.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16]은 발효 1년간의 한·ASEAN FTA 활용률을 산업별로 보여주고 있다.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품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가공광물로 약 19억 7천만 달러의 특혜신청액 중에 7억 2천만 달러가 가공광물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으로 분류되었다. 가공광물 품목의 수입은 한·ASEAN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72%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활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공1차산품으로, 84.0%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총 9,270건의 수입 중, 6,053건이 특혜관세 혜택을 누렸으며, 한·ASEAN FTA 특

혜관세 신청액은 총 5억 2천만 달러에 달했다. 그 밖에도 1차산품(76.23%) 비금속 광물(72.03%), 금속제품(71.20%) 등의 활용률이 70%를 넘어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의류/직물(62.1%), 종이/목재(55.8%)도 활용도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에 활용률이 낮은 산업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가공광물(10.7%)을 포함하여 운송기기(10.7%)와 정밀기계(14.9%)가 10%대의 낮은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한·ASEAN FTA가 발효된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서 2/3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광물에 대한 낮은 활용률은 전체 활용률이 27.0%에 머무르는 중요한 요

표 5-16. ASEAN산 수입에 대한 한·ASEAN FTA 활용률: 산업별

(단위: 천 달러, 건)

| 대분류    | 특혜관세<br>신청액 | 특혜관세<br>신청건수 | 총 수입액      | 총 수입건수  | 활용률<br>(%) |
|--------|-------------|--------------|------------|---------|------------|
| 1차산품   | 247,121     | 9,043        | 324,192    | 13,972  | 76.2       |
| 가공1차산품 | 515,828     | 6,053        | 613,974    | 9,270   | 84.0       |
| 가공광물   | 960,910     | 622          | 8,972,325  | 1,854   | 10.7       |
| 가죽제품   | 11,946      | 757          | 36,968     | 4,090   | 32.3       |
| 고무/화학  | 262,082     | 6,925        | 579,993    | 18,844  | 45.2       |
| 금속제품   | 577,969     | 1,479        | 811,794    | 4,391   | 71.2       |
| 기타운송기기 | 39          | 2            | 822        | 35      | 4.7        |
| 기타제조품  | 45,477      | 1,830        | 95,882     | 8,888   | 47.4       |
| 비금속광물  | 290,860     | 3,284        | 403,811    | 8,333   | 72.0       |
| 운송기기   | 1,700       | 71           | 15,862     | 706     | 10.7       |
| 의류/직물  | 466,309     | 11,066       | 750,518    | 30,434  | 62.1       |
| 일반기계   | 40,075      | 946          | 150,256    | 8,321   | 26.7       |
| 전기기계   | 166,895     | 3,486        | 607,091    | 25,418  | 27.5       |
| 정밀기계   | 22,810      | 485          | 153,535    | 5,659   | 14.9       |
| 종이/목재  | 75,591      | 2,844        | 135,582    | 8,012   | 55.8       |
| 총계     | 3,685,612   | 48,893       | 13,652,606 | 148,227 | 27.0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공광물을 제외하고 한국의 대(對)ASEAN 수입에 대한 활용률을 계산했을 경우, 활용률은 58%를 넘어 1년차 활용률로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공광물 품목에서의 낮은 활용률은 ASEAN 국가의 대한민국 수출 활용률이 27%에 그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ASEAN 주요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활용률이 각각 29.5%와 15.6%로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공광물 수입에 대한 한·ASEAN FTA 적용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표 5-17, 표 5-18

표 5-17 ASEAN 국가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분석: 인도네시아

(단위: 달러, 건)

| 기간     | 한·ASEAN<br>FTA 신청액 | 건수     | 전체 수입액        | 전체건수   | 활용률<br>(%) |
|--------|--------------------|--------|---------------|--------|------------|
| 1차산품   | 21,952,895         | 1,540  | 27,450,752    | 2,279  | 79.97      |
| 가공1차산품 | 206,619,944        | 1,939  | 224,968,000   | 2,492  | 91.84      |
| 가공광물   | 719,914,904        | 208    | 4,774,645,869 | 640    | 15.08      |
| 가죽제품   | 7,314,608          | 393    | 13,155,481    | 1,339  | 55.60      |
| 고무/화학  | 106,878,025        | 2,215  | 210,406,309   | 5,597  | 50.80      |
| 금속제품   | 208,992,462        | 452    | 330,577,039   | 1,086  | 63.22      |
| 기타운송기기 | -                  | -      | 7,950         | 1      | 0.00       |
| 기타제조품  | 32,375,313         | 971    | 49,135,204    | 2,310  | 65.89      |
| 비금속광물  | 255,000,935        | 1,624  | 327,148,794   | 3,075  | 77.95      |
| 운송기기   | 1,336,387          | 57     | 1,747,960     | 102    | 76.45      |
| 의류/직물  | 226,530,038        | 3,999  | 310,598,356   | 9,009  | 72.93      |
| 일반기계   | 35,341,007         | 762    | 44,589,006    | 1,774  | 79.26      |
| 전기기계   | 104,513,840        | 1,782  | 267,622,016   | 9,492  | 39.05      |
| 정밀기계   | 293,927            | 42     | 6,600,302     | 431    | 4.45       |
| 종이/목재  | 40,695,701         | 2,102  | 72,950,646    | 4,858  | 55.79      |
| 총합계    | 1,967,759,986      | 18,086 | 6,661,603,684 | 44,485 | 29.54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18. ASEAN 국가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분석: 말레이시아

(단위: 달러, 건)

| 기간     | 한·ASEAN<br>FTA 신청액 | 건수    | 전체 수입액        | 전체건수   | 활용률<br>(%) |
|--------|--------------------|-------|---------------|--------|------------|
| 1차산품   | 10,674,000         | 350   | 20,577,202    | 752    | 51.87      |
| 가공1차산품 | 213,690,565        | 1,327 | 271,454,387   | 2,183  | 78.72      |
| 가공광물   | 215,206,033        | 158   | 3,872,076,952 | 599    | 5.56       |
| 가죽제품   | -                  | -     | 546,763       | 101    | 0.00       |
| 고무/화학  | 130,366,671        | 3,883 | 316,679,644   | 10,436 | 41.17      |
| 금속제품   | 106,541,076        | 573   | 177,658,859   | 1,816  | 59.97      |
| 기타운송기기 | -                  | -     | 248,759       | 11     | 0.00       |
| 기타제조품  | 5,544,988          | 271   | 15,368,111    | 1,191  | 36.08      |
| 비금속광물  | 29,482,455         | 1,106 | 47,016,045    | 1,859  | 62.71      |
| 운송기기   | 71,721             | 4     | 6,291,855     | 326    | 1.14       |
| 의류/작물  | 12,697,849         | 303   | 21,826,088    | 1,270  | 58.18      |
| 일반기계   | 3,356,897          | 111   | 86,592,609    | 5,310  | 3.88       |
| 전기기계   | 30,812,400         | 882   | 186,413,153   | 9,712  | 16.53      |
| 정밀기계   | 17,923,408         | 327   | 112,699,468   | 4,266  | 15.90      |
| 종이/목재  | 31,354,526         | 359   | 51,984,921    | 874    | 60.31      |
| 총합계    | 807,722,589        | 9,654 | 5,187,434,816 | 40,706 | 15.57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참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ASEAN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총 수입액 67억 달러 중, 약 72%에 해당하는 품목이 가공 광물 품목이지만 이들 가공광물에 대한 한·ASEAN FTA 활용률은 15.1%에 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가공광물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천연가스(HS 2711110000)로 한·ASEAN FTA 발효 후 1년간 인도네시아로부터 약 29억 달러가 수입되었으며 그 중에 한·ASEAN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비중은 15.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경우도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한·ASEAN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액 중, 가공광물에 대한 수입액이 약 7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가공광물에 대한 활용률이 5.6%라는 낮은 활용률을 보인 것이 전체 활용률이 15% 정도에 그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 밖의 국가들에 대한 활용률은 [부록 4]에 표로 정리되어 있다.

##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앞 절에서 살펴본 한국의 FTA 상대국에 한국의 수입에 대한 활용률은 국내적으로 FTA가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은 과연 특정 FTA에서의 한국의 수출이 FTA 상대국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FTA 상대국에서 한국 수출품에 대한 활용률이 높다는 것은 FTA의 체결로 인하여 한국 제품의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상대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시장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이 FTA를 추진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러나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목에 대한 활용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수입 통관에 대한 통관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상대국 관세청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앞 절에서 고려한 4개 FTA 중,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에는, 이미 싱가포르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활용률 계산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수출품에 대한 활용률 계산이 의미를 지니는 3개 FTA 중, 체결 상대국 통관자료 접근이 가능하였던 한·칠레 FTA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활용률과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근거로 한·ASEAN FTA 활용률을 추정하였다.<sup>80)</sup>

80) 한·EFTA FTA는 EFTA 측으로부터 자료 구입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활용률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1) 한국 대(對)칠레 수출의 한·칠레 FTA 활용률

칠레에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은 칠레 관세청 자료를 전달받아 활용률을 측정하였다.<sup>81)</sup> 칠레 관세청으로 전달받은 수출입 데이터가 2004년 4월에서 2007년 12월까지의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어 한·칠레 FTA 발효 4년차의 활용률은 2007년 4월~12월의 9개월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칠레 관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한·칠레 FTA 활용 건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평균 특혜관세신청액은 파악할 수 없었으며, 대신 한·칠레 FTA 특혜신청을 한 품목에 적용된 평균 적용세율과 한국의 대(對)칠레 수출에 대한 평균적용세율을 조사하여 비교하고 있다.

칠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6% 단일관세를 부과하는 기본관세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칠레 FTA에서 칠레 양허안은 관세부과 대상 품목들을 즉시철폐, 5년, 7년, 10년, 13년 철폐 그리고 제외품목의 6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다. 칠레 양허안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와 더불어 품목수 기준으로 41.8%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sup>82)</sup> 4,664개 공산품목을 포함한 총 5,648개 품목

표 5-19. 대(對)칠레 수출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2004.4~2007.12

(단위: 천 달러)

|                     | 04.4~05.3 | 05.4~06.3 | 06.4~07.3 | 07.4~07.12 | 총합계       |
|---------------------|-----------|-----------|-----------|------------|-----------|
| 한·칠레 FTA 특혜관세 신청액   | 744,178   | 1,038,719 | 1,613,941 | 2,597,655  | 5,994,494 |
| 한·칠레 FTA 특혜 평균 적용세율 | 2.7%      | 2.4%      | 1.9%      | 1.6%       | 2.2%      |
| 총 수출액               | 799,377   | 1,084,471 | 1,668,897 | 2,631,235  | 6,183,979 |
| 총 수출 평균 적용세율        | 4.1%      | 3.7%      | 3.4%      | 3.2%       | 3.7%      |
| 활용률                 | 93.1%     | 95.8%     | 96.7%     | 98.7%      | 96.9%     |

주: 총 수출액과 총 수출 평균 적용세율은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칠레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81) 한·칠레 FTA 수출에 대한 FTA 기간별 활용률은 산업별로 나누어 [부록 5]에 정리하였다.

82) 그러나 즉시철폐 품목의 대부분이 한국의 수출이 거의 없는 농림수산물 품목들로 자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제조업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는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품목수 기준으로 96.5%에 해당)이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었다.<sup>83)</sup> 정확한 활용률 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허제외품목으로 분류된 54개 품목과 협정 발효 6년부터 13년까지 균등 철폐되는 152개 품목은 한국의 대(對)칠레 수출에 대한 활용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표 5-20. 대(對)칠레 수출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

(단위: 천 달러)

| 대분류    | 특혜관세<br>신청액 | 특혜 평균<br>적용세율 | 총 수출액*    | 총 수출 평균<br>적용세율* | 활용률<br>(%) |
|--------|-------------|---------------|-----------|------------------|------------|
| 1차산품   | 3,818       | 0.5%          | 3,962     | 2.9%             | 96.4       |
| 가공1차산품 | 1,289       | 0.0%          | 1,848     | 3.0%             | 69.7       |
| 가공광물   | 2,575,702   | 2.5%          | 2,592,373 | 3.4%             | 99.4       |
| 가죽제품   | 62          | 3.1%          | 345       | 5.2%             | 18.0       |
| 고무/화학  | 551,756     | 3.0%          | 582,484   | 4.1%             | 94.7       |
| 금속제품   | 158,199     | 4.0%          | 167,110   | 4.7%             | 94.7       |
| 기타운송기기 | 3,233       | 3.5%          | 7,038     | 5.7%             | 45.9       |
| 기타제조품  | 4,375       | 0.6%          | 6,133     | 3.2%             | 71.3       |
| 비금속광물  | 6,201       | 4.3%          | 8,284     | 5.1%             | 74.9       |
| 운송기기   | 1,793,722   | 1.3%          | 1,805,133 | 2.6%             | 99.4       |
| 의류/직물  | 91,130      | 3.0%          | 108,033   | 4.6%             | 84.4       |
| 일반기계   | 187,568     | 2.3%          | 214,909   | 3.6%             | 87.3       |
| 전기기계   | 590,731     | 1.8%          | 649,967   | 3.6%             | 90.9       |
| 정밀기계   | 19,959      | 0.1%          | 28,258    | 2.6%             | 70.6       |
| 종이/목재  | 6,749       | 1.3%          | 8,101     | 4.2%             | 83.3       |
| 총계     | 5,994,494   | 2.2%          | 6,183,979 | 3.7%             | 96.9       |

주: 총 수출액과 총 수출 평균 적용세율은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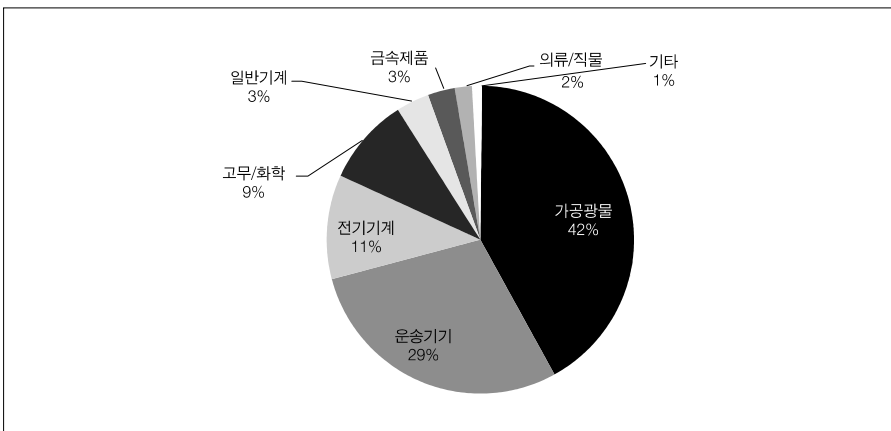
83) 외교통상부(2003), 「한·칠레 FTA 주요내용」.

2004년 4월~2007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한국의 칠레 수출에서 한·칠레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액은 총 59억 9천만 달러였으며,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의 총 수출액은 61억 8천만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동 기간 동안 한국의 대(對)칠레 수출의 한·칠레 FTA 활용률은 96.9%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연도별로도 발효 첫해인 2004년 4월~2005년 3월의 활용률이 93.1%로 발효 첫해부터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점차로 높아져 발효 4년차에는 활용률이 97.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칠레 FTA 특혜신청품목에 적용된 평균 특혜관세도 발효 첫해의 평균 2.7%에서 4년차에는 1.6%까지 감소하였으며 전체 수출에 대한 관세율도 첫해의 4.1%에서 2007년 3.2%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도 가공광물, 운송기기, 1차산품, 고무·화학, 금속, 전기기계 산업은 9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였으며, 가죽, 기타운송기기, 그리고 가공 1차산품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모두 7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2. 한국의 대(對)칠레 특혜관세 대상 품목의 품목별 수출 비중



자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이 칠레로 수출하는 수출품에 대한 한·칠레 FTA가 이처럼 높은 활용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수출품목이 매우 적극적으로 한·칠레 FTA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분석기간 동안의 한국의 대(對)칠레 주요 수출품목인 가공광물과 운송기기, 전기기계, 그리고 고무·화학제품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액의 91%에 이르는데, 이들 품목들이 모두 9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가공광물과 운송기기 제품에 대한 활용률은 99%로 실질적으로 한·칠레 FTA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 참고).

## 2) 한국 대(對)ASEAN 수출의 한·ASEAN FTA 실용률

한국의 ASEAN 수출에서 한·ASEAN FTA 활용률 분석은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한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발효 1년차 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2007년 6월 1일부터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ASEAN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4개국이며<sup>84)</sup> 필리핀의 경우는 양자간 협정이 발효된 2008년 1월 1일부터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관세 행정의 전산화 정도가 낮은 ASEAN 국가들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ASEAN에서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 한국 수출기업들이 신청하는 원산지 발급증명서를 이용해 활용률을 ‘추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ASEAN FTA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가 인증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84) 이들 국가들은 협정이 2007년 6월 1일 이후에 발효되었더라도 특혜관세혜택을 받지 못한 한국 제품 수입에 대한 소급 적용을 허용하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對)ASEAN 수출 특혜관세혜택 신청을 추정하였다.<sup>85)</sup> 또한 활용률 계산을 위해서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의 총 수입액’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의 수출신고액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ASEAN FTA 활용률의 경우, 계산상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활용률이라기보다는 실용률(utility ratio)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실용률(utility ratio)이란 일정 기간 동안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전체 수입액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의 비율로 수입액 기준으로 FTA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보여주는 수치이며, 아래의 공식으로 정의된다.

$$\text{실용률(\%)} = \frac{\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품목}}} \text{실제특혜관세혜택을 받은 } M_{p,s}}{\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품목}}} M_{p,s}} \times 100,$$

여기서  $M$ 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의미함.

한국이 2007년 6월~2008년 5월, 1년 동안 한·ASEAN FTA가 발효된 국가를 상대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한 액수는 총 15억 달러에 이르며, 동 기간 동안 이들 국가들에 약 387억 9천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한·ASEAN FTA 발효 1년차 실용률은 3.8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up>86)</sup> [표 5-2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가공1차산품과 금속제품을 제외하고는 실용률이 10%를 넘어서는 품목이 없으며, 10.1%의 실용률을 기록한 가공 1차산품과 30.2%로 가장

85) 수출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한 품목이 모두 특혜관세를 허용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6) 계산 중에 데이터 오류로 인한 중복기제로 여겨지는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실용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삭제된 품목 리스트는 [부록 6]에서 정리하고 있다.

표 5-21.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단위: 천 달러, %)

| 대분류     | 2007.6~2008.5<br>원산지 증명서 신청액 | 2007.6~2008.5<br>총 수출액** | 실용률   |
|---------|------------------------------|--------------------------|-------|
| 1차산품    | 550,289                      | 65,976,767               | 0.83  |
| 가공1차산품* | 20,345,176                   | 201,304,968              | 10.11 |
| 가공광물    | 833,879                      | 7,508,236,584            | 0.01  |
| 가죽제품    | 712                          | 174,671,531              | 0.00  |
| 고무/화학   | 26,595,179                   | 3,460,027,219            | 0.77  |
| 금속제품*   | 1,360,951,177                | 4,505,771,868            | 30.20 |
| 기타운송기기  | 927,320                      | 3,990,577,855            | 0.02  |
| 기타제조품   | 171,175                      | 211,541,433              | 0.08  |
| 비금속광물   | 2,398,623                    | 286,934,665              | 0.84  |
| 운송기기    | 8,014,386                    | 1,509,033,143            | 0.53  |
| 의류/직물   | 27,379,817                   | 2,519,056,424            | 1.09  |
| 일반기계    | 23,182,670                   | 3,121,667,867            | 0.74  |
| 전기기계    | 30,873,160                   | 10,192,161,482           | 0.30  |
| 정밀기계    | 68,953                       | 759,273,417              | 0.01  |
| 종이/목재   | 3,137,907                    | 278,967,445              | 1.12  |
| 총합계     | 1,505,430,424                | 38,785,202,668           | 3.88  |

주: \* 데이터 오류 가능성 존재.

\*\* 한·ASEAN FTA가 발효된 국가들에 대한 총 수출액.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높은 실용률을 보인 금속제품의 경우도 실제로 높은 실용률을 보였다고보다는 데이터 오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sup>87)</sup> 나머지 품목에서는 의류·직물과 종이·목재 두 품목만이 실용률이 1%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대ASEAN 수출품목의 경우, 한·ASEAN FTA를 이용한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87) 국가별로 신청액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 품목에서 특정 월의 원산지 증명서 신청액이 실질 수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수출이 일어나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표 5-22.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국가별

(단위: 천 달러, %)

| 국가    | 원산지 증명서 신청액   | 총 수출액         | 실용률 (%) |
|-------|---------------|---------------|---------|
| 인도네시아 | 80,817,287    | 6,311,198,934 | 1.28    |
| 말레이시아 | 1,356,128,029 | 5,925,924,937 | 22.88   |
| 베트남   | 65,850,315    | 7,391,874,832 | 0.89    |
| 필리핀   | 1,244,439     | 4,868,021,158 | 0.03    |
| 미얀마   | 51,515        | 268,450,052   | 0.02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별 실용률은 인도네시아 1.28%, 베트남 0.89%, 필리핀 0.03%, 미얀마 0.02% 등으로 한·ASEAN FTA를 이용한 수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2 참고). 말레이시아만이 활용률 22.88%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언급한 데이터 오류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sup>88)</sup> 각 국가별·월별 활용률은 [부록 7]에서 정리하고 있다.

교역관계의 특수성이나 상대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용률만을 가지고 활용률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ASEAN FTA의 실용률을 가지고 활용률을 계산할 경우, 양측의 교역관계가 한·중간의 교역관계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정치를 계산해 볼 수 있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 중에 실질적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품목은 전체 수출액의 29.1%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국 내 수출공단지역으로 수출되어 관세가 면제되거나 가공무역 후 관세환급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sup>89)</sup> 한·ASEAN 교역에 적용할 경우, 한·ASEAN

88) 앞서 언급한 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액이 실질 수출 신고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2007년 11월 대(對) 말레이시아 수출 데이터에서 발생하였다.

89) 양평섭 외(2007).

FTA의 한국 수출 활용률은 약 14.4%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sup>90)</sup> 이러한 활용률 추정치를 고려하더라도 한국과 ASEAN 국가들은 한·ASEAN FTA를 활용함에 있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수한 이유로 인해 한·ASEAN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어려운 천연가스를 제외할 경우 50% 대의 활용률을 기록한 한국의 ASEAN 수입에 대한 활용률과 비교해 한국 수출에 대한 한·ASEAN FTA의 이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본 절에서는 상기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간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FTA 체결에 따른 양 당사국간 시장접근성이 확대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 FTA 활용도를 살펴보았다면,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이 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이 FTA 활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표 5-23]에 FTA별 엄격성 및 수입품목에 대한 활용률을 산업별로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 활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원산지 결정기준이 엄격해질수록 FTA 활용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는 FTA 체결 상대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도 간에는 그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다. 예컨대 1차산

90) 한국의 대ASEAN 총 수출액 중, 약 30%가 관세를 납부하는 품목이고 관세가 실제로 인하된 일반품목이 전체품목의 90%라는 점을 고려해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표 5-23. FTA별 엄격성 및 수입품목에 대한 활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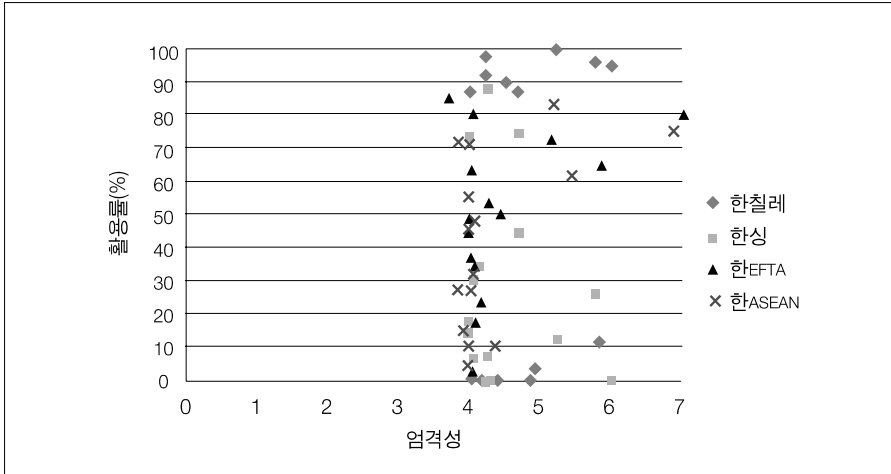
| 구분     | 한·칠레 |      | 한·싱가포르 |      | 한·EFTA |      | 한·ASEAN |      |
|--------|------|------|--------|------|--------|------|---------|------|
|        | RI   | 활용률  | RI     | 활용률  | RI     | 활용률  | RI      | 활용률  |
| 1차산품   | 6    | 95.3 | 5.99   | 0.1  | 6.98   | 80.1 | 6.89    | 76.2 |
| 가공1차산품 | 5.77 | 95.8 | 5.74   | 26.5 | 5.86   | 64.7 | 5.19    | 84.0 |
| 가공광물   | 4.66 | 88.0 | 4      | 14.3 | 3.99   | 44.6 | 4       | 10.7 |
| 가죽제품   | 4.86 | 0.2  | 4.27   | 87.8 | 4      | 37.2 | 4.03    | 32.3 |
| 고무/화학  | 3.98 | 87.1 | 4.13   | 34.6 | 4.02   | 63.3 | 3.99    | 45.2 |
| 금속제품   | 4.51 | 90.3 | 4.25   | 7.0  | 4.07   | 33.9 | 3.99    | 71.2 |
| 기타운송기기 | 4.59 | 0.0  | 4.26   | 0.0  | 4.02   | 2.2  | 4       | 4.7  |
| 기타제조품  | 4.9  | 2.9  | 4.33   | 0.0  | 4.28   | 52.8 | 4.02    | 47.4 |
| 비금속광물  | 5.2  | 100  | 4.69   | 74.9 | 3.72   | 84.9 | 3.85    | 72.0 |
| 운송기기   | 4.39 | 0.00 | 4.68   | 44.6 | 4.03   | 80.4 | 4.33    | 10.7 |
| 의류/직물  | 5.83 | 11.5 | 5.25   | 12.4 | 5.16   | 73   | 5.44    | 62.1 |
| 일반기계   | 4.22 | 98.3 | 4.07   | 6.7  | 4.17   | 23.7 | 3.99    | 26.7 |
| 전기기계   | 4.05 | 0.0  | 4      | 17.6 | 4.08   | 17.1 | 3.85    | 27.5 |
| 정밀기계   | 4.14 | 0.0  | 4.07   | 30.4 | 4.45   | 50.3 | 3.96    | 14.9 |
| 종이/목재  | 4.21 | 91.9 | 4      | 73.3 | 4      | 48.7 | 4       | 55.8 |
| 총계     | 4.82 | 90.5 | 4.59   | 29.8 | 4.59   | 43.2 | 4.53    | 27.0 |

자료: 저자 작성.

품의 경우 원산지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싱가포르 FTA를 제외하고 FTA 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가공1차산품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금속광물의 경우 한·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여타 FTA에 비해 가장 엄격한데도 활용률이 100%에 달하는 등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간에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다.

아울러 교역구조 역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3]에서 각 FTA별로 주로 교역되는 산업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엄격성과 활용률간 상관관계를

그림 5-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수출 활용률간 관계



자료: 저자 작성.

찾을 수 없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이 체결한 4개 FTA와 15개 산업별로 엄격성과 활용률을 [그림 5-3]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이 체결한 FTA하에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간에 특이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이는 FTA 활용률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보다 다른 요인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표 5-24]는 한국이 FTA 체결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리한 표이다. 한·ASEAN의 경우 활용률이 아닌 실용률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였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수출입 품목이 FTA 체결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보다 상세하게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수출품에 대한 높은 FTA 활용률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혜택으로 인해 체결 상대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의미

표 5-24. FTA별 엄격성 및 수출품목에 대한 활용률(실용률)

(단위: %)

| 구분     | 한·칠레 |      |
|--------|------|------|
|        | RI   | 활용률  |
| 1차산품   | 6    | 96.4 |
| 가공1차산품 | 5.77 | 69.7 |
| 가공광물   | 4.66 | 99.4 |
| 가죽제품   | 4.86 | 18.0 |
| 고무/화학  | 3.98 | 94.7 |
| 금속제품   | 4.51 | 94.7 |
| 기타운송기기 | 4.59 | 45.9 |
| 기타제조품  | 4.9  | 71.3 |
| 비금속광물  | 5.2  | 74.9 |
| 운송기기   | 4.39 | 99.4 |
| 의류/직물  | 5.83 | 84.4 |
| 일반기계   | 4.22 | 87.3 |
| 전기기계   | 4.05 | 90.9 |
| 정밀기계   | 4.14 | 70.6 |
| 종이/목재  | 4.21 | 83.3 |
| 총계     | 4.82 | 96.9 |

| 구분     | 한·ASEAN |       |
|--------|---------|-------|
|        | RI      | 실용률   |
| 1차산품   | 6.89    | 0.83  |
| 가공1차산품 | 5.19    | 10.11 |
| 가공광물   | 4       | 0.01  |
| 가죽제품   | 4.03    | 0.00  |
| 고무/화학  | 3.99    | 0.77  |
| 금속제품   | 3.99    | 30.20 |
| 기타운송기기 | 4       | 0.02  |
| 기타제조품  | 4.02    | 0.08  |
| 비금속광물  | 3.85    | 0.84  |
| 운송기기   | 4.33    | 0.53  |
| 의류/직물  | 5.44    | 1.09  |
| 일반기계   | 3.99    | 0.74  |
| 전기기계   | 3.85    | 0.30  |
| 정밀기계   | 3.96    | 0.01  |
| 종이/목재  | 4       | 1.12  |
| 총계     | 4.53    | 3.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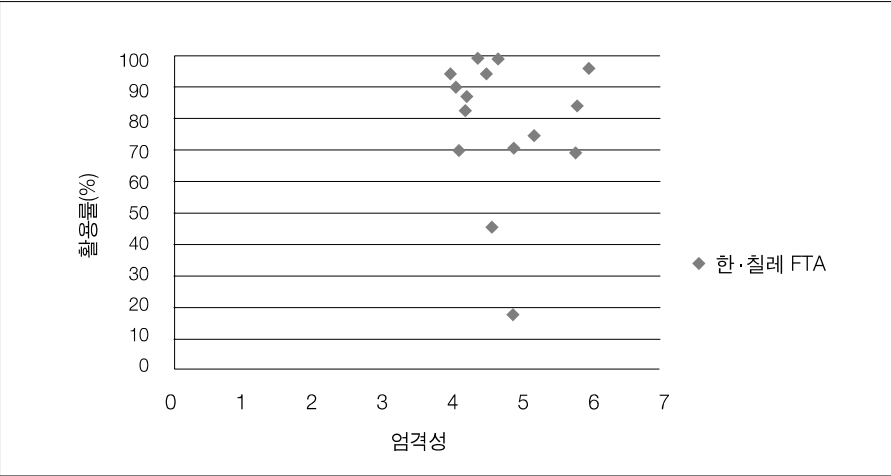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하는 반면, 원산지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될수록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 원산지규정이 가장 엄격하다고 분류되는 NAFTA를 토대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70~90% 가량의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과 활용률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4] 역시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한·칠레 FTA 원산지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되었더라도, 한국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생산과정과



그림 5-4.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수출 활용률간 관계: 한·칠레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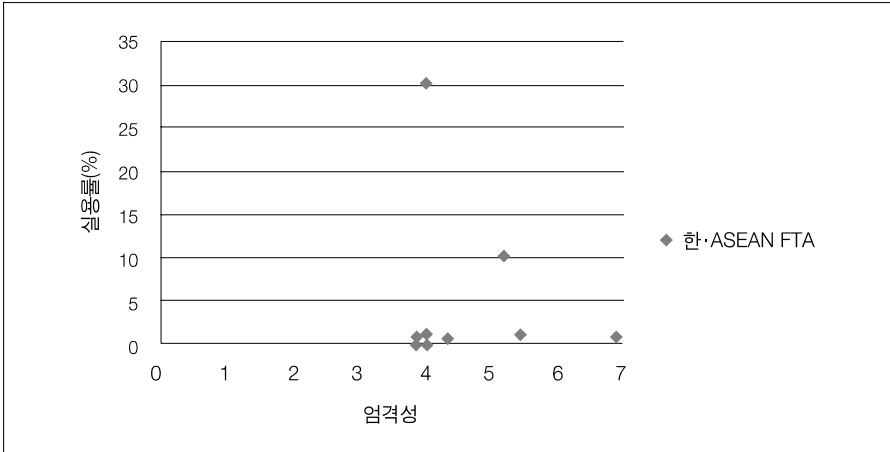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재료조달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가공광물이나 운송기기 등 한국의 대(對)칠레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은 한국 대기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과 능력을 보유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칠레 FTA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높은 활용률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칠레 FT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 국내적으로 많은 논쟁과 반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 효과를 불러왔다는 점도 활용률을 높이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한·ASEAN FTA의 저조한 실용률과 관련하여 이 역시 원산지규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그림 5-5 참고). 이보다는 한·ASEAN FTA에 대한 홍보부족과 상대국 수입업자의 역량 부족, 그리고 발효 1년 차로 상대적으로 관세인하의 폭이 깊지 않다는 점이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5.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수출 활용률간 관계: 한·ASEAN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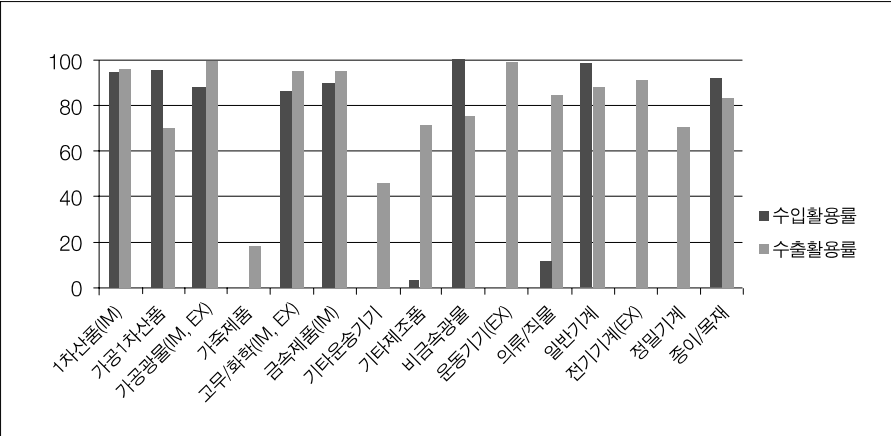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하지만 원산지 인정을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였고, 정부 기관에 기업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은 한·ASEAN FTA의 적극적인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ASEAN으로의 수출에서 한국 수출품이 수출 국가에서 조립·생산되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낮은 실용률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수입된 부품에 대해서는 재수출되면서 관세 환급이 되며,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통한 특혜관세 혜택을 신청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ASEAN FTA의 실용률 혹은 활용률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ASEAN 국가들의 관세인하 폭이 커지고, 한·ASEAN FTA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낮은 실용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FTA 체결 상대국간 FTA 활용도를 비교해보고자 하는데, 데이터에 대한 제약으로 한·칠레 FTA에 국한하여 양국간 산업별 FTA 활용도를 비

그림 5-6. 한·칠레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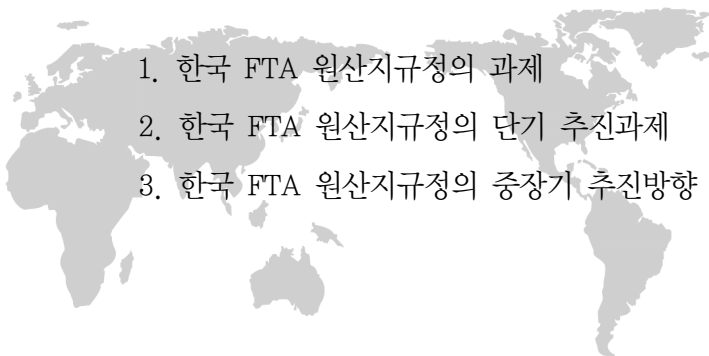
주: 가공광물, 고무/화학, 운송기기, 전기기계는 칠레로의 주요 수출산업(EX)이고, 1차산업, 가공광물, 고무/화학, 금속제품은 칠레로부터 주요 수입산업(IM)임.

교할 수 있다. [그림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한국이 칠레에 비해 FTA 활용률이 높은 편이다.

양국간 활발하게 교역되는 산업인 가공광물과 고무/화학은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반면, 가죽제품, 기타제조품, 운송기기, 전기기계, 정밀기계 등은 칠레로부터 극히 적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 산업에 한해서는 칠레의 경우 FTA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에 대한 FTA 활용률 차이는 적은 양이 교역되는 만큼 칠레 수출업자 혹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특혜관세에서 오는 혜택이 원산지 입증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MFN 관세율 하에서 수입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이밖에도 양국 무역정책, MFN 관세율, 교역조건, 산업구조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실증 분석은 차후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 제6장

#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앞의 제4장과 5장에서는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그리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복잡하고 다양한 한국 FTA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를 결정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원활한 상품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 FTA 원산지규정이 지니고 있는 과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제안이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시급한 단기과제라고 한다면, 3절에서는 향후 추진될 FTA에서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원산지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다.

##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스파게티볼 효과다. 바그와티(Bhagwati)가 경고한 바와 같이 FTA 별로 통일성 없이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난립함으로써 생산자 혹은 수출자에게 FTA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북미국가나 유럽연합은 각국이 체결하는 FTA에서 각각 NAFTA 방식이나 PANEURO 방식으로 불리는 자신들의 원산지규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및 한·미 FTA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들은 원산지규정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각 품목별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적용된 품목은 단 9개에 불과하다.<sup>91)</sup> <sup>92)</sup> 반면에 총 5,224개의 품목 중 2,368개 품목(45.3%)이 3개의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지니고 있

표 6-1.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분포

| 대분류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 총합계  |
|--------|----|------|------|------|-----|------|
| 1차산품   | 0  | 24   | 258  | 112  | 2   | 396  |
| 가공1차산품 | 0  | 15   | 198  | 108  | 12  | 333  |
| 가공광물   | 0  | 201  | 119  | 13   | 1   | 334  |
| 가죽제품   | 0  | 9    | 32   | 26   | 7   | 74   |
| 고무/화학  | 0  | 426  | 327  | 81   | 9   | 843  |
| 금속제품   | 9  | 172  | 279  | 124  | 0   | 584  |
| 기타운송기기 | 0  | 10   | 31   | 17   | 0   | 58   |
| 기타제조품  | 0  | 49   | 54   | 46   | 32  | 181  |
| 비금속광물  | 0  | 12   | 169  | 12   | 0   | 193  |
| 운송기기   | 0  | 5    | 61   | 10   | 0   | 76   |
| 의류/직물  | 0  | 42   | 357  | 436  | 68  | 903  |
| 일반기계   | 0  | 66   | 197  | 155  | 94  | 512  |
| 전기기계   | 0  | 17   | 130  | 94   | 46  | 287  |
| 정밀기계   | 0  | 66   | 63   | 65   | 22  | 216  |
| 종이/목재  | 0  | 140  | 93   | 1    | 0   | 234  |
| 총합계    | 9  | 1254 | 2368 | 1300 | 293 | 5224 |

주: HS 2002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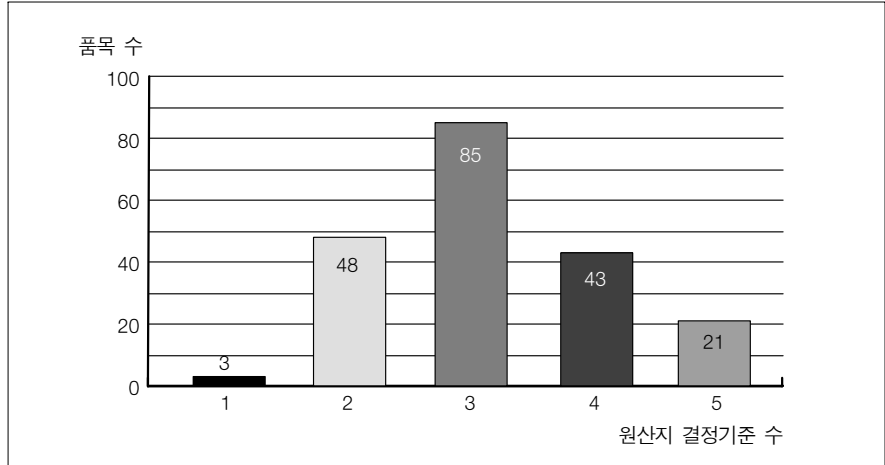
91) 동일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된 품목은 철강제품 9개 품목으로 HS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그리고 720990이다.

92) 동 분류는 원산지규정 형태에 따른 분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산지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형태상으로 다른 형태로 분류되는 경우나, 부가가치기준의 산정방법이나 허용 기준에 대한 고려는 누락된 수치이다. 예를 들어, 동일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한 협정문에서는 부가가치기준(RVC)만이 적용되고 다른 협정문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CH or RVC)의 선택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생산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양쪽 FTA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원산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원산지규정으로 고려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원산지규정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원산지규정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예를 들어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산정방식이나 허용기준이 다르더라도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치될 경우, 동일한 원산지규정으로 고려하였다.

으며, 2개 혹은 4개의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품목도 각각 1,254개 품목 (24.0%)과 1,300개 품목 (24.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별로는 고무·화학제품이나 종이·목재, 가공광물 품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섬유·의류와 일반기계, 전기기계 제품에 대해서는 FTA별로 다양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6단위 기준으로 한국의 200대 수출품목만 추려서 살펴보면,<sup>93)</sup> 200대 품목에 대해서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모두에 동일한 원산지 결정규정이 적용된 품목은 오직 3개 품목에 불과하며, 2개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된 품목은 48개, 3개의 결정기준 적용품목 85개, 4개의 결정기준 적용품목 43개가 있다. 또한 5개 FTA 모두에서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된 품목은 21개에 이른다(그림 6-1 참고). 이처럼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들조차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

그림 6-1. 한국 200대 수출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분포



자료: 협정문을 근거로 저자 작성.

93) 2007년도 한국의 200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은 약 3,022억 달러로 같은 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의 약 81.3%를 차지하고 있다.

하다는 점은 기업의 입장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FTA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른 원산지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FTA별로 다른 원자재 조달 및 생산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에 또 다른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FTA의 효과를 반감하게 된다.<sup>94)</sup>

특히 원산지 결정기준의 다양성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상대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을 전문적으로 다룰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확보를 위한 추가비용 또한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 확보나 원자재 조달선 변경 혹은 생산방식 변경을 통해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는 작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을 요구할 경우, FTA 특혜관세를 이용하는 것보다 원산지규정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드는 추가비용이 더 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특혜관세혜택을 포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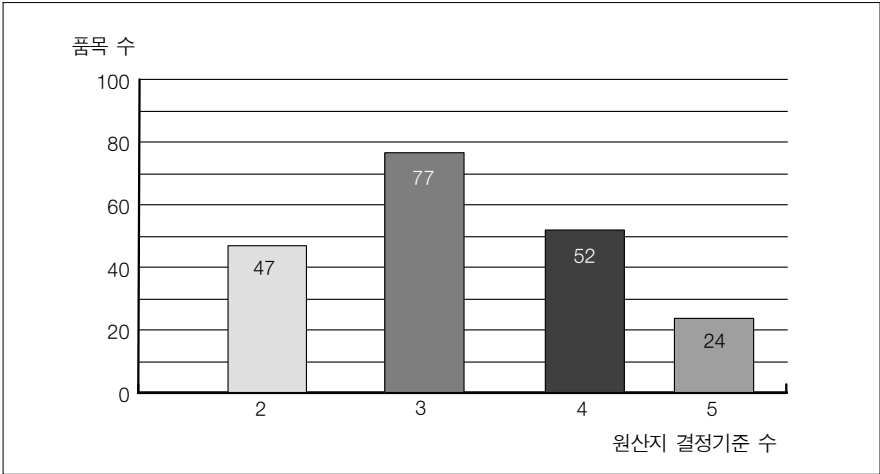
한국 중소기업의 대세계 수출 200대 품목에 대한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6-2]는 한국 중소기업의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나타내고 있다.<sup>95)</sup> 그림에서 보듯이 총 200개 품목 중, 단일 원산지 결정기준이 5개 FTA에 동일하게 적용된 경우는 없으며, 47개 품목은 2개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77개 품목은 3개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4개의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지닌 품목도 총 52개에 달했으며, 5개 FTA에서 모두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지닌 품목도 24개 품목에 이른다.

94) HS 6단위 기준 한국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록 8]에 첨부되었다.

95) 자세한 것은 [부록 9]에 첨부하였다.



그림 6-2. 한국 중소기업 200대 수출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분포



자료: 협정문을 근거로 저자 작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200대 수출입 품목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비교하면, 3개 이상의 원산지규정을 지니고 있는 품목 수가 각각 149개와 153개 품목으로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하여 다양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일 품목에 대하여 FTA별로 다양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용하는 것은 수출 건수당 수출액 규모가 작거나 원산지 증명을 위한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며 적극적인 FTA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08년 총 5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80% 이상이 수출입 과정에서 FTA 특혜

관세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sup>96)</sup> 설문조사 대상이 된 125개 대기업 중, 33개 기업(26.4%)만이 FTA 특혜관세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380개 중소기업 중에 FTA 특혜관세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62개 기업(16.3%)에 불과하였다.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이거나 전체적으로 큰 실익이 없다는 대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FTA 체결상황이나 활용방법(관세, 원산지정보 등)을 잘 알지 못하며 원산지증명에 대한 상대국의 바이어 요청이 없다는 대답, 그리고 FTA 활용을 위한 서류 구비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다는 것 등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N=410)

| 응답내용                                          | 사례수 |
|-----------------------------------------------|-----|
| 이미 무관세이거나 전체적으로 큰 실익이 없다                      | 160 |
| FTA 체결상황이나 활용방법 (관세, 원산지정보 등)을 잘 모름           | 153 |
| 원산지증명에 대한 상대국 바이어 요청이 없다                      | 65  |
| <b>FTA 활용을 위한 서류 구비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다</b>     | 47  |
| 당사와 거래 없음                                     | 45  |
| 수출품이 관세와 관계가 없다                               | 5   |
| 2009년 이후 적용 대상이다                              | 1   |
| 주 수출방법이 통관인도조건(DDP)이 아니라 운인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이므로 | 1   |

주: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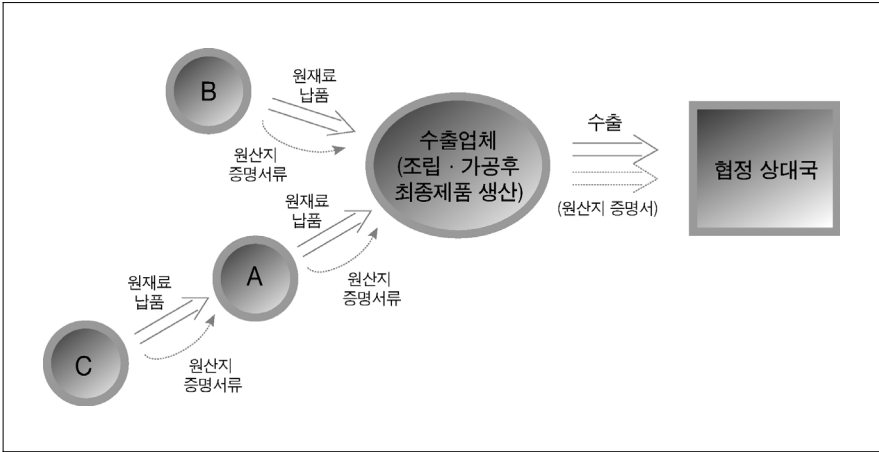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FTA 이행 및 활용방안 간담회 발표 자료.

96) 한국무역협회 국제연구원이 2008년 4월 17~30일에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로 총 505개사의 수출입 업체 임원 및 수출입 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기업은 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125개사(24.8%)와 중소기업 380개(75.2%)를 포함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농림수산물, 광산물, 섬유류, 생활용품 등 전 업계를 포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무역협회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도 제고 방안」 참고.

주요 응답 중, FTA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점과 FTA 활용을 위한 서류 구비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다는 대답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및 이행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수출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협정문에 적혀있는 원산지규정의 내용만을 가지고 특혜관세혜택을 받기위한 원산지 증명 방법과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발급방식 등을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와 협회 차원에서 FTA 활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아직까지도 업계의 입장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따르기 힘든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방식과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각각의 협정문별로 산정 방식에 차이를 지니고 있어 원산지 증명에 충분한 노하우를 지니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원산지규정이 비단 실제로 수출을 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까지도 일정부분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원산지규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수출기업이 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해당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까지도 원산지 증명을 위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만약의 검증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6-3]에서 수출업체가 협정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업체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A와 B기업, 그리고 A기업이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중간재가 C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생산된 중간재라면 C기업까지도 원산지 증명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수출국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직접 혹은 간접검증을 요청해 올 경우,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A, B, C기업도 검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림 6-3. 생산절차에서의 원산지증명 협력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 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체이거나 대기업에 소속된 중소납품업체일 경우,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 준비와 보관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자금이 요구되며 이는 소규모 영세업체에게는 비용 측면에서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또한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수출업체에게 원가나 영업상의 비밀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수출업체와 중간재 공급업체들 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 부족은 한·미 FTA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존 한국의 FTA 체결 상대국들의 경우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요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원산지 검증시스템을 가동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미국은 NAFTA 발효 초기에 NAFTA를 통한 수혜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집중적인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수출기업이 원산

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는 미국 검증 기준을 과연 한국의 수출기업 중 얼마나 많은 기업이 만족할만한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한·미 FTA 발효에 앞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FTA 원산지규정은 협정 당사국 간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100% 반영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원산지규정에 있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서조차 FTA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아직까지도 품목별 원산지 결정방식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정립하지 못하였다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FTA 협상에서는 HS 6단위, 총 5,224개 품목 (HS 2002 품목분류 기준)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협상대표단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물식품부, 산림청 등 각 품목의 관련 부처가 산하의 협회나 기업에게 원산지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그 내용을 전달받아 협상에 임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는 방식은 업계나 협회가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많은 수출업체들이 한국의 FTA 추진 초기에 ‘부가가치기준’과 ‘국산화 비중’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기준의 산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특정 원산지규정이 가져오는 결과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새로운 FTA를 위한 또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거나 협상 상대국 의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자료와 근거를 가지지 못한 채 이를 수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FTA에서 마련된 원산지규정이 이행과정에서 습득되는 학습효과의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 다음 협상에서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한 충분한 제고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이는 캐나다, 미국, EU 등 상대적으로 오랜 FTA 역사를 지니고 자국의 협상 참가자와 관련 업계가 상호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자국의 이해를 반영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 상대국에 따라 상대국과의 교역관계에 대한 특수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원산지규정을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은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EU, 캐나다, 인도, GCC 등과의 FTA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과의 FTA 추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더 이상의 복잡성이 가중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각 업계와 협회를 중심으로 최적의 원산지규정을 찾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는 데 있어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혹은 특정공정기준 등 어떠한 결정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원산지규정 증명 등 원산지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번변경이 부가가치기

준에 비해 원산지 증명이나 검증에 있어 간단하다는 점에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실제로 원산지 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반드시 세번변경기준이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간결한 것은 아니다. 한·ASEAN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거래계약서와 같은 기본서류 외에도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공정내역서, 원재료내역서, 부품구입증명서자료(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가 필요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원산지별 원재료 사용 및 가격관련 입증자료(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sup>97)</sup>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만을 놓고 보았을 때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수백, 수천 개의 부품이 이용되는 품목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엄청난 분량의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세번변경기준이 더 간단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방안도 국내적으로 혹은 협상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증명방식보다는 자율증명이 업계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기관증명서 발급이 요구되는 FTA의 경우,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200대 수출품목이나 중소기업의 200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생산과정과 원재료 조달을 반영한 한국형 원산지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FTA 협정문에 대해서도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개

97)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http://www.korcham.net)).

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 200대 수출품목이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3%에 달하며 중소기업 200대 수출품목의 경우는 전체 중소기업 수출의 63.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품목들에서만이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 수출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중소기업의 주요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관성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위한 비용이 큰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이미 한국은 5개의 FTA를 완료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수출업체의 경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전문부서나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각 지역 세관과 관세청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정도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문의사항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FTA 체결국과 협정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이나 세관 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원산지규정 및 증명절차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고충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샌들러 앤 트레비스(Sandler & Travis Trade Advisory Service, INC),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트레이닝(International Business Training)과 같은 민간 기관이나 중부 뉴욕 생산자조합(MANCY,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entral New York)과 같은 협회 혹은 브래들리 대학(Bradley University)과 같은 교육기관 등이 FTA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



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자사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FTA 원산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무역컨설팅법인인 샌들러 앤 트레비스社의 경우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비롯하여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운송,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rade VIA이라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NAFTA, GSP, 미·호주 FTA 등 다양한 무역프로그램에 필요한 FTA 관련 자료제출 요구(solicitation)와 FTA 적격성 확인(qualification)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각 국가 또는 각 협정이 정한 기록유지 요구기간 동안의 문서보관 업무를 대행한다. 미국은 이러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우, 과실 등에 대한 페널티를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원산지나 혹은 수출입 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기업의 원산지규정이나 법규준수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98)</sup>

반면에 한국의 경우 몇몇 관세법인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전문 컨설팅 업체와 같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자사 수출에 대한 원산지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 없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FTA 관련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여 왔지만,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비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한·미 FTA의 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의 FTA 대상국보다 강력한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수출에 대한 FTA 활용률은 한·칠레의 경우 97%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98) 관세청, 「한·미 FTA 발효 대비를 위한 미국 FTA제도 등 정보 수집 출장결과 보고」 pp. 37~79 내용을 참고함.

보여주고 있으며, 원산지규정과 활용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수출기업이 자사가 FTA 특혜관세를 이용하여 수출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에 얼마나 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미국은 FTA 발효 초기에 상대국의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집중 심사대상으로 분류되어 관세청 내에 섬유제품 검증팀(CBP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s)을 운영하면서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한국의 대표적 수혜산업으로 회자되고 있는 섬유·의류 제품이 한·미 FTA 발효 후에 계속되는 미국의 원산지 검증 요구에 적절한 증명을 하는 데 실패할 경우, 미국 세관은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한국산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수출기업이 특혜관세 신청시 요구되는 미국의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피하기 위해 FTA 활용을 포기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미국과 같은 원산지관련 교육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의 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러한 교육서비스가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정부의 몫으로 여겨진다. 또한 당장에 닥칠 한·미 FTA를 대비하여,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닌 산업(대표적으로 섬유·의류 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한·미 FTA 발효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한국의 원산지규정이 직면한 단기과제가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상황에 맞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규정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라면, 중장기적인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는 개성공단 혹은 북한지역의 확대 활용과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역외가공을 통한 개성공단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은 한·싱가포르 FTA부터 중요한 FTA 협상목표로 여겨져 왔으며 비록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하고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치적인 의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향후 FTA에서 개성공단 혹은 북한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의 확대는 한국에 경제적으로도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호주나 뉴질랜드 혹은 중국과의 FTA에서 ASEAN 지역을 포함하는 유사누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역내국의 생산시장을 실질적으로 단일화시켜 한국산 제품의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 1) 개성공단 현황 및 중요성

개성공단 개발은 3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동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8년도 7월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총 72개사(2008년 9월 기준으로 총 83개사)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50개사가 공장 건축 중이며 총 3만 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입주기업들의 생산실적도 2005년 약 1,491만 달러에서 2007년에는 1억 8,478만 달러로 열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누적 생산액은 2008년 5월까지 총 3억 7,383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에 약 7,919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6-3.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 현황

| 구분     | 섬유봉제 | 화학 | 기계금속 | 전기전자 | 식품 | 계  |
|--------|------|----|------|------|----|----|
| 시험단지   | 3    | 2  | 17   | 5    | -  | 27 |
| 본단지 1차 | 42   | -  | 1    | -    | -  | 43 |
| 본단지 2차 | 8    | 1  | 3    | -    | 1  | 13 |
| 계      | 53   | 3  | 21   | 5    | 1  | 83 |

주: 2008년 9월말 현재.

자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웹사이트(<http://www.kidmac.com>).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입주를 위한 평당 분양가, 최저임금, 기업 소득세 등에서 중국이나 국내 투자에 비해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미화 약 50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642달러나 중국의 99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평당 분양가도 14만 9천원으로 중국의 48만원, 한국의 40만 7천원보다 낮다. 또한 한국의 주요 진출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언어소통이 가능하며 육로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해외진출보다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에 있어 개성공단은 공단개발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이익 이외에도 한반도 내에서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폐쇄성과 위험성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표 6-4. 개성, 중국, 한국의 공단 비교

| 구분        | 단위 | 개성(A)   | 중국(B)   | 한국(C)   | 중국대비(A/B) | 한국대비(A/C) |
|-----------|----|---------|---------|---------|-----------|-----------|
| 월최저임금     | 달러 | 50      | 99.28   | 642     | 0.50      | 0.08      |
| 주당법정 근로시간 | 시간 | 48      | 40      | 44      | 1.2       | 1.1       |
| 기업소득세     | %  | 10~14   | 15      | 23~28   | -         | -         |
| 평당분양가     | 원  | 149,000 | 480,000 | 407,550 | 0.31      | 0.37      |

자료: 통일부.

는 개성공단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거하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산 인정은 남북한 협력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정치적 의미와 북한 노동력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생산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추진하는 FTA에서 개성공단 혹은 북한을 이용한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인정의 확대는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2) 기존 협정문에서의 개성공단 특례조항

한국이 이미 체결한 5개 FTA 중에서 최초로 발효된 한·칠레 FTA와 현재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한·미 FTA를 제외한 나머지 3개 FTA에서는 모두 개성공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FTA 협정문에 포함하는 방식은 역외가공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한 원산지인정을 받도록 하는 방법과 개성공단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두 가지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역외가공을 이용하여 개성공단을 협정문에 포함하고 있는 한·EFTA FTA의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역외공정의 부가가치가 최종재 공장도가격 대비 40%를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출국 부가가치비중이 최종 수출품 공장도가격의 60% 이

상인 경우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외가공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HS 6단위 총 267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의류(HS 61, 62류), 시계 및 손목시계(HS 91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10단위 총 134개 품목에 대하여 비원산지 추가치가 수출품 관세가격(customs value)의 40%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국의 원산지 가치가 관세가격의 45% 이상인 경우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 인정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에 의해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수출된다는 점은 향후 FTA 협상에서 선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개성공단(Gaesong Industrial Complex)이라는 특정지역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한반도 내의 산업지역(other industrial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지역을 포괄함으로써 개성 이외의 지역으로 동 조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한·ASEAN FTA는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교환각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ASEAN 회원국들은 HS 6단위 기준으로 100개씩의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품목 목록을 제출하였고, 비원산지 재료의 추가치가 최종재화 본선인도가격(FOB)의 40% 이하이고

표 6-5. ASEAN이 선택한 빈도수 상위 5개 품목류

|                            | 의류    | 시계    | 신발    | 편물의류 | 전기기기<br>TV, VTR |
|----------------------------|-------|-------|-------|------|-----------------|
| ASEAN이 선택한 품목비율            | 24.8% | 17.9% | 12.8% | 9.1% | 7.2%            |
| 개성공단 생산(예정) 품목<br>비율(232개) | 26.7% | 12.1% | 12.5% | 9.9% | 8.6%            |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06년 8월 25일).

최종재화 생산에 이용된 한국산 재료의 총가치가 60% 이상인 경우 한국의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ASEAN 회원국들이 선정한 품목들을 살펴보면 개성공단에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이 비교적 골고루 선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정된 품목 중 의류가 가장 많고(24.8%), 시계가 두 번째(17.9%)를 차지하고 있다(표 6-5 참고).

### 3) 개성 혹은 북한 가공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추진방향

개성공단 혹은 북한 가공제품에 대하여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역외가공조항을 이용하는 방법과 부가가치기준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생산 부가가치나 중간재를 인정받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개성공단에서 100% 생산된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 일부 공정을 북한의 개성공단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한국이 체결한 기존 FTA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일반적 역외가공의 허용범위인 최종재화의 공장도가격(혹은 FOB 가격, 생산가격)의 부가가치를 1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특례조항을 이용한 방법이 이용되었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특례조항에 포함되는 품목은 싱가포르의 실질관세율이 무관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동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통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에 FTA를 추진할 국가들과도 상대국의 무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특례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이 개성공단 생산 가능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섬유·의류, 신발, 전기기기 등의 품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관세 품목들로, ‘무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특례조항을 합의’하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

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역외가공 허용기준을 조정한 특례조항을 이용한 방법은 협정문에 ‘개성공단’ 혹은 ‘한반도 내의 공단지역’과 같이 역외가공이 가능한 지리적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개성공단이나 한반도 내의 특정지역을 협정문에서 언급하는 방법은 ‘WTO 회원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등한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WTO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s)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역외가공 조항을 FTA 협정문에 포함하는 경우 협정문에 역외가공 허용 지역에 대한 명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최혜국대우 위반을 비껴갈 수 있다. 하지만 한·싱가포르 FTA에서처럼 ‘개성공단’이라는 특정지역을 명시하는 경우 다른 WTO 회원국이 MFN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역외가공을 이용한 북한산 가공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을 대체할만한 대안으로는 일부 관심품목에 대한 부가가치기준을 완화하여 개성공단에서 수행된 공정이 최종 수출되는 수출품목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호주·싱가포르 FTA는 일반 품목들에는 50% 역내 부가가치비중을 적용하고 있지만, 양국이 합의한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30%로 역내 부가가치비중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 품목들은 호주·싱가포르 FTA 협정문 Annex 2C와 2D에 명시되어 있는데, 2C에는 HS 4단위 178개 품목과 8단위 247개 품목이, 그리고 2D에는 HS 6단위 114개 품목이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sup>99)</sup>

99) Annex 2C와 2D에 명시된 품목은 모두 부가가치기준 30%의 결정기준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2C에 명시된 품목은 최종공정이 수출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가조건이 붙는 반면에 2D에 기록된 품목은 최종공정 역내수행의 조건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호주·싱가포르 FTA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부가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싱가포르가 주변 ASEAN 국가에서 가공된 제품에 대하여 싱가포르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역외가공 대신에 부가가치비중을 조절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역외산 공정예에 대한 제한(예를 들어 ‘WTO 비회원국을 제외한다’와 같은)은 두지 않음으로써 WTO 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FTA에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향후 추가협상 과제로 유보되어 있다. 협상 당시 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한 관계는 한국이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외적환경을 조성하였고, 양국은 이러한 문제가 선결된 후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최근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한·미 FTA가 타결된 2007년 상반기에 비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8년 6월에 1988년 1월부터 지속되어온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종료를 통보하였다. 이같은 미국·북한 간의 관계변화는 한·미 FTA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국이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이나 유사한 방식을 통한 북한 가공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할 경우, 이는 한반도 내의 평화정착이라는 정치적 의미와 개성공단 투자 유치 확대라는 경제적 의미에 모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금명간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와의 FTA 협상을 호주·싱가포르 FTA에서처럼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기준을 완화하여 북한 가공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개성공단 생산 혹은 생산예정 품목은 HS 6단위로 총 232개 품목으로 호주·싱가포르 FTA에서 부가가치기준 완화가 적용된 품목들의 범위를 고려해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한다. 특히 호주와의 FTA에서 기존의 변형된 역외가공조항을 이용한 방법 대신에 부가가치기준 완화를 통한 새로운 방법에 합의할 경우 향후에 자

국 FTA 체결에서 역외가공의 선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과 FTA 협상을 함에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 1) 유사누적조항의 도입과 필요성

FTA 원산지규정은 FTA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협정 당사국들이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고, 역외 국가들이 부당하게 경제통합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로 교역장벽을 형성하게 되어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 각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복수의 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망(‘hub & spoke’ system)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무역협정망체제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이 중심국(hub)에 집중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교역이 중심국과 주변국(spokes)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결국 주변국 간의 교역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재료의 국내조달(local sourcing) 능력이 제한된 작은 나라들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원산지 누적조항(cumulation)에 유사누적조항(diagonal cumulation)을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유사누적이란 누적평가의 대상국 범위를 넓혀 상대국뿐만 아니라 상대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원산지재료에 대해서도 수출국 원산지재료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EU를 비롯한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들은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하여 EFTA, 중부 및 동부 유럽, 발칸제국들을 대상지역(Pan-European Area of Cumulation)으로 한 유사누적을 적용하고 있다.<sup>100)</sup> 이러한 유사누적 방식은 동아시아 지역의 양자간 자유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이 생산 원

재료의 외부조달 비율이 높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된 국가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 유사누적조항의 적용과 경제적 효과

누적조항은 비원산지 재료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당 조항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수입한 비원산지 재료가 특혜를 받는 국가 내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누적규정은 한 국가(수출국) 내에서 완전히 생산되었거나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 제품만이 협정 상대국(수입국)으로부터 특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원산지규정의 기본조건에서 벗어난다. 원자재 혹은 중간재가 누적조항 적용 대상이 되는 국가 밖에서 수입될 때에는 실질적 변형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누적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누적조항 적용 대상국의 원재료가 이용된 경우 특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누적조항을 이용하고 있다.

누적조항의 형태로는 적용범위와 방법에 따라 양자간 누적(bilateral cumulation)과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그리고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이 있다.<sup>101)</sup> 양자간 누적조항은 양자간 FTA 당사국들 사이에서 협정체결 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자재 및 중간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상대국에 수출한 경우 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자국(수출국)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누적방법이다. 양자간 누적조항의 인정을 받는 상대국에서 수입된 중간재의 경우 충분한 가공이나 실질적 변형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국(수출국)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100) 최근 EEA 국가들은 유사누적의 대상지역을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이스라엘 등의 지중해연안 국가들까지 확대 적용하는 제도(Pan-Euro-Med diagonal cumulation)를 도입하고 있으며 EU도 일반특혜관세(GSP)에서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하고 있는데, ASEAN, CACM, the Andean Community 및 SAARC를 그 대상지역으로 한다.

101) 본 절에서는 유사누적과 양자누적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완전누적조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있다.

체결한 5개 FTA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특혜무역협정에서 이용되는 일반적인 누적 조항 방식이다.

반면에 유사누적은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을 포함한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FTA 참여 당사국이 서로 교차적으로 맺은 자유무역체결국에서 조달된 중간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수출품에 대하여 해당 중간재를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수입된 중간재는 충분한 가공이나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역내산으로 고려되며, 대표적인 유사누적 적용사례로는 EU와 EFTA국가, 그리고 Central and Eastern 유럽국가 및 터키 사이의 FTA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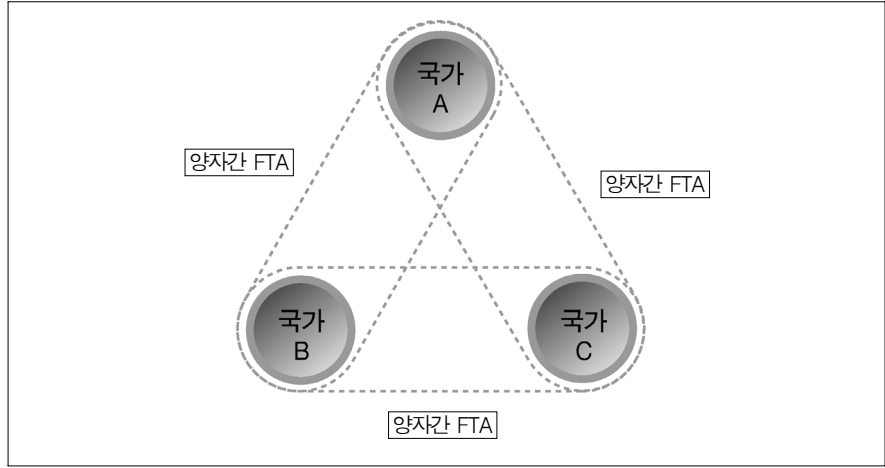
양자누적과 유사누적의 차이는 [그림 6-4]를 이용한 간단한 예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6-4]에서는 A국과 B국 그리고 C국이 각각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으나 A, B, C국을 포괄하는 하나의 FTA는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A국과 B국, B국과 C국, C국과 A국 사이의 상품교역은 각각의 협정문에서 명시된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각각의 FTA에서 양자누적만을 적용하는 경우, B국에서 A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원재료는 B국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A국에서 수입된 원재료만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B국이 C국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최종재를 생산하여 A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록 A국과 C국간에 FTA가 체결되어 있더라도 C국의 원재료는 A국과 B국간에 체결된 FTA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C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B국의 수출품은 B국에 대한 원산지 지위를 얻지 못한다.<sup>102)</sup> 이럴 경우, B국은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재료 공급선을 C국에서 자국으로

102) 정확히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품목별 규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 역내산 100%에 대해서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혹은 A국으로 바뀌게 되며, 이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6-4. 양자누적과 유사누적 적용의 차이



자료: 저자 작성.

B국이 C국에서 원재료를 조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C국이 B국의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양자누적을 적용한 원산지규정은 B국이 원산지규정을 맞추기 위해 원재료 공급지를 경쟁력을 지닌 C국에서 상대적으로 원재료 생산에 비효율적인 자국이나 A국으로 전환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결국 양자누적을 적용한 원산지규정은 B국 수출품의 효율적 생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A국과 B국이 양자간 FTA에서 C국을 포함하는 유사누적조항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비효율적인 생산의 문제는 해결된다. C국을 포함하는 유사누적조항이란, A국과 B국이 C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A국과 B국이 체결한 FTA에서 역내산으

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국이 C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도 역내산으로 인정되어 최종재화로 가공되어 A국으로 수출될 경우,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B국은 기존의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유사누적조항 도입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중,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한 예는 없다. 또한 한국이 향후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하는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유사누적조항 도입이 가능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이다. 동아시아지역은 복잡한 원산지규정 체제 및 여러 ‘hub & spoke’ 체제의 병존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유사누적조항 적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파급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추진이 예정된 FTA중 한국이 적극적으로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검토해야 할 협상 상대국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ASEAN과의 상품교역에 대한 FTA가 발효되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ASEAN · CER FTA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한 · 호주 혹은 한 · 뉴질랜드 FTA에서 ASEAN을 포함하는 유사누적을 도입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첫째로는 경제적인 이득이다. 한 · 호주와 한 · 뉴질랜드 간의 교역에서 한국은 주로 농축수산물과 자원을 수입하고, 자동차, 전기기기 등 최종소비재를 수출하는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섬유 · 의류 산업은 두 국가와 양자간 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큰 수혜업종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기 · 전자산업이나 섬유 · 의류 산업의 경우, 이미 많은 한국 기업의 ASEAN 진출이 이루어져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ASEAN 지역의 낮은 임금을 이용한 가공 수출되거나 ASEAN 지역에서 중간

재를 공급받아 한국에서 가공되어 수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호주와 한·뉴질랜드 FTA가 양자누적만을 인정할 경우, 한국은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수혜 가능업종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할 경우, ASEAN 중간재에 대한 역내산 원산지를 인정받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ASEAN을 포함하는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고 미들과워(middle power)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경제통합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벌써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지역에서 논의되었으나, 중국과 일본 간의 주도권 다툼과 견제로 인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한·호주와 한·뉴질랜드 FTA에서 ASEAN을 포함하는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하고, 또한 점차적으로 ASEAN과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도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유사누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간다면, 이는 참여국들의 생산시장을 하나의 생산시장으로 만드는, 실질적으로 생산시장의 통합을 이룩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또한 향후에 한국이 중국 혹은 일본과 양자간 FTA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한국-호주-뉴질랜드-ASEAN을 잇는 생산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사누적조항의 도입을 유도한다면, 이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생산시장 단일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결국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를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거대 경제국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유사누적조항으로 연결된 미들과워 간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주도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 어느 누구도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한 경험이 없고, 또한 각

국의 산업구조와 교역관계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유사누적조항의 도입은 쉽지 않은 과정이며, 또한 동아시아에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FTA 원산지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도 요구된다.<sup>103)</sup> 그러나 유사누적조항이 FTA 특혜원산지규정 체계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넓히고, 참여국간 원산지 규정의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103) 국가간에 유사누적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국가간 모두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둘째, 동일한 내용의 원산지규정의 적용 결과 원산지 관정을 받은 재료에 대해서만 유사누적을 적용하고 셋째,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제7장 결론



근래에 양자 혹은 지역간 FTA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업 부문의 생산국 제화(glob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가 심화되면서 원산지규정은 정책적·학술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GATT 이후 체결된 양자간 혹은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은 약 20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00여 개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다. 유럽과 북미국가들이 관련된 자유무역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40%에 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군 내에서 지역주의를 확산해가려는 움직임은 향후 자유무역협정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치열한 가격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또한 효율적 생산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생산국제화’는 국가들 간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왜곡될 수 있으며, 국제생산의 최적조건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는데, 이는 원산지규정이 법학과 경제학의 그레이 존(grey zone)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즉, 경제학에서 원산지규정은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적 문제로 간주하였고, 반대로 법학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결정기준 및 적용방법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원산지 증명, 검증 및 처벌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원산지규정이 FTA를 이행함에 있어 FTA 활용률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FTA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특징 및 엄격성과 활용률 간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향후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FTA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률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NAFTA 방식의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여 높은 엄격성을 띠는 한·칠레 FTA가 수출입에서 모두 90%가 넘는 활용률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엄격성과 활용률 간의 관계와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FTA 활용률과 원산지 결정기준과의 관계는 Estevadeordal(2000)의 엄격성 측정방식이 아닌 한국의 산업 및 교역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효과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파게티볼 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반론적인 언급만 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스파게티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현재까지 발효한 4개 FTA 혹은 현재 비준을 앞둔 한·미 FTA까지 총 5개 FTA를 살펴보면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S 6단위 기준으로 한국의 200대 수출품목이나 중소기업의 200대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일관성 부족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이 현재에도 여러 국가/지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부족은 한국의 수출업체가 정부간에 체결된 FTA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한국형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가 서로 협력하여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FTA 원산지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 FTA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은 매우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국가로 기존에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원산지규정은 한·미 FTA 이행에 있어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분야로 한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국이 체

결한 FTA가 늘어감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국내 전문가를 육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를 육성하고 원산지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세계 여러 지역 및 국가와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장 내에서 전문가 수요에 대한 공급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혹은 북한산 가공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확대하는 것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에서 유사누적을 도입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비록 현재의 남북관계가 이전에 한국이 FTA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추진하던 시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개성공단이나 북한 지역을 활용한 가공제품에 대하여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는 것은 한반도 내의 평화정착에 이바지한다는 정치적 의미와 동시에, 낮은 임금 및 접근성에 있어 비교우위를 지닌 북한 지역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경제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문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유사누적 조항의 도입은 지금까지 한국이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원산지규정 방식이지만,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역내 통합을 앞당기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FTA 원산지규정은 국가간 FTA 효과를 반감시키고 ‘숨겨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국가별로 복잡·다양해진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WTO를 통한 세계경제통합의 방해요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행정비용은 매년 적분가치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생산의 비효율성과 교역에서 왜곡현상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학계와 업계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비난은 역설적으로 ‘FTA 원산지규정’이 FTA 체

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한국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특히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FTA에서 원산지규정이 FTA의 이행과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되짚어 볼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이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한국적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의 원산지규정에 대해 포괄적인 분야를 다루기는 하였지만, 원산지규정이 FTA의 활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나 엄격성과 활용률 간의 관계 분석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학계와 정부 그리고 관련 기업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준하. 2008. 『한국-미국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通商法律』, 통권 제80호.
- 고영제. 2008.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과 시사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논문.
- 고준성. 2003.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산업연구원.
- 관세청. 2008. 『한·미 FTA 발효 대비를 위한 미국 FTA제도 등 정보 수집 출장결과 보고』. 관세청.
- 권율·정재완·김완중·권경덕. 2005. 『한·ASEAN 원산지규정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 김석오. 2006.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전문가 간담회.
- \_\_\_\_\_. 2008. 『FTA 원산지규정 벌칙 법규 입법사례 비교』. KIEP 전문가 간담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07. 『FTA 원산지규정 활용가이드』. (9월)
- 방호경. 2004.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정책자료 0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성윤갑. 2007.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양평섭 외. 2007.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3. 『한·칠레 FTA 주요 내용』.
- 정인교. 1999. 『지역무역협정의 무역균절효과 추정방법 모색 - ‘특혜원산지규정’의 측면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 제3권, 제2호, pp. 115~131.
-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 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정인교·조정란. 2007. 『FTA 원산지기준의 파급영향 분석』. 정석물류통상연구원.
- 조미진·여지나·김민성. 2008.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월)
- 채형복. 2001. 『유럽연합(EU)의 원산지 제도』. 『무역구제』, 통권 제4호.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 최낙균 외. 2007.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8-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08.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www.kcinti.or.kr](http://www.kcinti.or.kr)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www.kidmac.com](http://www.kidmac.com)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20호]

한국·미국 FTA 협정문

한국·싱가포르 FTA 협정문

한국·칠레 FTA 협정문

한국·ASEAN FTA 협정문

한국·EFTA FTA 협정문

#### [외국문 자료]

日本關稅・外國爲替等審議會. 2001. 『地域貿易協定における關稅制度上の主要論点』. 日本: 財務省 關稅分科會企劃部會. (9月)

Anson, J., O. Cadot, A. Estevadeordal, J. de Melo, A. Suwa-Eisenmann, and B. Tumurchudur. 2005.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 Application to NAFT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3, pp. 501-17.

Cadot, O. and J. de Melo, and A. Portugal-Perez. 2006. "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Implications for AFTA of EU and US Regims." CEPR Working paper.

Cadot, O. and J. de Melo, and B. Tumurchudur. 2006.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in EU and U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An Assessment." *World Trade Review*, 199-225.

Cadot, O. and J. de Melo, A. Estevadeordal, A. Suwa-Eisenmann, and B. Tumurchudur. 2002.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Mimeo.

Carrere, C. and J. de Melo. 2004. "Are Different Rules of Origin Equally Costly? Estimates from NAFTA." CEPR Working paper.

Estevadeordal, A. 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No. 34, pp. 141-200.

\_\_\_\_\_. 2003. "Rules of Origin in FTAs: A World Map." Presented at the seminar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and Asia-Pacific* (April 22-23). Washington, D.C.
- Estevadeordal, A. and K. Suominen. 2004.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TAL-ITD Working Paper 15.
- \_\_\_\_\_. 2005. "What Are the Effects of Rules of Origin on Trade?" Mimeo.
- Estevadeordal, A., J. E. Lopez-Cordova, and K. Suominen. 2006. "How do Rules of Origin Affect Investment Flows?: Some Hypotheses and the Case of Mexico." INTAL-ITD Working Paper 15.
- Falvey, R. and G. Reed. 1998. "Economic Effects of Rules of Origi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34, pp. 209-29.
- Ishikawa, J., H. Mukunoki, and Y. Mizoguchi. 2007. "Economic Integration and Rules of Origin under International Oligopol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8(1), pp. 185-210.
- Ju, J. and K. Krishna. 2005. "Firm Behaviour and Market Access in a Free Trade Area with Rules of Origi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8, pp. 290-308.
- Krishna, K. 2005. "Understanding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 Krishna, K. and A. O. Krueger. 1995. "Implementing Free Trade Agreement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A. V. Deardoff and R. M. Stern eds.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pp. 149-187.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rueger, A. O. 1999.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J. R. Melvin, J. C. Moore and R. Riezman eds. *Trade Theory and Econometrics: Essays in Honour of John S. Chipman*, pp. 91-101. New York: Routledge.
- Kumimoto, R. and G. Sawchuk. 2005. "NAFTA Rules of Origin." Discussion paper. Policy Research Initiative. Canada.
- Rosellon, P. L. 2000.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9, pp. 397-425.
- Vermulst, E and Dacko, C. 2004. "Rules of Origin in the European Union: Practical aspect." Asian Development Bank (ADB).
- WTO. 2002.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REG/W/45. WTO: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April)
-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2003.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 Memorandum D22-1-1.
-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ustoms Act.
- Singapore Customs. Customs Act.
- Th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U.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
-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 U. 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08.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Procedural updates and new acceptable formats."
- U.S.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irective.

[온라인 자료]

- Barnes/Richardson. 2007. NAFTA Update. NAFTA Certificates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 Requirement. [http://www.barnesrichardson.com/files/tbl\\_s47Details%5CFileUpload265%5C118%5CFord%20NAFTA.pdf](http://www.barnesrichardson.com/files/tbl_s47Details%5CFileUpload265%5C118%5CFord%20NAFTA.pdf)
- InsideCounsel. 2007. Ford Loses NAFTA Record-Keeping Case. <http://www.insidecounsel.com/article.php?article=1562>
- Meeks & Sheppard. 2007. Customs Uptate Volume 14, Issue 1. <http://www.mscustoms.com/spring7newsletter2.htm>
- Rodriguez O'Donell. 2007. Customs and International Trade. [http://www.rorfgw.com/TOPIC\\_ARCHIVE/Miscellaneous/miscellaneous.html](http://www.rorfgw.com/TOPIC_ARCHIVE/Miscellaneous/miscellaneous.html)



## 부 록

부록 1. 품목분류표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록 4. 한·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록 5. 한·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월별 수출 실용률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1. 품목분류표

부표 1-1. 품목분류표

| 대분류        | HS<br>분류     | 상품 개요                                                                                                           |
|------------|--------------|-----------------------------------------------------------------------------------------------------------------|
| 1차산품       | 1~10         | 산동물, 육, 어패류, 낙농품, 동물성생산물, 산수목·꽃, 채소, 과일·견과류, 커피·향신료, 곡물                                                         |
| 가공1차산품     | 11~24        | 밀가루·곡분, 종자·인삼, 식물성엑스, 동식물성유지, 육·어류제품, 당류설탕과자, 코코아, 곡물곡분제품, 채소과실제품, 조제식료품, 음료주류, 사료, 연초                          |
| 가공광물       | 25~28        | 토석류·소금, 광·슬랙·회, 광물성연료, 무기화학품                                                                                    |
| 고무/화학      | 29~40        | 유기화학품, 의약품, 비료, 염료·페인트, 향료·화장품, 비누·왁스, 단백질·전분, 화약류·상냥, 필름·인화지,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
| 가죽제품       | 41~43        | 가죽, 가죽제품, 모피제품                                                                                                  |
| 종이/목재      | 44~49        | 목개, 코르크, 조물제품, 펄프, 지·판지, 서적·신문                                                                                  |
| 의류/직물      | 50~67        | 견, 양모·수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 워딩·부직포, 양단자, 특수직물, 도포직물, 편물, 편물제의류, 비편물제의류, 기타섬유제품, 신발, 모자, 우산·지팡이, 우모·인모제품 |
| 비금속광물      | 68~71        | 석·시멘트, 도자제품, 유리, 귀석·귀금속                                                                                         |
| 금속제품       | 72~83        | 철강, 철강제품, 동,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기타금속, 금속공구, 금속제품                                                              |
| 일반기계       | 84           | 기계류                                                                                                             |
| 전기기계       | 85           | 전기제품                                                                                                            |
| 운송기기       | 87           | 일반차량                                                                                                            |
| 기타<br>운송기기 | 86,<br>88~89 |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
| 정밀기계       | 90~91        | 광·정밀기기, 시계                                                                                                      |
| 기타제조품      | 92~97        | 악기, 무기, 가구, 완구운동용구, 잡품, 예술·골동품                                                                                  |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Issuing Number :

|                                                                                                                                                                                                                                                                                                                                                                                                                                                                                                                                                                                                                                                                                                                                                                                                                                                                                                           |           |                         |                               |                           |                      |            |  |
|-----------------------------------------------------------------------------------------------------------------------------------------------------------------------------------------------------------------------------------------------------------------------------------------------------------------------------------------------------------------------------------------------------------------------------------------------------------------------------------------------------------------------------------------------------------------------------------------------------------------------------------------------------------------------------------------------------------------------------------------------------------------------------------------------------------------------------------------------------------------------------------------------------------|-----------|-------------------------|-------------------------------|---------------------------|----------------------|------------|--|
| 1: Exporter(Name and Address)                                                                                                                                                                                                                                                                                                                                                                                                                                                                                                                                                                                                                                                                                                                                                                                                                                                                             |           |                         |                               |                           |                      | Tax ID No: |  |
| 2: Producer(Name and Address)                                                                                                                                                                                                                                                                                                                                                                                                                                                                                                                                                                                                                                                                                                                                                                                                                                                                             |           |                         | 3: Importer(Name and Address) |                           |                      | Tax ID No: |  |
| 4. Description of Good(s)                                                                                                                                                                                                                                                                                                                                                                                                                                                                                                                                                                                                                                                                                                                                                                                                                                                                                 | 5. HS No. | 6. Preference Criterion | 7. Producer                   | 8. Regional Value Content | 9. Country of Origin |            |  |
|                                                                                                                                                                                                                                                                                                                                                                                                                                                                                                                                                                                                                                                                                                                                                                                                                                                                                                           |           |                         |                               |                           |                      |            |  |
| 10. Remarks:                                                                                                                                                                                                                                                                                                                                                                                                                                                                                                                                                                                                                                                                                                                                                                                                                                                                                              |           |                         |                               |                           |                      |            |  |
| 11: Certification of Origin                                                                                                                                                                                                                                                                                                                                                                                                                                                                                                                                                                                                                                                                                                                                                                                                                                                                               |           |                         |                               |                           |                      |            |  |
| I certify that: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li><li>•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li><li>•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li></ul> |           |                         |                               |                           |                      |            |  |
| Authorized Signature                                                                                                                                                                                                                                                                                                                                                                                                                                                                                                                                                                                                                                                                                                                                                                                                                                                                                      |           |                         | Company Name                  |                           |                      |            |  |
| Name(Print or Type)                                                                                                                                                                                                                                                                                                                                                                                                                                                                                                                                                                                                                                                                                                                                                                                                                                                                                       |           |                         | Title                         |                           |                      |            |  |
| Date(MM/DD/YY)                                                                                                                                                                                                                                                                                                                                                                                                                                                                                                                                                                                                                                                                                                                                                                                                                                                                                            |           |                         | Telephone / Fax / Email       |                           |                      |            |  |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                                                                                                            |                                                                                                                                                                                                                                              |                     |
|----------------------------------------------------------------------------------------------------------------------------------------------------------------------------------------------------|------------------------------------------------------------------------------------------------------------|----------------------------------------------------------------------------------------------------------------------------------------------------------------------------------------------------------------------------------------------|---------------------|
| 1. Exporter:                                                                                                                                                                                       |                                                                                                            | <b>REPUBLIC OF SINGAPORE</b><br><br><b>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b><br><br><b>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b><br><br><b>NO.</b><br><br><b>NO UNAUTHORIZED ADDITION/ALTERATION MAY BE MADE TO THIS CERTIFICATE</b>         |                     |
| 2. Consignee:                                                                                                                                                                                      |                                                                                                            |                                                                                                                                                                                                                                              |                     |
| 3. Departure Date:                                                                                                                                                                                 |                                                                                                            |                                                                                                                                                                                                                                              |                     |
| 4. Vessel's Name/Flight No.:                                                                                                                                                                       |                                                                                                            | <b>8. DECLARATION BY THE EXPORTER</b><br><br>We hereby declare that the details and statements provided in this Certificate are true and correct.<br><br>Signature:<br><br>Name:<br><br>Designation:                      Stamp<br><br>Date: |                     |
| 5. Port of Discharge:                                                                                                                                                                              |                                                                                                            |                                                                                                                                                                                                                                              |                     |
|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                                                                                                            |                                                                                                                                                                                                                                              |                     |
| 7. Country of Origin of Goods:                                                                                                                                                                     |                                                                                                            |                                                                                                                                                                                                                                              |                     |
| 9. Marks & Numbers                                                                                                                                                                                 | 10. No. & Kind of Packages:                                                                                |                                                                                                                                                                                                                                              | 11. Quantity & Unit |
|                                                                                                                                                                                                    | Description of Goods:<br>(include brand names if necessary)<br><br>HS Subheading:<br><br>Origin Criterion: |                                                                                                                                                                                                                                              |                     |
| <b>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b><br><br>We hereby certify that evidence has been produced to satisfy us that the goods specifi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7. |                                                                                                            |                                                                                                                                                                                                                                              |                     |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                                                                                                                                                                                                                                                                                                                                                                                                     |                         |            |                                                                                                                                                                                                                                                                                                                   |                     |                      |
|-----------------------------------------------------------------------------------------------------------------------------------------------------------------------------------------------------------------------------------------------------------------------------------------------------------------------------------------------------------------------------------------------------|-------------------------|------------|-------------------------------------------------------------------------------------------------------------------------------------------------------------------------------------------------------------------------------------------------------------------------------------------------------------------|---------------------|----------------------|
| 1. Exporter                                                                                                                                                                                                                                                                                                                                                                                         |                         |            | Reference No.:<br><br><b>KOREA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br/>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br/>OF ORIGIN</b>                                                                                                                                                                                             |                     |                      |
| 2. Importer                                                                                                                                                                                                                                                                                                                                                                                         |                         |            |                                                                                                                                                                                                                                                                                                                   |                     |                      |
| 3. Departure Date:                                                                                                                                                                                                                                                                                                                                                                                  |                         |            | 4. Vessel's Name/Flight No.:                                                                                                                                                                                                                                                                                      |                     |                      |
|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                         |            |                                                                                                                                                                                                                                                                                                                   |                     |                      |
|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                         |            | 7. Country of Origin:                                                                                                                                                                                                                                                                                             |                     |                      |
| 8. Item Number                                                                                                                                                                                                                                                                                                                                                                                      | 9. Description of Goods | 10. HS No. | 11. Marks & Numbers                                                                                                                                                                                                                                                                                               | 12. Quantity & Unit | 13. Origin Criterion |
|                                                                                                                                                                                                                                                                                                                                                                                                     |                         |            |                                                                                                                                                                                                                                                                                                                   |                     |                      |
| <b>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b><br><b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br><br>_____<br>(Country)<br>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br><br>_____<br>(Importing Country) |                         |            | <b>15. Certification</b><br><br>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br><br><br><b>Place and Date:</b><br><br><b>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b> |                     |                      |
| <b>Place and Date :</b><br><b>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b>                                                                                                                                                                                                                                                                                                                                 |                         |            |                                                                                                                                                                                                                                                                                                                   |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sup>2)</sup>)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up>3)</sup> preferential origin.”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 .....(국가)의 특혜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  
(Place and date)<sup>4)</sup>  
(장소 및 신고일자)

.....  
(Signature of the exporter)<sup>5)</sup>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  
(Remarks)<sup>6)</sup>  
(특기사항)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                                                                                                                                                                                                                                                                                                        |                                                   |                                 |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                                                                                                                                   | Reference No.<br><b>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b><br>(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br><b>FORM AK</b><br>Issued in _____<br>(country)<br>See Notes Overleaf                                                                                        |                                                   |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                                                                                                                                                                                                                                                                                                        |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br><br>Departure date:<br><br>Vessel's name/Aircraft etc.:<br><br>Port of Discharge                                                                                                                                                                                                                                                                                                             |                                  |                                                                                                                                   | 4. For Official Use<br><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br><br><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br><br>.....<br>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
| 5. Item number                                                                                                                                                                                                                                                                                                                                                                                                                                   |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b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br>.....<br>(Country)<br><br>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br>.....<br>(Importing Country)<br><br>.....<br>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                                                                                                                                   | 12. Certification<br><br>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br><br><br>.....<br>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
|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                                  |                                                                                                                                   |                                                                                                                                                                                                                                                                                                        |                                                   |                                 |

###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표 3-1. 칠레산 수입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기간별

(단위: 천 달러, 건)

| 대분류        | 기간        | 한·칠레 FTA<br>신청액 | 특혜신청<br>건수 | 총 수입액*      | 관련 수입<br>건수* | 특혜 신청<br>평균 수입액 | 활용률   |
|------------|-----------|-----------------|------------|-------------|--------------|-----------------|-------|
| 1차산품       | 0404-0503 | 80,396.0        | 1,765      | 94,627.5    | 2,114        | 45.6            | 85.0% |
|            | 0504-0603 | 126,712.4       | 2,909      | 132,259.7   | 3,066        | 43.6            | 95.8% |
|            | 0604-0703 | 178,680.6       | 3,964      | 184,088.0   | 4,081        | 45.1            | 97.1% |
|            | 0704-0803 | 209,535.3       | 5,513      | 213,904.8   | 5,612        | 38.0            | 98.0% |
|            | 소계        | 595,324.3       | 14,151     | 624,880.0   | 14,873       | 42.1            | 95.3% |
| 가공1차<br>산품 | 0404-0503 | 37,284.1        | 1,096      | 41,620.3    | 1,760        | 34.0            | 89.6% |
|            | 0504-0603 | 50,039.3        | 2,060      | 52,049.8    | 2,474        | 24.3            | 96.1% |
|            | 0604-0703 | 66,233.2        | 2,457      | 68,418.5    | 2,712        | 27.0            | 96.8% |
|            | 0704-0803 | 68,085.3        | 2,397      | 69,346.0    | 2,527        | 28.4            | 98.2% |
|            | 소계        | 221,641.9       | 8,010      | 231,434.6   | 9,473        | 27.7            | 95.8% |
| 가공광물       | 0404-0503 | 70,689.5        | 224        | 80,450.9    | 296          | 315.6           | 87.9% |
|            | 0504-0603 | 166,342.0       | 229        | 176,311.9   | 309          | 726.4           | 94.3% |
|            | 0604-0703 | 65,958.8        | 186        | 86,981.2    | 302          | 354.6           | 75.8% |
|            | 0704-0803 | 37,650.3        | 226        | 43,397.3    | 284          | 166.6           | 86.8% |
|            | 소계        | 340,640.5       | 865        | 387,141.2   | 1,191        | 393.8           | 88.0% |
| 가죽제품       | 0404-0503 | 0.0             | 0          | 53.5        | 10           | 0.0             | 0.0%  |
|            | 0504-0603 | 0.0             | 0          | 61.5        | 3            | 0.0             | 0.0%  |
|            | 0704-0803 | 0.2             | 1          | 0.3         | 4            | 0.2             | 73.5% |
|            | 소계        | 0.2             | 1          | 115.3       | 17           | 0.2             | 0.2%  |
| 고무/화학      | 0404-0503 | 52,945.7        | 161        | 77,625.4    | 263          | 328.9           | 68.2% |
|            | 0504-0603 | 140,307.4       | 215        | 157,953.8   | 326          | 652.6           | 88.8% |
|            | 0604-0703 | 185,087.5       | 293        | 211,169.2   | 349          | 631.7           | 87.6% |
|            | 0704-0803 | 125,544.8       | 326        | 131,542.6   | 347          | 385.1           | 95.4% |
|            | 소계        | 503,885.4       | 995        | 578,291.0   | 1,285        | 506.4           | 87.1% |
| 금속제품       | 0404-0503 | 678,308.1       | 490        | 892,068.8   | 745          | 1,384.3         | 76.0% |
|            | 0504-0603 | 849,545.0       | 519        | 900,907.9   | 586          | 1,636.9         | 94.3% |
|            | 0604-0703 | 1,203,388.6     | 446        | 1,264,662.6 | 517          | 2,698.2         | 95.2% |
|            | 0704-0803 | 1,338,262.9     | 463        | 1,451,121.9 | 545          | 2,890.4         | 92.2% |
|            | 소계        | 4,069,504.7     | 1,918      | 4,508,761.2 | 2,393        | 2,121.7         | 90.3% |
| 기타<br>제조품  | 0404-0503 | 0.9             | 2          | 16.6        | 9            | 0.5             | 5.5%  |
|            | 0504-0603 | 0.0             | 1          | 1.7         | 5            | 0.0             | 1.9%  |
|            | 0604-0703 | 0.0             | 0          | 4.1         | 6            | 0.0             | 0.0%  |
|            | 0704-0803 | 0.0             | 0          | 10.3        | 10           | 0.0             | 0.0%  |
|            | 소계        | 1.0             | 3          | 32.7        | 30           | 0.3             | 2.9%  |

부표 3-1. 계속

| 대분류       | 기간        | 한·칠레 FTA<br>신청액 | 특혜신청<br>건수 | 총 수입액*      | 관련 수입<br>건수* | 특혜 신청<br>평균 수입액 | 활용률    |
|-----------|-----------|-----------------|------------|-------------|--------------|-----------------|--------|
| 비금속<br>광물 | 0404-0503 | 16,242.0        | 16         | 16,243.2    | 22           | 1,015.1         | 100.0% |
|           | 0504-0603 | 3,669.6         | 6          | 3,676.2     | 16           | 611.6           | 99.8%  |
|           | 0604-0703 | 4,024.5         | 5          | 4,024.7     | 9            | 804.9           | 100.0% |
|           | 0704-0803 | 7,293.5         | 7          | 7,298.6     | 10           | 1,041.9         | 99.9%  |
|           | 소계        | 31,229.6        | 34         | 31,242.7    | 57           | 918.5           | 100.0% |
| 운송기기      | 0404-0503 | 0.0             | 0          | 0.3         | 2            | 0.0             | 0.0%   |
|           | 0504-0603 | 0.0             | 0          | 0.1         | 1            | 0.0             | 0.0%   |
|           | 0604-0703 | 0.0             | 0          | 8.2         | 5            | 0.0             | 0.0%   |
|           | 0704-0803 | 0.0             | 0          | 57.1        | 7            | 0.0             | 0.0%   |
|           | 소계        | 0.0             | 0          | 65.7        | 15           | 0.0             | 0.0%   |
| 의류/직물     | 0404-0503 | 0.0             | 0          | 133.6       | 8            | 0.0             | 0.0%   |
|           | 0504-0603 | 31.6            | 1          | 142.3       | 25           | 31.6            | 22.2%  |
|           | 0604-0703 | 7.8             | 3          | 104.7       | 30           | 2.6             | 7.4%   |
|           | 0704-0803 | 26.3            | 5          | 192.8       | 43           | 5.3             | 13.7%  |
|           | 소계        | 65.7            | 9          | 573.4       | 106          | 7.3             | 11.5%  |
| 일반기계      | 0404-0503 | 0.0             | 0          | 86.9        | 13           | 0.0             | 0.0%   |
|           | 0504-0603 | 11,681.1        | 10         | 11,685.5    | 15           | 1,168.1         | 100.0% |
|           | 0604-0703 | 203.3           | 2          | 281.8       | 14           | 101.6           | 72.1%  |
|           | 0704-0803 | 0.0             | 0          | 37.3        | 7            | 0.0             | 0.0%   |
|           | 소계        | 11,884.4        | 12         | 12,091.5    | 49           | 990.4           | 98.3%  |
| 전기기계      | 0404-0503 | 0.0             | 0          | 1,029.9     | 46           | 0.0             | 0.0%   |
|           | 0504-0603 | 0.0             | 0          | 953.6       | 37           | 0.0             | 0.0%   |
|           | 0604-0703 | 0.0             | 0          | 194.7       | 21           | 0.0             | 0.0%   |
|           | 0704-0803 | 0.0             | 0          | 6.2         | 13           | 0.0             | 0.0%   |
|           | 소계        | 0.0             | 0          | 2,184.3     | 117          | 0.0             | 0.0%   |
| 정밀기계      | 0404-0503 | 0.1             | 1          | 22.1        | 8            | 0.1             | 0.3%   |
|           | 0504-0603 | 0.0             | 0          | 1,313.3     | 17           | 0.0             | 0.0%   |
|           | 0604-0703 | 0.0             | 0          | 671.1       | 19           | 0.0             | 0.0%   |
|           | 0704-0803 | 0.0             | 0          | 207.4       | 7            | 0.0             | 0.0%   |
|           | 소계        | 0.1             | 1          | 2,213.9     | 51           | 0.1             | 0.0%   |
| 종이/목재     | 0404-0503 | 13,111.7        | 181        | 17,586.9    | 274          | 72.4            | 74.6%  |
|           | 0504-0603 | 16,073.3        | 255        | 17,050.1    | 289          | 63.0            | 94.3%  |
|           | 0604-0703 | 15,310.5        | 183        | 15,552.8    | 204          | 83.7            | 98.4%  |
|           | 0704-0803 | 25,540.6        | 385        | 25,984.0    | 409          | 66.3            | 98.3%  |
|           | 소계        | 70,036.1        | 1,004      | 76,173.7    | 1,176        | 69.8            | 91.9%  |
| 총계        |           | 5,844,213.7     | 27,003     | 6,455,201.3 | 30,833       | 216.4           | 90.5%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2. 싱가포르산 수입에 대한 한·싱가포르 FTA 활용률: 산업별/기간별

(단위: 천 달러, 건)

| 대분류        | 기간        | 한·싱가포르<br>FTA 신청액 | 특혜 신청<br>건수 | 총 수입액*    | 관련 수입<br>건수* | 특혜 신청<br>평균 수입액 | 활용률   |
|------------|-----------|-------------------|-------------|-----------|--------------|-----------------|-------|
| 1차산품       | 0603-0702 | 2.5               | 1           | 1,965.2   | 435          | 2.5             | 0.1%  |
|            | 0703-0802 | 0.0               | 0           | 1,273.0   | 371          |                 | 0.0%  |
|            | 소계        | 2.5               | 1           | 3,238.2   | 806          | 2.5             | 0.1%  |
| 가공1차<br>산품 | 0603-0702 | 7,363.7           | 246         | 25,935.9  | 1,337        | 29.9            | 28.4% |
|            | 0703-0802 | 8,504.9           | 288         | 33,880.7  | 1,597        | 29.5            | 25.1% |
|            | 소계        | 15,868.6          | 534         | 59,816.6  | 2,934        | 29.7            | 26.5% |
| 가공광물       | 0603-0702 | 1,992.7           | 44          | 46,363.4  | 507          | 45.3            | 4.3%  |
|            | 0703-0802 | 7,032.0           | 90          | 16,704.3  | 326          | 78.1            | 42.1% |
|            | 소계        | 9,024.6           | 134         | 63,067.7  | 833          | 67.3            | 14.3% |
| 가죽제품       | 0603-0702 | 4,310.2           | 192         | 5,087.9   | 561          | 22.4            | 84.7% |
|            | 0703-0802 | 4,372.1           | 229         | 4,799.8   | 537          | 19.1            | 91.1% |
|            | 소계        | 8,682.3           | 421         | 9,887.7   | 1,098        | 20.6            | 87.8% |
| 고무/화학      | 0603-0702 | 103,463.2         | 1,427       | 302,067.6 | 10,571       | 72.5            | 34.3% |
|            | 0703-0802 | 109,128.8         | 1,876       | 312,196.0 | 10,264       | 58.2            | 35.0% |
|            | 소계        | 212,592.0         | 3,303       | 614,263.6 | 20,835       | 64.4            | 34.6% |
| 금속제품       | 0603-0702 | 2,892.9           | 105         | 63,931.2  | 4,742        | 27.6            | 4.5%  |
|            | 0703-0802 | 5,422.1           | 146         | 55,653.9  | 4,458        | 37.1            | 9.7%  |
|            | 소계        | 8,315.0           | 251         | 119,585.1 | 9,200        | 33.1            | 7.0%  |
| 기타<br>운송기기 | 0603-0702 | 0.0               | 0           | 1,886.9   | 19           | 0.0             | 0.0%  |
|            | 0703-0802 | 0.0               | 0           | 565.8     | 42           | 0.0             | 0.0%  |
|            | 소계        | 0.0               | 0           | 2,452.7   | 61           | 0.0             | 0.0%  |
| 기타<br>제조품  | 0603-0702 | 0.0               | 0           | 2,721.2   | 613          | 0.0             | 0.0%  |
|            | 0703-0802 | 0.0               | 0           | 3,466.3   | 517          | 0.0             | 0.0%  |
|            | 소계        | 0.0               | 0           | 6,187.5   | 1,130        | 0.0             | 0.0%  |
| 비금속<br>광물  | 0603-0702 | 54,029.4          | 131         | 81,421.7  | 1,403        | 412.4           | 66.4% |
|            | 0703-0802 | 94,907.1          | 144         | 117,413.1 | 1,043        | 659.1           | 80.8% |
|            | 소계        | 148,936.5         | 275         | 198,834.8 | 2,446        | 541.6           | 74.9% |

부표 3-2. 계속

| 대분류   | 기간        | 한·싱가포르<br>FTA 신청액 | 특혜 신청<br>건수 | 총 수입액*      | 관련 수입<br>건수* | 특혜 신청<br>평균 수입액 | 활용률   |
|-------|-----------|-------------------|-------------|-------------|--------------|-----------------|-------|
| 운송기기  | 0603-0702 | 2,472.6           | 49          | 7,247.2     | 518          | 50.5            | 34.1% |
|       | 0703-0802 | 4,565.9           | 97          | 8,549.2     | 487          | 47.1            | 53.4% |
|       | 소계        | 7,038.5           | 146         | 15,796.3    | 1,005        | 48.2            | 44.6% |
| 의류/작물 | 0603-0702 | 2,984.7           | 68          | 9,709.9     | 1,107        | 43.9            | 30.7% |
|       | 0703-0802 | 65.2              | 5           | 14,813.6    | 1,176        | 13.0            | 0.4%  |
|       | 소계        | 3,049.9           | 73          | 24,523.5    | 2,283        | 41.8            | 12.4% |
| 일반기계  | 0603-0702 | 6,075.6           | 62          | 116,593.1   | 9,362        | 98.0            | 5.2%  |
|       | 0703-0802 | 10,121.8          | 132         | 126,352.3   | 8,882        | 76.7            | 8.0%  |
|       | 소계        | 16,197.4          | 194         | 242,945.3   | 18,244       | 83.5            | 6.7%  |
| 전기기계  | 0603-0702 | 15,170.0          | 104         | 100,475.3   | 12,035       | 145.9           | 15.1% |
|       | 0703-0802 | 22,594.1          | 181         | 114,502.0   | 11,753       | 124.8           | 19.7% |
|       | 소계        | 37,764.1          | 285         | 214,977.3   | 23,788       | 132.5           | 17.6% |
| 정밀기계  | 0603-0702 | 46,633.6          | 320         | 113,730.4   | 6,779        | 145.7           | 41.0% |
|       | 0703-0802 | 25,160.5          | 257         | 122,271.6   | 6,153        | 97.9            | 20.6% |
|       | 소계        | 71,794.0          | 577         | 236,002.1   | 12,932       | 124.4           | 30.4% |
| 종이/목재 | 0603-0702 | 735.0             | 61          | 1,071.9     | 261          | 12.0            | 68.6% |
|       | 0703-0802 | 1,162.8           | 56          | 1,518.6     | 331          | 20.8            | 76.6% |
|       | 소계        | 1,897.8           | 117         | 2,590.4     | 592          | 16.2            | 73.3% |
| 총계    |           | 541,163.4         | 6,311       | 1,814,168.9 | 98,187       | 85.7            | 29.8%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3. EFTA산 수입에 대한 한·EFTA FTA 활용률: 산업별/기간별

(단위: 천 달러, 건)

| 대분류        | 기간        | 한·EFTA<br>FTA 신청액 | 특혜신청<br>건수 | 총 수입액*    | 관련 수입<br>건수* | 특혜 신청<br>평균 수입액 | 활용률   |
|------------|-----------|-------------------|------------|-----------|--------------|-----------------|-------|
| 1차산품       | 0609-0708 | 48,392.6          | 1,692      | 61,262.2  | 2,252        | 28.6            | 79.0% |
|            | 0709-0805 | 36,251.9          | 1,373      | 44,393.0  | 1,674        | 26.4            | 81.7% |
|            | 소계        | 84,644.4          | 3,065      | 105,655.2 | 3,926        | 27.6            | 80.1% |
| 가공1차<br>산품 | 0609-0708 | 16,004.6          | 400        | 29,780.2  | 1,002        | 40.0            | 53.7% |
|            | 0709-0805 | 16,496.0          | 455        | 20,472.8  | 763          | 36.3            | 80.6% |
|            | 소계        | 32,500.6          | 855        | 50,253.0  | 1,765        | 38.0            | 64.7% |
| 가공광물       | 0609-0708 | 4,603.3           | 154        | 11,312.8  | 484          | 29.9            | 40.7% |
|            | 0709-0805 | 6,782.8           | 148        | 14,208.6  | 290          | 45.8            | 47.7% |
|            | 소계        | 11,386.0          | 302        | 25,521.4  | 774          | 37.7            | 44.6% |
| 가죽제품       | 0609-0708 | 1,117.9           | 76         | 2,825.6   | 351          | 14.7            | 39.6% |
|            | 0709-0805 | 902.0             | 100        | 2,601.6   | 338          | 9.0             | 34.7% |
|            | 소계        | 2,019.9           | 176        | 5,427.2   | 689          | 11.5            | 37.2% |
| 고무/화학      | 0609-0708 | 223,521.3         | 3,219      | 382,597.3 | 10,061       | 69.4            | 58.4% |
|            | 0709-0805 | 224,002.9         | 3,156      | 324,132.4 | 7,677        | 71.0            | 69.1% |
|            | 소계        | 447,524.2         | 6,375      | 706,729.7 | 17,738       | 70.2            | 63.3% |
| 금속제품       | 0609-0708 | 63,021.7          | 1,905      | 151,630.5 | 5,178        | 33.1            | 41.6% |
|            | 0709-0805 | 61,122.4          | 1,870      | 214,163.5 | 3,859        | 32.7            | 28.5% |
|            | 소계        | 124,144.1         | 3,775      | 365,794.0 | 9,037        | 32.9            | 33.9% |
| 기타<br>운송기기 | 0609-0708 | 4.3               | 2          | 1,112.3   | 19           | 2.2             | 0.4%  |
|            | 0709-0805 | 28.2              | 3          | 382.8     | 12           | 9.4             | 7.4%  |
|            | 소계        | 32.5              | 5          | 1,495.1   | 31           | 6.5             | 2.2%  |
| 기타제조품      | 0609-0708 | 4,372.1           | 252        | 18,897.9  | 870          | 17.3            | 23.1% |
|            | 0709-0805 | 17,011.5          | 294        | 21,588.1  | 650          | 57.9            | 78.8% |
|            | 소계        | 21,383.6          | 546        | 40,486.0  | 1,520        | 39.2            | 52.8% |
| 비금속광물      | 0609-0708 | 331,086.9         | 685        | 370,993.4 | 1,373        | 483.3           | 89.2% |
|            | 0709-0805 | 317,148.3         | 709        | 392,263.0 | 1,108        | 447.3           | 80.9% |
|            | 소계        | 648,235.2         | 1,394      | 763,256.4 | 2,481        | 465.0           | 84.9% |

부표 3-3. 계속

| 대분류   | 기간        | 한·EFTA<br>FTA 신청액 | 특혜신청<br>건수 | 총 수입액*      | 관련 수입<br>건수* | 특혜 신청<br>평균 수입액 | 활용률   |
|-------|-----------|-------------------|------------|-------------|--------------|-----------------|-------|
| 운송기기  | 0609-0708 | 5,495.8           | 169        | 7,191.7     | 348          | 32.5            | 76.4% |
|       | 0709-0805 | 4,805.2           | 170        | 5,621.3     | 323          | 28.3            | 85.5% |
|       | 소계        | 10,301.0          | 339        | 12,813.0    | 671          | 30.4            | 80.4% |
| 의류/직물 | 0609-0708 | 17,450.0          | 1,373      | 24,877.8    | 3,256        | 12.7            | 70.1% |
|       | 0709-0805 | 16,219.8          | 1,383      | 21,224.2    | 1,953        | 11.7            | 76.4% |
|       | 소계        | 33,669.8          | 2,756      | 46,102.0    | 5,209        | 12.2            | 73.0% |
| 일반기계  | 0609-0708 | 276,246.8         | 5,695      | 1,109,491.5 | 15,317       | 48.5            | 24.9% |
|       | 0709-0805 | 224,605.1         | 5,285      | 1,005,546.4 | 12,350       | 42.5            | 22.3% |
|       | 소계        | 500,851.9         | 10,980     | 2,115,037.9 | 27,667       | 45.6            | 23.7% |
| 전기기계  | 0609-0708 | 33,763.3          | 2,541      | 245,870.9   | 7,580        | 13.3            | 13.7% |
|       | 0709-0805 | 49,906.0          | 2,772      | 243,465.1   | 6,738        | 18.0            | 20.5% |
|       | 소계        | 83,669.2          | 5,313      | 489,335.9   | 14,318       | 15.7            | 17.1% |
| 정밀기계  | 0609-0708 | 154,819.9         | 6,370      | 313,188.1   | 14,516       | 24.3            | 49.4% |
|       | 0709-0805 | 145,639.2         | 5,667      | 284,091.7   | 11,767       | 25.7            | 51.3% |
|       | 소계        | 300,459.2         | 12,037     | 597,279.9   | 26,283       | 25.0            | 50.3% |
| 종이/목재 | 0609-0708 | 663.4             | 119        | 1,929.7     | 1,194        | 5.6             | 34.4% |
|       | 0709-0805 | 1,401.6           | 136        | 2,307.8     | 1,004        | 10.3            | 60.7% |
|       | 소계        | 2,065.0           | 255        | 4,237.5     | 2,198        | 8.1             | 48.7% |
| 총계    |           | 2,302,886.7       | 48,173     | 5,329,424.2 | 114,307      | 47.8            | 43.2%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4. 한·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표 4-1. ASEAN 국가의 대한국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분석: 필리핀  
(단위: 달러, 건)

| 기간     | 한·ASEAN<br>FTA 신청액 | 건수    | 전체 수입액      | 전체건수  | 활용률    |
|--------|--------------------|-------|-------------|-------|--------|
| 1차산품   | 620,777            | 30    | 3,003,054   | 451   | 20.67% |
| 가공1차산품 | 48,499,382         | 477   | 52,039,976  | 754   | 93.20% |
| 가공광물   | 9,985,192          | 51    | 10,969,057  | 146   | 91.03% |
| 가죽제품   | 27,225             | 3     | 939,169     | 114   | 2.90%  |
| 고무/화학  | 9,159,396          | 313   | 18,784,313  | 1,030 | 48.76% |
| 금속제품   | 243,087,684        | 115   | 271,814,363 | 400   | 89.43% |
| 기타운송기기 | -                  | -     | 30,000      | 1     | 0.00%  |
| 가타제조품  | 724,677            | 47    | 1,018,958   | 151   | 71.12% |
| 비금속광물  | 2,082,425          | 147   | 12,536,668  | 628   | 16.61% |
| 운송기기   | -                  | -     | 4,375,108   | 121   | 0.00%  |
| 의류/직물  | 3,150,873          | 120   | 9,989,496   | 805   | 31.54% |
| 일반기계   | -                  | -     | 4,417,649   | 287   | 0.00%  |
| 전기기계   | 7,099,462          | 56    | 68,928,417  | 2,610 | 10.30% |
| 정밀기계   | 4,592,379          | 116   | 26,122,252  | 503   | 17.58% |
| 종이/목재  | 85,295             | 9     | 678,198     | 827   | 12.58% |
| 총합계    | 329,114,767        | 1,484 | 485,646,678 | 8,828 | 67.77%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4-2. ASEAN 국가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분석: 미얀마

(단위: 달러, 건)

| 기간     | 한·ASEAN<br>FTA 신청액 | 건수  | 전체 수입액     | 전체건수  | 활용률    |
|--------|--------------------|-----|------------|-------|--------|
| 1차산품   | 851,290            | 38  | 4,888,916  | 386   | 17.41% |
| 가공1차산품 | 773,454            | 24  | 1,325,006  | 55    | 58.37% |
| 가공광물   | -                  | -   | 65,856,245 | 2     | 0.00%  |
| 가죽제품   | -                  | -   | 12,294     | 3     | 0.00%  |
| 고무/화학  | 5,518              | 2   | 84,748     | 17    | 6.51%  |
| 금속제품   | -                  | -   | 1,292,511  | 11    | 0.00%  |
| 기타운송기기 | -                  | -   | 107,742    | 11    | 0.00%  |
| 기타제조품  | 192,722            | 12  | 400,196    | 56    | 48.16% |
| 비금속광물  | -                  | -   | 13,560     | 15    | 0.00%  |
| 의류/직물  | 10,983,939         | 501 | 24,301,412 | 1,247 | 45.20% |
| 일반기계   | -                  | -   | -          | -     | -      |
| 전기기계   | -                  | -   | 1,732      | 2     | 0.00%  |
| 종이/목재  | 105,549            | 9   | 681,663    | 105   | 15.48% |
| 총합계    | 12,912,472         | 586 | 98,966,025 | 1,910 | 13.05%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4-3. ASEAN 국가의 대한민국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분석: 베트남

(단위: 달러, 건)

| 기간     | 한·ASEAN<br>FTA 신청액 | 건수     | 전체 수입액        | 전체건수   | 활용률    |
|--------|--------------------|--------|---------------|--------|--------|
| 1차산품   | 213,021,549        | 7,085  | 268,272,186   | 10,104 | 79.41% |
| 가공1차산품 | 46,244,866         | 2,286  | 64,186,599    | 3,786  | 72.05% |
| 가공광물   | 15,803,472         | 205    | 248,776,840   | 467    | 6.35%  |
| 가죽제품   | 4,604,414          | 361    | 22,314,697    | 2,533  | 20.63% |
| 고무/화학  | 15,672,273         | 512    | 34,038,448    | 1,764  | 46.04% |
| 금속제품   | 19,348,159         | 339    | 30,451,338    | 1,078  | 63.54% |
| 기타운송기기 | 38,928             | 2      | 427,675       | 11     | 9.10%  |
| 기타제조품  | 6,638,879          | 529    | 29,959,275    | 5,180  | 22.16% |
| 비금속광물  | 4,294,251          | 407    | 17,095,833    | 2,756  | 25.12% |
| 운송기기   | 291,635            | 10     | 3,447,455     | 157    | 8.46%  |
| 의류/직물  | 212,946,294        | 6,143  | 383,802,278   | 18,103 | 55.48% |
| 일반기계   | 1,377,373          | 73     | 14,656,241    | 950    | 9.40%  |
| 전기기계   | 24,469,564         | 766    | 84,126,032    | 3,602  | 29.09% |
| 정밀기계   | -                  | -      | 8,113,474     | 459    | 0.00%  |
| 종이/목재  | 3,350,313          | 365    | 9,286,078     | 1,348  | 36.08% |
| 총합계    | 568,101,970        | 19,083 | 1,218,954,449 | 52,298 | 46.61% |

주: 총 수입액과 총 수입건수는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록 5. 한·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표 5-1. 대(對)칠레 수출에 대한 한·칠레 FTA 활용률: 산업별/기간별

(단위: 천 달러)

| 대분류        | 기간        | 한·칠레 FTA<br>신청액 | 특혜 평균<br>적용세율 | 총 수출액*      | 총 수출 평균<br>적용세율* | 활용률    |
|------------|-----------|-----------------|---------------|-------------|------------------|--------|
| 1차산품       | 0404-0503 | 890.2           | 0.0%          | 905.9       | 4.1%             | 98.3%  |
|            | 0504-0603 | 887.2           | 0.5%          | 907.6       | 2.6%             | 97.7%  |
|            | 0604-0703 | 1,043.8         | 0.7%          | 1,080.6     | 2.1%             | 96.6%  |
|            | 0704-0803 | 997.3           | 0.5%          | 1,068.1     | 3.1%             | 93.4%  |
|            | 소계        | 3,818.5         | 0.5%          | 3,962.2     | 2.9%             | 96.4%  |
| 가공1차<br>산품 | 0404-0503 | 176.2           | 0.0%          | 394.7       | 4.4%             | 44.6%  |
|            | 0504-0603 | 394.5           | 0.0%          | 482.5       | 2.6%             | 81.8%  |
|            | 0604-0703 | 369.7           | 0.0%          | 450.0       | 2.1%             | 82.2%  |
|            | 0704-0803 | 348.4           | 0.0%          | 520.9       | 2.9%             | 66.9%  |
|            | 소계        | 1,288.7         | 0.0%          | 1,848.0     | 3.0%             | 69.7%  |
| 가공광물       | 0404-0503 | 101,915.6       | 3.7%          | 102,063.0   | 4.4%             | 99.9%  |
|            | 0504-0603 | 198,523.9       | 3.1%          | 200,919.6   | 3.8%             | 98.8%  |
|            | 0604-0703 | 570,622.7       | 2.1%          | 584,496.4   | 3.2%             | 97.6%  |
|            | 0704-0803 | 1,704,639.3     | 1.4%          | 1,704,894.3 | 2.3%             | 100.0% |
|            | 소계        | 2,575,701.5     | 2.5%          | 2,592,373.3 | 3.4%             | 99.4%  |
| 가죽제품       | 0404-0503 | 1.7             | 4.8%          | 144.7       | 5.9%             | 1.1%   |
|            | 0504-0603 | 16.9            | 3.8%          | 82.3        | 5.3%             | 20.6%  |
|            | 0604-0703 | 34.6            | 2.9%          | 58.8        | 5.1%             | 58.9%  |
|            | 0704-0803 | 8.9             | 2.0%          | 58.8        | 4.1%             | 15.2%  |
|            | 소계        | 62.1            | 3.1%          | 344.6       | 5.2%             | 18.0%  |
| 고무/화학      | 0404-0503 | 99,479.6        | 3.9%          | 111,980.2   | 4.8%             | 88.8%  |
|            | 0504-0603 | 161,837.1       | 3.2%          | 170,821.2   | 4.1%             | 94.7%  |
|            | 0604-0703 | 165,731.7       | 2.6%          | 171,877.7   | 3.8%             | 96.4%  |
|            | 0704-0803 | 124,707.4       | 2.2%          | 127,804.7   | 3.3%             | 97.6%  |
|            | 소계        | 551,755.9       | 3.0%          | 582,483.7   | 4.1%             | 94.7%  |

부표 5-1. 계속

| 대분류        | 기간        | 한·칠레 FTA<br>신청액 | 특혜 평균<br>적용세율 | 총 수출액*      | 총 수출 평균<br>적용세율* | 활용률   |
|------------|-----------|-----------------|---------------|-------------|------------------|-------|
| 금속제품       | 0404-0503 | 33,314.8        | 5.0%          | 36,982.4    | 5.4%             | 90.1% |
|            | 0504-0603 | 35,614.3        | 4.2%          | 37,304.2    | 4.7%             | 95.5% |
|            | 0604-0703 | 49,228.8        | 3.5%          | 51,510.7    | 4.2%             | 95.6% |
|            | 0704-0803 | 40,041.2        | 3.0%          | 41,313.1    | 4.0%             | 96.9% |
|            | 소계        | 158,199.0       | 4.0%          | 167,110.4   | 4.7%             | 94.7% |
| 기타<br>운송기기 | 0404-0503 | 12.2            | 3.1%          | 1,390.7     | 5.5%             | 0.9%  |
|            | 0504-0603 | 8.8             | 4.0%          | 1,014.4     | 5.8%             | 0.9%  |
|            | 0604-0703 | 3,211.3         | 3.8%          | 3,702.5     | 5.8%             | 86.7% |
|            | 0704-0803 | 0.9             | 3.8%          | 930.7       | 5.8%             | 0.1%  |
|            | 소계        | 3,233.3         | 3.5%          | 7,038.2     | 5.7%             | 45.9% |
| 기타제조품      | 0404-0503 | 1,015.4         | 0.7%          | 1,676.4     | 3.7%             | 60.6% |
|            | 0504-0603 | 1,142.8         | 0.5%          | 1,456.0     | 3.0%             | 78.5% |
|            | 0604-0703 | 1,216.0         | 0.5%          | 1,667.0     | 3.0%             | 72.9% |
|            | 0704-0803 | 1,000.7         | 0.8%          | 1,333.7     | 3.3%             | 75.0% |
|            | 소계        | 4,375.0         | 0.6%          | 6,133.1     | 3.2%             | 71.3% |
| 비금속광물      | 0404-0503 | 1,138.9         | 5.1%          | 1,910.7     | 5.6%             | 59.6% |
|            | 0504-0603 | 1,855.9         | 4.4%          | 2,205.5     | 5.1%             | 84.1% |
|            | 0604-0703 | 1,634.3         | 3.8%          | 2,259.4     | 5.0%             | 72.3% |
|            | 0704-0803 | 1,572.4         | 3.3%          | 1,908.5     | 4.5%             | 82.4% |
|            | 소계        | 6,201.5         | 4.3%          | 8,284.0     | 5.1%             | 74.9% |
| 운송기기       | 0404-0503 | 320,236.2       | 1.4%          | 322,219.6   | 2.6%             | 99.4% |
|            | 0504-0603 | 412,911.7       | 1.4%          | 413,648.7   | 2.7%             | 99.8% |
|            | 0604-0703 | 530,056.0       | 1.1%          | 531,058.4   | 2.5%             | 99.8% |
|            | 0704-0803 | 530,517.8       | 0.8%          | 538,206.4   | 2.5%             | 98.6% |
|            | 소계        | 1,793,721.7     | 1.3%          | 1,805,133.2 | 2.6%             | 99.4% |
| 의류/직물      | 0404-0503 | 17,386.2        | 3.3%          | 23,707.3    | 4.9%             | 73.3% |
|            | 0504-0603 | 22,824.6        | 3.1%          | 28,272.1    | 4.6%             | 80.7% |
|            | 0604-0703 | 24,478.3        | 2.8%          | 27,729.6    | 4.4%             | 88.3% |
|            | 0704-0803 | 26,440.8        | 2.6%          | 28,324.4    | 4.0%             | 93.4% |
|            | 소계        | 91,129.9        | 3.0%          | 108,033.4   | 4.6%             | 84.4% |

부표 5-1. 계속

| 대분류   | 기간        | 한·칠레 FTA<br>신청액 | 특혜 평균<br>적용세율 | 총 수출액*      | 총 수출 평균<br>적용세율* | 활용률   |
|-------|-----------|-----------------|---------------|-------------|------------------|-------|
| 일반기계  | 0404-0503 | 29,150.9        | 2.7%          | 37,932.5    | 4.0%             | 76.8% |
|       | 0504-0603 | 47,558.5        | 2.5%          | 53,569.3    | 3.6%             | 88.8% |
|       | 0604-0703 | 56,421.2        | 2.0%          | 62,949.0    | 3.3%             | 89.6% |
|       | 0704-0803 | 54,437.3        | 1.6%          | 60,458.6    | 3.2%             | 90.0% |
|       | 소계        | 187,568.0       | 2.3%          | 214,909.4   | 3.6%             | 87.3% |
| 전기기계  | 0404-0503 | 135,570.3       | 2.2%          | 150,965.3   | 4.0%             | 89.8% |
|       | 0504-0603 | 147,800.9       | 2.0%          | 163,552.4   | 3.6%             | 90.4% |
|       | 0604-0703 | 201,051.7       | 1.6%          | 218,694.9   | 3.3%             | 91.9% |
|       | 0704-0803 | 106,308.0       | 1.2%          | 116,754.2   | 3.1%             | 91.1% |
|       | 소계        | 590,730.9       | 1.8%          | 649,966.7   | 3.6%             | 90.9% |
| 정밀기계  | 0404-0503 | 3,122.7         | 0.1%          | 6,025.9     | 2.8%             | 51.8% |
|       | 0504-0603 | 5,651.4         | 0.0%          | 8,014.2     | 2.5%             | 70.5% |
|       | 0604-0703 | 6,136.8         | 0.1%          | 8,387.8     | 2.6%             | 73.2% |
|       | 0704-0803 | 5,048.1         | 0.1%          | 5,829.9     | 2.5%             | 86.6% |
|       | 소계        | 19,959.0        | 0.1%          | 28,257.8    | 2.6%             | 70.6% |
| 종이/목재 | 0404-0503 | 767.6           | 2.3%          | 1,077.6     | 5.0%             | 71.2% |
|       | 0504-0603 | 1,690.8         | 1.4%          | 2,220.6     | 4.2%             | 76.1% |
|       | 0604-0703 | 2,704.0         | 0.8%          | 2,974.6     | 3.9%             | 90.9% |
|       | 0704-0803 | 1,586.4         | 0.6%          | 1,828.2     | 3.4%             | 86.8% |
|       | 소계        | 6,748.8         | 1.3%          | 8,101.0     | 4.2%             | 83.3% |
| 총계    |           | 5,994,493.6     | 2.2%          | 6,183,979.0 | 3.7%             | 96.9% |

주: 총 수출액과 총 수출 평균 적용세율은 활용률 측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1.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내역에서 다음의 58개 신청건이 중복 기재된 부분을 삭제함.

부표 6-1. 중복 기재로 인한 삭제 리스트 목록

| 년월      | 목적국   | HS6    | 금액(USD) |
|---------|-------|--------|---------|
| 2007-07 | 말레이시아 | 390690 | 16,278  |
| 2007-08 | 말레이시아 | 392350 | 107     |
| 2007-08 | 말레이시아 | 392350 | 299     |
| 2007-08 | 말레이시아 | 392350 | 2,566   |
| 2007-08 | 싱가포르  | 610910 | 1,020   |
| 2007-08 | 싱가포르  | 610910 | 1,530   |
| 2007-09 | 베트남   | 550310 | 2,040   |
| 2007-09 | 베트남   | 550320 | 8,100   |
| 2007-09 | 베트남   | 550320 | 20,220  |
| 2007-09 | 베트남   | 560314 | 508     |
| 2007-09 | 베트남   | 560314 | 1,260   |
| 2007-09 | 베트남   | 560314 | 2,071   |
| 2007-09 | 베트남   | 560314 | 2,429   |
| 2007-09 | 베트남   | 560314 | 2,429   |
| 2007-09 | 베트남   | 560314 | 3,082   |
| 2007-10 | 말레이시아 | 540761 | 4,070   |
| 2007-10 | 베트남   | 390760 | 50,905  |
| 2007-10 | 베트남   | 550320 | 40,500  |
| 2007-10 | 베트남   | 550320 | 40,500  |
| 2007-10 | 베트남   | 550320 | 40,500  |
| 2007-11 | 베트남   | 550320 | 5,400   |
| 2007-11 | 베트남   | 550320 | 28,800  |
| 2007-12 | 베트남   | 550320 | 3,400   |
| 2007-12 | 베트남   | 550320 | 6,300   |
| 2007-12 | 베트남   | 550320 | 9,000   |
| 2007-12 | 베트남   | 550320 | 9,000   |

부표 6-1. 계속

| 년월      | 목적국   | HS6    | 금액(USD) |
|---------|-------|--------|---------|
| 2007-12 | 베트남   | 550320 | 9,000   |
| 2007-12 | 베트남   | 550320 | 40,500  |
| 2007-12 | 베트남   | 550320 | 40,500  |
| 2008-01 | 베트남   | 550320 | 53,550  |
| 2008-01 | 베트남   | 560314 | 2,429   |
| 2008-01 | 베트남   | 560314 | 2,560   |
| 2008-01 | 베트남   | 560314 | 4,787   |
| 2008-01 | 인도네시아 | 847989 | 19,000  |
| 2008-02 | 말레이시아 | 480519 | 35,485  |
| 2008-02 | 말레이시아 | 480519 | 74,581  |
| 2008-02 | 베트남   | 550320 | 3,500   |
| 2008-02 | 베트남   | 550320 | 9,900   |
| 2008-03 | 베트남   | 550320 | 10,800  |
| 2008-03 | 베트남   | 550320 | 18,000  |
| 2008-03 | 베트남   | 550320 | 40,500  |
| 2008-04 | 베트남   | 390110 | 116,400 |
| 2008-04 | 베트남   | 390690 | 4,650   |
| 2008-04 | 베트남   | 390690 | 6,060   |
| 2008-04 | 베트남   | 550320 | 23,850  |
| 2008-04 | 베트남   | 560314 | 900     |
| 2008-04 | 베트남   | 560314 | 1,180   |
| 2008-04 | 베트남   | 560314 | 1,180   |
| 2008-04 | 베트남   | 560314 | 3,396   |
| 2008-04 | 베트남   | 560314 | 3,540   |
| 2008-05 | 베트남   | 550320 | 9,500   |
| 2008-05 | 베트남   | 550320 | 9,500   |
| 2008-05 | 베트남   | 550320 | 20,900  |
| 2008-05 | 베트남   | 550320 | 33,250  |
| 2008-05 | 베트남   | 560314 | 750     |
| 2008-05 | 베트남   | 560314 | 1,400   |
| 2008-05 | 베트남   | 560314 | 4,365   |
| 2008-05 | 베트남   | 560314 | 4,365   |

2. 원산지증명서 신청 내역에서 다음의 1개 신청건이 관세청 자료와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중복하여 기재됨.

| 년월      | 목적국 | HS6    | 금액(USD) |
|---------|-----|--------|---------|
| 2007-09 | 베트남 | 390690 | 15,013  |

3. 적용률이 100% 이상으로 측정되어 살펴본 결과, 원산지증명서 신청액이 수출 신고액을 초과하는 다음의 2개 신청건을 확인함. (실용률 산정에서 삭제하지는 않음)

| 년월        | 목적국   | 대분류    | HS 2단위 | HS6    | 금액(USD)    |
|-----------|-------|--------|--------|--------|------------|
| 2007년 10월 | 인도네시아 | 가공1차산품 | 11     | 110812 | 108,834    |
| 2007년 11월 | 인도네시아 | 가공1차산품 | 11     | 110812 | 102,497    |
| 2007년 12월 | 인도네시아 | 가공1차산품 | 11     | 110812 | 84,503     |
| 2008년 01월 | 인도네시아 | 가공1차산품 | 11     | 110812 | 43,425     |
| 2008년 02월 | 인도네시아 | 가공1차산품 | 11     | 110812 | 122,851    |
| 2008년 03월 | 인도네시아 | 가공1차산품 | 11     | 110812 | 89,602     |
| 2008년 04월 | 인도네시아 | 가공1차산품 | 11     | 110812 | 217,080    |
| 2008년 05월 | 인도네시아 | 가공1차산품 | 11     | 110812 | 18,417,287 |

| HS 2단위 | 2007.6~2008.5<br>원산지 증명서 신청액 | 2007.6~2008.5<br>총 수출액 | 적용률     |
|--------|------------------------------|------------------------|---------|
| 11     | 19,186,079                   | 14,661,951             | 130.86% |
| 총합계    | 1,505,430,424                | 38,785,202,668         | 3.88%   |



| 년월        | 목적국   | 대분류  | HS 2단위 | HS6    | 금액(USD)       |
|-----------|-------|------|--------|--------|---------------|
| 2007년 06월 | 말레이시아 | 금속제품 | 72     | 722830 | 70,490        |
| 2007년 07월 | 말레이시아 | 금속제품 | 72     | 722830 | 52,650        |
| 2007년 08월 | 말레이시아 | 금속제품 | 72     | 722830 | 22,016        |
| 2007년 09월 | 말레이시아 | 금속제품 | 72     | 722830 | 45,786        |
| 2007년 10월 | 말레이시아 | 금속제품 | 72     | 722830 | 70,233        |
| 2007년 11월 | 말레이시아 | 금속제품 | 72     | 722830 | 1,306,008,429 |
| 2007년 12월 | 말레이시아 | 금속제품 | 72     | 722830 | 23,457        |
| 2008년 01월 | 말레이시아 | 금속제품 | 72     | 722830 | 52,129        |
| 2008년 03월 | 말레이시아 | 금속제품 | 72     | 722830 | 194,898       |
| 2008년 04월 | 말레이시아 | 금속제품 | 72     | 722830 | 407,703       |
| 2008년 05월 | 말레이시아 | 금속제품 | 72     | 722830 | 433,853       |

| 말레이시아     |               |               |         |
|-----------|---------------|---------------|---------|
|           | 원산지 증명서 신청액   | 총 수출액         | 적용률     |
| 2007년 06월 | 1,248,727     | 445,643,729   | 0.28%   |
| 2007년 07월 | 785,251       | 464,197,883   | 0.17%   |
| 2007년 08월 | 1,651,342     | 487,214,603   | 0.34%   |
| 2007년 09월 | 8,546,049     | 471,176,993   | 1.81%   |
| 2007년 10월 | 2,159,868     | 654,057,289   | 0.33%   |
| 2007년 11월 | 1,317,205,305 | 471,307,942   | 279.48% |
| 2007년 12월 | 2,121,032     | 510,235,498   | 0.42%   |
| 2008년 01월 | 4,192,907     | 452,265,064   | 0.93%   |
| 2008년 02월 | 3,708,639     | 433,860,690   | 0.85%   |
| 2008년 03월 | 6,074,299     | 476,030,187   | 1.28%   |
| 2008년 04월 | 4,862,688     | 536,842,697   | 0.91%   |
| 2008년 05월 | 3,571,921     | 523,092,362   | 0.68%   |
| 총합계       | 1,356,128,029 | 5,925,924,937 | 22.88%  |

##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 · 월별 수출 실용률

부표 7-1. 한국의 한 · ASEAN FTA 실용률: 인도네시아

|           | 원산지 증명서 신청액 | 총 수출액         | 실용률   |
|-----------|-------------|---------------|-------|
| 2007년 06월 | 153,801     | 576,389,878   | 0.03% |
| 2007년 07월 | 1,593,692   | 507,957,355   | 0.31% |
| 2007년 08월 | 2,926,623   | 599,053,876   | 0.49% |
| 2007년 09월 | 2,461,757   | 474,610,899   | 0.52% |
| 2007년 10월 | 4,486,439   | 353,902,844   | 1.27% |
| 2007년 11월 | 5,860,804   | 498,225,843   | 1.18% |
| 2007년 12월 | 4,633,576   | 417,924,714   | 1.11% |
| 2008년 01월 | 7,888,550   | 417,288,866   | 1.89% |
| 2008년 02월 | 6,615,190   | 619,981,491   | 1.07% |
| 2008년 03월 | 8,989,422   | 479,764,794   | 1.87% |
| 2008년 04월 | 8,762,345   | 661,913,879   | 1.32% |
| 2008년 05월 | 26,445,086  | 704,184,495   | 3.76% |
| 총합계       | 80,817,287  | 6,311,198,934 | 1.28%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7-2. 한국의 한 · ASEAN FTA 실용률: 말레이시아

|            | 원산지 증명서 신청액   | 총 수출액         | 실용률     |
|------------|---------------|---------------|---------|
| 2007년 06월  | 1,248,727     | 445,643,729   | 0.28%   |
| 2007년 07월  | 785,251       | 464,197,883   | 0.17%   |
| 2007년 08월  | 1,651,342     | 487,214,603   | 0.34%   |
| 2007년 09월  | 8,546,049     | 471,176,993   | 1.81%   |
| 2007년 10월  | 2,159,868     | 654,057,289   | 0.33%   |
| 2007년 11월* | 1,317,205,305 | 471,307,942   | 279.48% |
| 2007년 12월  | 2,121,032     | 510,235,498   | 0.42%   |
| 2008년 01월  | 4,192,907     | 452,265,064   | 0.93%   |
| 2008년 02월  | 3,708,639     | 433,860,690   | 0.85%   |
| 2008년 03월  | 6,074,299     | 476,030,187   | 1.28%   |
| 2008년 04월  | 4,862,688     | 536,842,697   | 0.91%   |
| 2008년 05월  | 3,571,921     | 523,092,362   | 0.68%   |
| 총합계        | 1,356,128,029 | 5,925,924,937 | 22.88%  |

주: \* 데이터 오류 가능성 존재.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7-3.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베트남

|           | 원산지 증명서 신청액 | 총 수출액         | 실용률   |
|-----------|-------------|---------------|-------|
| 2007년 06월 | 884,883     | 441,193,546   | 0.20% |
| 2007년 07월 | 3,892,404   | 529,838,189   | 0.73% |
| 2007년 08월 | 3,683,514   | 409,134,643   | 0.90% |
| 2007년 09월 | 3,164,779   | 505,003,604   | 0.63% |
| 2007년 10월 | 8,950,321   | 567,489,139   | 1.58% |
| 2007년 11월 | 4,431,579   | 554,694,852   | 0.80% |
| 2007년 12월 | 5,625,195   | 653,570,826   | 0.86% |
| 2008년 01월 | 8,359,345   | 667,596,304   | 1.25% |
| 2008년 02월 | 3,902,287   | 593,523,948   | 0.66% |
| 2008년 03월 | 10,394,936  | 978,941,463   | 1.06% |
| 2008년 04월 | 9,611,134   | 865,354,464   | 1.11% |
| 2008년 05월 | 2,949,939   | 625,533,854   | 0.47% |
| 총합계       | 65,850,315  | 7,391,874,832 | 0.89%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7-4.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필리핀

|           | 원산지 증명서 신청액 | 총 수출액         | 실용률   |
|-----------|-------------|---------------|-------|
| 2007년 06월 | 19,967      | 332,048,572   | 0.01% |
| 2007년 07월 | 26,169      | 376,774,369   | 0.01% |
| 2007년 08월 | 61,267      | 398,267,714   | 0.02% |
| 2007년 09월 | 0           | 332,074,754   | 0.00% |
| 2007년 10월 | 0           | 426,082,686   | 0.00% |
| 2007년 11월 | 91,308      | 522,224,852   | 0.02% |
| 2007년 12월 | 139,465     | 377,951,807   | 0.04% |
| 2008년 01월 | 110,558     | 432,920,288   | 0.03% |
| 2008년 02월 | 0           | 352,446,818   | 0.00% |
| 2008년 03월 | 264,357     | 393,083,225   | 0.07% |
| 2008년 04월 | 481,214     | 482,870,889   | 0.10% |
| 2008년 05월 | 50,135      | 441,275,184   | 0.01% |
| 총합계       | 1,244,439   | 4,868,021,158 | 0.03% |

주.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한·ASEAN FTA는 2008년 1월1일에 발효되었으나, 이전에 이미 필리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의 예가 있었음.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7-5. 한국의 한·ASEAN FTA 실용률: 미얀마

|           | 원산지 증명서 신청액 | 총 수출액       | 실용률   |
|-----------|-------------|-------------|-------|
| 2007년 06월 | 0           | 13,441,652  | 0.00% |
| 2007년 07월 | 0           | 11,370,673  | 0.00% |
| 2007년 08월 | 0           | 8,262,329   | 0.00% |
| 2007년 09월 | 0           | 12,712,914  | 0.00% |
| 2007년 10월 | 0           | 8,905,497   | 0.00% |
| 2007년 11월 | 1,515       | 146,370,965 | 0.00% |
| 2007년 12월 | 0           | 10,987,910  | 0.00% |
| 2008년 01월 | 0           | 13,009,163  | 0.00% |
| 2008년 02월 | 0           | 9,621,047   | 0.00% |
| 2008년 03월 | 0           | 13,883,784  | 0.00% |
| 2008년 04월 | 50,000      | 11,481,652  | 0.44% |
| 2008년 05월 | 0           | 8,402,466   | 0.00% |
| 총합계       | 51,515      | 268,450,052 | 0.02%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표 8-1.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1  | 271019 | CH                 | CH           | CH             | CH or RVC | CH+ECTC or TECH |
| 2  | 851712 | CH+RVC             | CH+RVC       | CH or RVC      | CS or RVC | CS              |
| 3  | 870323 | RVC                | CH+RVC       | CH or RVC      | RVC       | RVC             |
| 4  | 90138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 5  | 854232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6  | 890120 | CC or CH+RVC       | CC           | CH or RVC      | CH or RVC | CC or RVC       |
| 7  | 890190 | CC or CH+RVC       | CC           | CH or RVC      | CH or RVC | CC or RVC       |
| 8  | 854231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9  | 870899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RVC       | CS or RVC       |
| 10 | 847330 | CH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1 | 851770 | CH                 | CH           | CH or RVC      | CS or RVC | CH or RVC       |
| 12 | 870332 | RVC                | CH+RVC       | CH or RVC      | RVC       | RVC             |
| 13 | 852990 | CH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4 | 852851 | CH+ECTC or CH*+RVC | CS           | RVC            | CH or RVC | CS              |
| 15 | 870322 | RVC                | CH+RVC       | CH or RVC      | RVC       | RVC             |
| 16 | 870324 | RVC                | CH+RVC       | CH or RVC      | RVC       | RVC             |
| 17 | 271011 | CH                 | CH           | CH             | CH or RVC | CH+ECTC or TECH |
| 18 | 9013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9 | 842952 | CH+RVC             | CH           | CH+ECTC or RVC | CH or RVC | CS              |
| 20 | 847170 | CH+ECTC or CH*+RVC | CS           | RVC            | CH or RVC | CS              |
| 21 | 854239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22 | 291736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23 | 39033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24 | 85340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 25 | 890520 | CC or CH+RVC       | CC           | CH or RVC      | CH or RVC | CC or RVC       |
| 26 | 847989 | CH or CS+RVC       | CS+RVC       | CH or RVC      | CS or RVC | CS              |
| 27 | 401110 | CH                 | CH           | CH             | CH+RVC    | CH              |
| 28 | 841810 | CS+ECT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ECTC         |

부표 8-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29 | 29025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30 | 39012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31 | 870421 | RVC                | CH+RVC    | CH or RVC      | RVC       | RVC                       |
| 32 | 843149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 33 | 3902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34 | 290243 | CH or RVC          | CH+ECTC   | CH or RVC      | CH or RVC | CH                        |
| 35 | 851762 | CH+ECTC or CH*+RVC | CS        | RVC            | CH or RVC | CS                        |
| 36 | 721049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37 | 600410 | CC+ECT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C+ECTC                   |
| 38 | 29022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39 | 850780 |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40 | 720917 | CH                 | CH        | CH             | CH        | CH                        |
| 41 | 39076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42 | 481019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43 | 721633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44 | 852872 | CH+RVC             | CH+RVC    | CH or RVC      | CS or RVC | CH+ECTC or CS* or CS*+RVC |
| 45 | 730890 | CH                 | CH        | CH             | CH or RVC | CH+ECTC                   |
| 46 | 890590 | CC or CH+RVC       | CC        | CH or RVC      | CH or RVC | CC or RVC                 |
| 47 | 870333 | RVC                | CH+RVC    | CH or RVC      | RVC       | RVC                       |
| 48 | 401120 | CH                 | CH        | CH             | CH+RVC    | CH                        |
| 49 | 740311 | CC                 | CH        | CH             | CH or RVC | CH                        |
| 50 | 39023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51 | 721913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 52 | 847990 | CH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53 | 721070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 54 | 852351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S                        |
| 55 | 290244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56 | 840810 | CH+RVC             | CH+RVC    | RVC            | CH or RVC | CH                        |
| 57 | 2929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58 | 90012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59 | 870321 | RVC                | CH+RVC    | CH or RVC      | RVC       | RVC                       |

부표 8-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60 | 3901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61 | 550320 | CC+ECTC      | CH                   | CC             | CC or RVC         | CC+ECTC                      |
| 62 | 740811 | CH+ECTC      | CH+ECTC or<br>CH+RVC | CH             | CH+ECTC or<br>RVC | CH+ECTC                      |
| 63 | 290121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S                           |
| 64 | 852580 | CH+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65 | 760612 | CH+ECT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ECTC                      |
| 66 | 540761 | CC           | CH                   | CH or RVC+IECH | CH or RVC         | CC+ECTC                      |
| 67 | 850710 | CS+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 68 | 841989 | CH or CS+RVC | CH or<br>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69 | 844399 | CH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70 | 732690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ECTC                      |
| 71 | 790111 | CS           | CH                   | CH             | CH or RVC         | CC                           |
| 72 | 841950 | CH or CS+RVC | CH or<br>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73 | 870210 | RVC          | CH+RVC               | CH or RVC      | RVC               | RVC                          |
| 74 | 382490 | CS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75 | 84818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76 | 600622 | CC+ECTC      | CH                   | CH or RVC+IECH | CH or RVC         | CC+ECTC                      |
| 77 | 720851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78 | 852871 | CH+RVC       | CH+RVC               | CH or RVC      | CS or RVC         | CH+ECTC or<br>CS* or CS*+RVC |
| 79 | 400219 | CH           | CH+ECTC              | CH             | CH or RVC         | CH                           |
| 80 | 854430 | CH           | CH+RVC               |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81 | 271320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82 | 392190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
| 83 | 29023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84 | 721030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85 | 848620 | CH+ECTC+RVC  |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H+RVC                       |
| 86 | 730900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ECTC                      |
| 87 | 845811 | CH+ECTC+RVC  |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H+RVC                       |

부표 8-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88  | 85044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ECTC       |
| 89  | 590320 | CC           | CH                   | CH or RVC+TECH    | CC or RVC | CC+ECTC       |
| 90  | 84502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91  | 290122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S            |
| 92  | 8415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93  | 720839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94  | 854140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95  | 848071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96  | 721934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 97  | 854460 | CH           | CH+RVC               | RVC               | CH or RVC | CS+RVC        |
| 98  | 852290 | CH           | CH                   | CH or RVC         | CS or RVC | CS            |
| 99  | 8538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00 | 841510 | 기타           | CH or CS+RVC         | CH or RVC         | RVC       | CS            |
| 101 | 731210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02 | 840999 | CH           | CH+RVC               | RVC               | CH or RVC | RVC           |
| 103 | 880330 | CH           | CS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04 | 39074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05 | 381800 | CH           | CH                   | RVC               | CH or RVC | CH            |
| 106 | 39039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07 | 842720 | CH+RVC       | CH+ECTC or<br>CH+RVC | CH+ECTC or<br>RVC | CH or RVC | CS            |
| 108 | 820730 | CC           | CC                   | CH+RVC            | CH or RVC | CC            |
| 109 | 39269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10 | 850423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ECTC       |
| 111 | 854449 | CH           | CH+RVC               |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112 | 8504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13 | 710691 | CC           | CC                   | CS                | CH or RVC | CC            |
| 114 | 854011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ECTC       |
| 115 | 3904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16 | 841430 | CS+RVC       | CH or CS+RVC         |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117 | 390799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18 | 9401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부표 8-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119 | 844331 | CH+ECTC or CH*+RVC | CS                | RVC            | CH or RVC | CS        |
| 120 | 710812 | CC                 | CC                | CS             | CH or RVC | CC        |
| 121 | 392062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22 | 852190 | CH+ECTC or CH*+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23 | 39072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24 | 85312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25 | 720916 | CH                 | CH                | CH             | CH        | CH        |
| 126 | 240220 | CH                 | CH+ECTC           | CH+ECTC        | CH+RM     | CC or CH* |
| 127 | 853224 | CH or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28 | 730791 | CH                 | CH                | CH             | CH or RVC | CC or CS* |
| 129 | 600632 | CC+ECT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C+ECTC   |
| 130 | 391990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31 | 850819 | CH or CS+RVC       | CS+RVC            | CH or RVC      | CS or RVC | CS        |
| 132 | 720836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33 | 721061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34 | 870830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35 | 853669 | CH                 | CH+ECTC or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S        |
| 136 | 720918 | CH                 | CH                | CH             | CH        | CH        |
| 137 | 722511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38 | 9001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39 | 291732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40 | 842951 | CH+RVC             | CH                | CH+ECTC or RVC | CH or RVC | CS        |
| 141 | 870829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42 | 845011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43 | 400220 | CH                 | CH+ECTC           | CH             | CH or RVC | CH        |
| 144 | 410792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 145 | 39073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46 | 760611 | CH+ECT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47 | 390319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48 | 854129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149 | 720421 | CH                 | CH                | CH             | CH or RVC | CH        |

부표 8-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150 | 721933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 151 | 853939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52 | 721012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53 | 845710 | CH+ECTC+RVC  |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H+RVC       |
| 154 | 842833 | CH+RVC       | CH                   | CH+ECTC or RVC | CH or RVC | CS           |
| 155 | 8518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56 | 85437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ECTC      |
| 157 | 854442 | CH           | CH+RVC               |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158 | 854121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159 | 740921 | CH           | CH+ECTC or<br>CH+RVC | CH             | CH or RVC | CH           |
| 160 | 740721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61 | 720827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62 | 8531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63 | 722519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64 | 480100 | CH           | CH                   | CH             | CH or RVC | CC           |
| 165 | 85030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66 | 90318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167 | 590220 | CH           | CH                   | CH             | CC or RVC | CH+ECTC      |
| 168 | 722100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 169 | 2926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70 | 640699 | CC           | CH                   | CH             | CH or RVC | CS           |
| 171 | 790120 | CS           | CH                   | CH             | CH or RVC | CC           |
| 172 | 854411 | CH           | CH+RVC               | RVC            | CH or RVC | CS+RVC       |
| 173 | 845129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74 | 740400 | CC           | CH                   | CH             | CH or RVC | CH           |
| 175 | 848630 | CH+ECTC+RVC  |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H+RVC       |
| 176 | 390311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77 | 730619 | C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C or CS*    |
| 178 | 39013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79 | 854190 | CH           | CS                   | CH or RVC      | CS or RVC | 기타           |
| 180 | 730793 | CH           | CH                   | CH             | CH or RVC | CC or CS*    |

부표 8-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181 | 870870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82 | 760711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83 | 901812 | CH                 | CH or CS+RVC      | CH+RVC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84 | 853710 | CH+ECTC or CH*+RVC | CH+ECTC or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H            |
| 185 | 720838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86 | 8481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87 | 3923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88 | 710813 | CC                 | CC                | CS             | CH or RVC | CC            |
| 189 | 853650 | CH                 | CH+ECTC or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S            |
| 190 | 700600 | CH+ECTC            | CH+ECTC           | CH+ECTC        | CH or RVC | CH+ECTC       |
| 191 | 851769 | CH+ECTC or CH*+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92 | 722300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 193 | 540244 | CC                 | CC                | CC             | CC or RVC | CC+ECTC       |
| 194 | 290531 | CH or RVC          | CH+ECTC or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95 | 848079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96 | 841480 | CS+RVC             | CH or CS+RVC      |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197 | 741110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98 | 840290 | CH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 199 | 730531 | C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C or CS*     |
| 200 | 854290 | CH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표 9-1.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1  | 854231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2  | 870899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RVC       | CS or RVC                    |
| 3  | 890120 | CC or CH+RVC          | CC           | CH or RVC      | CH or RVC | CC or RVC                    |
| 4  | 851770 | CH                    | CH           | CH or RVC      | CS or RVC | CH or RVC                    |
| 5  | 600410 | CC+ECT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C+ECTC                      |
| 6  | 85340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 7  | 847989 | CH or CS+RVC          | CS+RVC       | CH or RVC      | CS or RVC | CS                           |
| 8  | 271019 | CH                    | CH           | CH             | CH or RVC | CH+ECTC or TECH              |
| 9  | 852990 | CH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0 | 550320 | CC+ECTC               | CH           | CC             | CC or RVC | CC+ECTC                      |
| 11 | 481019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2 | 851762 | CH+ECTC or<br>CH*+RVC | CS           | RVC            | CH or RVC | CS                           |
| 13 | 540761 | C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C+ECTC                      |
| 14 | 843149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 15 | 854239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16 | 851712 | CH+RVC                | CH+RVC       | CH or RVC      | CS or RVC | CS                           |
| 17 | 847990 | CH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8 | 890190 | CC or CH+RVC          | CC           | CH or RVC      | CH or RVC | CC or RVC                    |
| 19 | 600622 | CC+ECT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C+ECTC                      |
| 20 | 2929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21 | 847330 | CH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22 | 854430 | CH                    | CH+RVC       |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23 | 84195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24 | 84818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25 | 590320 | CC                    | CH           | CH or RVC+TECH | CC or RVC | CC+ECTC                      |
| 26 | 852871 | CH+RVC                | CH+RVC       | CH or RVC      | CS or RVC | CH+ECTC or CS* or<br>CS*+RVC |
| 27 | 732690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ECTC                      |

부표 9-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28 | 39023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29 | 848620 | CH+ECTC+RVC           |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H+RVC                       |
| 30 | 382490 | CS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31 | 39012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32 | 39033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33 | 8538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34 | 850710 | CS+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 35 | 731210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36 | 85044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ECTC                      |
| 37 | 852580 | CH+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38 | 848071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39 | 3902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40 | 852851 | CH+ECTC or<br>CH*+RVC | CS                   | RVC            | CH or RVC | CS                           |
| 41 | 392190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
| 42 | 854140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43 | 39269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44 | 841989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45 | 730890 | CH                    | CH                   | CH             | CH or RVC | CH+ECTC                      |
| 46 | 840999 | CH                    | CH+RVC               | RVC            | CH or RVC | RVC                          |
| 47 | 401110 | CH                    | CH                   | CH             | CH+RVC    | CH                           |
| 48 | 730791 | CH                    | CH                   | CH             | CH or RVC | CC or CS*                    |
| 49 | 600632 | CC+ECT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C+ECTC                      |
| 50 | 721070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 51 | 9001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52 | 8504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53 | 391990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
| 54 | 852872 | CH+RVC                | CH+RVC               | CH or RVC      | CS or RVC | CH+ECTC or CS* or<br>CS*+RVC |
| 55 | 853669 | CH                    | CH+ECTC or<br>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S                           |
| 56 | 854129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57 | 720421 | CH                    | CH                   | CH             | CH or RVC | CH                           |

부표 9-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58 | 410792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 59 | 852190 | CH+ECTC or<br>CH*+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60 | 820730 | CC                    | CC           | CH+RVC        | CH or RVC | CC           |
| 61 | 870829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62 | 9401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63 | 8518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64 | 854121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65 | 480100 | CH                    | CH           | CH            | CH or RVC | CC           |
| 66 | 90138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 67 | 39076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68 | 640699 | CC                    | CH           | CH            | CH or RVC | CS           |
| 69 | 854449 | CH                    | CH+RVC       |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70 | 854442 | CH                    | CH+RVC       |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71 | 740400 | CC                    | CH           | CH            | CH or RVC | CH           |
| 72 | 39072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73 | 39073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74 | 39039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75 | 740721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76 | 901812 | CH                    | CH or CS+RVC | CH+RVC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77 | 853939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78 | 271320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79 | 870210 | RVC                   | CH+RVC       | CH or RVC     | RVC       | RVC          |
| 80 | 700600 | CH+ECTC               | CH+ECTC      | CH+ECTC       | CH or RVC | CH+ECTC      |
| 81 | 730793 | CH                    | CH           | CH            | CH or RVC | CC or CS*    |
| 82 | 8481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83 | 854411 | CH                    | CH+RVC       | RVC           | CH or RVC | CS+RVC       |
| 84 | 390799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85 | 850780 |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86 | 851769 | CH+ECTC or<br>CH*+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87 | 722300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부표 9-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88  | 710813 | CC           | CC                | CS                  | CH or RVC         | CC           |
| 89  | 90318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90  | 39074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91  | 854190 | CH           | CS                | CH or RVC           | CS or RVC         | 기타           |
| 92  | 381800 | CH           | CH                | RVC                 | CH or RVC         | CH           |
| 93  | 291732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94  | 3901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95  | 8486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96  | 85030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97  | 630140 | CC+ECTC+TECH | CC+ECTC+TECH      | CC+TECH or RVC+TECH | CC+RM+TECH or RVC | CC+ECTC+TECH |
| 98  | 853650 | CH           | CH+ECTC or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S           |
| 99  | 540769 | C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C+ECTC      |
| 100 | 750210 | CC           | CH                | CH                  | CH or RVC         | CH           |
| 101 | 291712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02 | 85437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ECTC      |
| 103 | 2926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04 | 848079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05 | 760711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06 | 870421 | RVC          | CH+RVC            | CH or RVC           | RVC               | RVC          |
| 107 | 841391 | CH           | CH                | RVC                 | CH or RVC         | CH           |
| 108 | 392062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09 | 721633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10 | 600532 | CC+ECT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C+ECTC      |
| 111 | 711319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ECTC      |
| 112 | 731100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ECTC      |
| 113 | 870830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14 | 852290 | CH           | CH                | CH or RVC           | CS or RVC         | CS           |
| 115 | 29025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16 | 730531 | C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C or CS*    |

부표 9-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117 | 600192 | CC+ECT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C+ECTC       |
| 118 | 841480 | CS+RVC             | CH or CS+RVC      |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119 | 300490 | CH                 | CH+ECT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H+ECTC       |
| 120 | 540752 | C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C+ECTC       |
| 121 | 851632 | CH or CS+RVC       | CH or CS+ECTC+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22 | 330499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23 | 210690 | CH                 | CH+RVC            | CC+RVC         | RVC+RM         | 기타            |
| 124 | 760120 | CC                 | CH                | CH             | CH or RVC      | CH            |
| 125 | 854232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126 | 842833 | CH+RVC             | CH                | CH+ECTC or RVC | CH or RVC      | CS            |
| 127 | 870322 | RVC                | CH+RVC            | CH or RVC      | RVC            | RVC           |
| 128 | 853710 | CH+ECTC or CH*+RVC | CH+ECTC or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H            |
| 129 | 291736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30 | 854110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131 | 820900 | CC                 | CC                | CH             | CH or RVC      | CC or CS*+RVC |
| 132 | 841430 | CS+RVC             | CH or CS+RVC      |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133 | 3923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34 | 901890 | CH                 | CH or CS+RVC      | CH+RVC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35 | 853224 | CH or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36 | 392020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37 | 9013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38 | 580710 | CC+ECTC            | CH                | CC or RVC+TECH | CC or RVC      | CC+ECTC       |
| 139 | 761699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40 | 8531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41 | 291735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42 | 730900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ECTC       |
| 143 | 401310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44 | 732599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S+ECTC       |
| 145 | 820790 | CC                 | CC                | CH+RVC         | CH or RVC      | CH            |
| 146 | 611595 | CC+ECTC+TECH       | CC+ECTC+TECH      | CC+ECTC+TECH   | CC+TECH or RVC | CC+ECTC+TECH  |



부표 9-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147 | 320417 | CS                    | CH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48 | 730840 | CH+RVC                | CH           | CH             | CH or RVC | CH+ECTC               |
| 149 | 848630 | CH+ECTC+RVC           |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H+RVC                |
| 150 | 854890 | CS+RVC                | CS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151 | 870893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52 | 721934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 153 | 842199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 154 | 630900 | CC+ECTC+TECH          | CC+ECTC      | CC+TECH        | WO        | CH                    |
| 155 | 847290 | CH+ECTC or<br>CH*+RVC | CH+RVC       | RVC            | CH or RVC | CS                    |
| 156 | 730799 | CH                    | CH           | CH             | CH or RVC | CC or CS*             |
| 157 | 851190 | CH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58 | 711719 | CH+ECT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59 | 841340 | CH or CS+RVC          | CH or CS+RVC | RVC            | CH or RVC | CS                    |
| 160 | 85312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61 | 848340 | CH or CS+RVC          |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ECTC or<br>CS*+RVC |
| 162 | 854720 | CH                    | CH           | RVC            | CH or RVC | CS                    |
| 163 | 8419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or RVC             |
| 164 | 870190 |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RVC                   |
| 165 | 271011 | CH                    | CH           | CH             | CH or RVC | CH+ECTC or TECH       |
| 166 | 721061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67 | 030379 | CC                    | CC           | RM             | WO        | CC                    |
| 168 | 721730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69 | 720292 | CH                    | CH           | CH             | CH or RVC | CC                    |
| 170 | 844399 | CH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71 | 540247 | CC                    | CC           | CC             | CC or RVC | CC+ECTC               |
| 172 | 721049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73 | 841490 | CS+RVC                | CH           | RVC            | CH or RVC | CH or RVC             |
| 174 | 390319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75 | 847710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or<br>CS*+RVC  |

부표 9-1. 계속

| 순위  | 코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한-미                |
|-----|--------|--------------------|-------------------|----------------|----------------|--------------------|
| 176 | 741011 | CH+ECTC            | CH+ECTC           | CH             | CH or RVC      | CH+ECTC            |
| 177 | 870870 | CH or RVC          | CH+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or RVC          |
| 178 | 848210 | CH or CS+RVC       | CH                | CH or RVC      | CS or RVC      | CS+ECTC or CS*+RVC |
| 179 | 741110 | CH                 | CH                | CH             | CH or RVC      | CH                 |
| 180 | 390311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81 | 280461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82 | 611610 | CC+ECTC+TECH       | CC+ECTC+TECH      | CC+ECTC+TECH   | CC+TECH or RVC | CC+ECTC+TECH       |
| 183 | 29419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S                 |
| 184 | 841410 | CS+RVC             | CH or CS+RVC      | RVC            | CH or RVC      | CH or CS*+RVC      |
| 185 | 39071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RVC             |
| 186 | 730511 | C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C or CS*          |
| 187 | 520852 | CH+ECT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H+ECTC            |
| 188 | 8415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기타                 |
| 189 | 840991 | CH                 | CH+RVC            | RVC            | CH or RVC      | RVC                |
| 190 | 722020 | CH+ECTC            | CH                | CH             | CH or RVC      | CH                 |
| 191 | 842720 | CH+RVC             | CH+ECTC or CH+RVC | CH+ECTC or RVC | CH or RVC      | CS                 |
| 192 | 903090 | CH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93 | 030749 | CC                 | CC                | RM             | WO             | CC                 |
| 194 | 600642 | CC+ECTC            | CH                | CH or RVC+TECH | CH or RVC      | CC+ECTC            |
| 195 | 853222 | CH or CS+RVC       | CS                | CH or RVC      | CS or RVC      | CS                 |
| 196 | 560394 | CC                 | CH                | CH             | CC or RVC      | CC+ECTC            |
| 197 | 731815 | CH                 | CH                | CH             | CH or RVC      | CH+ECTC            |
| 198 | 290220 | CH or RVC          | CH                | CH or RVC      | CH or RVC      | CH                 |
| 199 | 847150 | CH+ECTC or CH*+RVC | CS                | RVC            | CH or RVC      | CS                 |
| 200 | 841221 | CH or CS+RVC       | CH or CS+RVC      | CH or RVC      | CH or RVC      | CS                 |





## Executive Summary

### Korea's FTA Rules of Origin: Review and Future Strategy

HanSung Kim, Mee Jin Cho, Jae-Wan Cheong, and Min-sung Kim

The determination of origin would be simple and straight forward if goods had been produced or manufactured within one country. However, in the world that is frequently referred to as 'global factory,' most of the final products involve more than one country in their production process. In such cases, there have to be specific rules that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and it becomes an important issue when two or more countries negotiate regional trade agreements.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of importing goods is necessary for importing countries to apply the custom tariff, quantitative restrictions, or commercial polici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and safeguard measures. Rules of origin ar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used to identify the country of origin of internationally traded goods.

For this purpose of application, rules of origin are divided into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nd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We focus on Korea's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which has been adopted by Korea's Free Trade Agreement, called Korea's FTA rules of origin. FTA rules of origin are to determine whether goods qualify for enjoy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hich is written in the FTA agreement and to restrict benefits from tariff reduction/elimination only on

participating countries. Contrary to its basic purpose, FTA rules of origin could distort efficient production, work as non-tariff barriers, and/or deliver what is so-called the ‘spaghetti bowl’ effect.

We look at the rules of origin in five FTAs, which Korea has concluded or entered into force. One of the most prominent features in Korea’s FTA rules of origin is its diversity across FTAs; in Korea-Chile FTA and Korea-US FTA (KORUS FTA), the rules of origin show its similarity to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rules of origin, while in Korea and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Korea-EFTA FTA) follows PANEURO rules of origin. The FTA rules of origin in Korea-Singapore FTA and Korea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Korea-ASEAN) FTA could be referred to as a mixture of NAFTA and PANEURO style. Such diversity creates inconsistency in Korea’s FTA rules of origin; in many products, manufacturers have to follow different criteria to meet originating status, depending on which FTA partner countries export the products. Such diversity further deepens when we look at Korea’s top 200 exporting products (HS 6-digit) and is even further serious for Korean SMEs’ top 200 exporting products (HS 6-digit).

Another property we found in Korea’s FTA rules of origin is that it does not show any correlation between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and FTA utilization rates. It is expected that the more restrictive rules of origin, the lower FTA utilization rates; however, Korea’s FTA utilization rates are the highest for Korea-Chile FTA, which turned out to have the most restrictive (according to Estevadeordal’s way of measuring the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rules of origin. This implies that there would be other factors that affect Korea’s FTA utilization rates and we leave this part for future study.

Concerning Korea’s FTA rules of origin, we propose two short-term tasks and two long-term strategies. In the short-run, Korea needs to build up its own position

for rules of origin. It should be urgent to have concrete position on how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for goods traded, especially for major exporting products. It would help Korea to sustain its consistency on its rules of origin in future FTAs.

Providing rules of origin experts into the market is another urgent task. The KORUS FTA is going to be effectuated and administrating rules of origin could be a hot issue in its implementation process. Lack in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n rules of origin could result in Korea having difficulty maximizing its economic benefits from the KORUS FTA. Providing education service and/or information about rules of origin seems to be Korean government's responsibility, at least in the short-run.

In the mid or long-run, FTA rules of origin should target to expand the coverage of outward processing, which allows for Korea to use special industrial zone in North Korea such as Gaesung Industrial Complex. It could bring both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s to Korea; expansion of outward processing in North Korea not only makes it possible for Korean compani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to utilize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North Korea's abundant labor forces, but it could help create a 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Adopting diagonal cumulation in the future FTAs with East Asian countries could be another target which Korea should seek for. Diagonal cumulation in FTA with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New Zealand, which entrenches ASEAN, would lessen the trade distorting effect of rules of origin and work as a booster for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ttention on rules of origin has been rising because of its increased importance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however, it is only recently that Korea has taken it seriously. As Korea has had multi and simultaneous FTA negotiat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Korea could not have a chance to review its economic impact,

reflecting such experience to the next FTA negotiation, which led to inconsistency in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Korea has ongoing FTA negotiations with several countries and economic blocs, as well as under consideration with many additional countries. Serious in-depth study and evaluation about Korea's existing FTAs rules of origin should be carried out to prepare for future FTAs.

## ■ 2008년

- 08-01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 김준동 외
- 08-02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  
김상겸 · 유재원 · 한홍렬 · 김수이 · 이상현
- 08-03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  
이장규 · 이준규 · 이승신 · 여지나 · 배승빈
- 08-04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최낙균 · 정형곤 · 김한성
- 08-05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  
서진교 · Sherzod Shadikhodjaev · 이경희 · 박지현 · 윤창인
- 08-06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 · 송백훈 · 강준구
- 08-07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  
정철 · 김정렬 · 김혁황 · 성한경
- 08-08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임혜준 · 김정곤 · 박혜리 · 이홍식
- 08-09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 08-10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  
현혜정 · 김혁황 · 박철형 · 성한경
- 08-11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  
조종화 · 강삼모 · 이인규
- 08-12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  
오용협 · 백승관 · 김연실



- 08-13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  
지만수 · 박월라 · 이승신 · 박현정 · 최의현
- 08-14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8-15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  
이재영 · 이순철 · 황지영 · 이종문
- 08-16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채
- 08-17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원호 · 권 율 · 김진오 · 박수완
- 08-18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  
박복영 · 이계우 · 이순철 · 정지선 · 박수경
- 08-19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  
박영호 · 박복영 · 권 율 · 허윤선
- 08-20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홍익표 · 감지연

## ■ 2007년

-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 · 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 · 김혁황 · 김민성 · 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 · 박제훈

-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 · 이장규 · 박현정 · 여지나 · 배승빈 · 조현준
-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규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 · 오용협 · 원동욱 · 나승권
-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 · 이형근
-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 · 최윤정 · 정재완 · Prabir De
-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 · 채 욱 · 한홍렬 · 신현준
-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 김한성(金翰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現, E-mail: hskim@kiep.go.kr)

### 저서 및 논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공저, 2006)

『뉴질랜드 개혁정책 평가와 시사점』(공저, 2006) 외

## 조미진(趙美眞)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現, E-mail: mcho@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2007)

『한·중 FTA 지식재산권분야의 이슈 점검: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공저, 2007) 외

## 정재완(鄭在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객원연구원(2000)

Japan Foundation 초청 간사이국제센터 연수(2003. 10~2004.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現, E-mail: jwcheong@kiep.go.kr)

### 저서 및 논문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공저, 2005)

『한·인도 CEPA 양허안·민감품목 작성을 위한 산업별 분석』(공저, 2006)

『우리나라 증권업계의 동남아·인도 금융시장 진출방안』(2006) 외

## 김민성(金旼成)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원(現, E-mail: mskim411@kiep.go.kr)

### 저서 및 논문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공저, 2006)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공저, 2007)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공저, 2008) 외

연구보고서 08-09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2008년 12월 24일 인쇄

2008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蔡 旭

발 행 처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화: 3460-1142 FAX: 3460-1144

인    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287-6 94320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회원종류 | 배포자료         | 연간회비   |      |        |
|------|--------------|--------|------|--------|
|      |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 S    |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A    |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 1만 5천원 |      | 1만 2천원 |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               |             |          |
|---------------|-------------|----------|
| 기관명<br>(성명)   | (한글)        | (한문)     |
|               | (영문: 약호 포함) |          |
| 대표자           |             |          |
| 발간물<br>수령주소   | 우편번호        |          |
| 담당자<br>연락처    | 전화<br>FAX   | E-mail : |
| 회원소개<br>(간략히) |             |          |
| 사업자<br>등록번호   | 종목          |          |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           |
|------------------------------------|------------|-----------|
|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 S<br>발간물일체 | A<br>반년간지 |
|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            |           |
|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특기사항

## Korea's FTA Rules of Origin: Review and Future Strategy

HanSung Kim, Mee Jin Cho, Jae-Wan Cheong, and Min-sung Kim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도 체결하고 발효한 FTA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비교·분석하면서 향후 FTA 추진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1287-6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